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연차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검찰청 · 경찰청 · 특허청 · 무역위원회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연차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검찰청 · 경찰청 · 특허청 ·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의 보호, 경제혁신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디자인·저작물과 같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그 창출과 보호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48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앞당기기 위해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보호관리 체계가 없다면 ‘모래 위의 집’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펼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도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의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밝히는 한편, 해외의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투자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재산 보호는

창조경제의 기본질서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특허·브랜드·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우수한 기구를 발명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듯이 21세기에는 무형의 지식재산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재산이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구축하고,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과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PCT)은 세계 5위, 디자인 출원은 세계 3위, 상표 출원은 세계 7위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기업과 교육기관 등도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식재산도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제대로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과 창작물이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어 부가가치를 낳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진화’의 일환으로 매년 발간되는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윤종용

창조경제 생태계, 지식재산의 보호와 존중을 기반으로

창조적 지식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오늘날, 특허,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은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의 개발과 축적뿐 아니라 자국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보호집행을 위해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등 5개국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 센터(IP-DESK)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008년 43%에서 2013년 38%로 낮아지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창의적 지식재산이 토대가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기술가치평가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추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이 한층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 사업화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트랙을 제시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 추진방안과 성과를 모아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범국민적으로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재산 보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세계경제 질서는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토지, 자본 등 유형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1년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전국 26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창출한 지식재산이 세계시장에서 가치 있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변호사, 변리사, 외국법 자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 진출 중소기업 등에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 및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모든 관계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어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21세기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그 중심에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 신성장산업인 ‘창조산업’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문화융성 시대의 핵심요소이자 콘텐츠 산업 성장의 근간이기도 하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비롯한 지식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동시에, 자유롭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저작권 보호와 지식재산의 이용 활성화가 균형과 상생을 이루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과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담아 발간된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보고서’가 지식재산보호 정책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석

경제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수호하다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 시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는 무한경쟁시장은 기업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무형의 지식재산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물질적인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능가하면서 과거에 지식재산권 보호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소수 국가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문화 콘텐츠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류를 매개로 게임, 음악, 출판, 광고,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위조품 단속의 66%는 세관에서 적발된 것이라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발표(2012)에서 보듯이, 경제국경에서 세관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은 유통단계에서의 단속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관세청은 건전한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위조된 자동차 부품과 짝퉁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과 산업피해가 큰 품목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세관과의 공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한 기관의 단독 노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지식재산 일류국가 대한민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의 발간이 국가의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세청장 김 낙 회 > /

지식재산의 생태계, 튼튼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만듭니다

창조경제를 처음 제창한 영국의 존 호킨스(John Howkins) 교수는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는 지식재산이며, 지식재산 없는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과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뛰어난 과학 및 기술적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엮는 씨줄과 날줄은 지식재산이라는 유통화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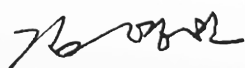
창조경제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창출, 활용과 더불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활동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보호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권리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을 통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침해 손해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지재권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창조경제의 유통화폐인 지식재산의 보호정책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의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청장



목차 Contents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식재산 보호환경

제1절 산업재산권	6
1. 출원 및 등록 건수 변화	6
2. 심판 및 소송 분쟁 현황	7
3. IP·기술금융의 확산	8
4.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현황	9
제2절 저작권	11
1. 저작물 등록 현황	11
2. 국내 저작권 침해 현황	11
3.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13
제3절 신지식재산권	14
1. 법적인 권리로서의 신지식재산	15
2. 신기술의 출현과 지식재산 보호	16
제4절 영업비밀	19
1. 산업기술 유출의 증가	19
2. 영업비밀 소송의 글로벌화	20

제 3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제1절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22
1. 국내 지식재산 보호정책	22
2. 해외 주요국가 지식재산 보호정책	24
제2절 보호정책 추진체계	31
1.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31
2.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32
3. 각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활동	33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	38
제4절 201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42
1. 산업재산권	42
2. 저작권	50
3. 신지식재산권	52
4. 영업비밀	54

제 4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제1절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분쟁해결 지원	58
1.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58
2.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78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90
1.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 지원	91
2. 저작권 해외 보호기반 강화	98
제3절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노력	102
1. 산업재산권 분야	102
2. 저작권 분야	107
제4절 지식재산 보호기술의 고도화	118
1. 산업재산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118
2. 저작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120
3. 영업비밀 보호기술의 고도화	124
제5절 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128
1. 부처 간 협업	128
2. 국제협력	130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142
1. 권리화 단계에서의 보호 강화	142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	145
3. 지식재산보호 집행력 강화	149
4.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151
5.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유·확산의 조화	152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154
1.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54
2. 온라인 불법복제물 대응력 강화	155
3. 소프트웨어 보호수준 강화	156
제3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59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159
2. 국제공조체계 확립	161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확대	162
1.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논의 참여	162
2.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	164
제5절 신지식재산의 보호체계 강화	166
1. 신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166
2. 신지식재산권 창출·활용 기반 강화	168
3. 미래 유망기술 및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169
참고 문헌	171

표 목차

〈표 2-1-1〉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6
〈표 2-1-2〉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7
〈표 2-1-3〉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7
〈표 2-1-4〉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 현황	8
〈표 2-1-5〉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추이	9
〈표 2-2-1〉	연도별 저작물 등록 현황	11
〈표 2-2-2〉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12
〈표 2-2-3〉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규모	12
〈표 2-2-4〉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유통량 변화	13
〈표 2-3-1〉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체계	15
〈표 2-3-2〉	3D 프린터 분야 연도별 출원 현황	17
〈표 3-2-1〉	지식재산 관련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33
〈표 3-3-1〉	특허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5.1.1.)	38
〈표 3-3-2〉	실용신안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5.1.1.)	39
〈표 3-3-3〉	상표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6.11.)	39
〈표 3-3-4〉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7.1.)	40
〈표 3-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시행 2014.1.31.)	40
〈표 3-3-6〉	저작권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7.1.)	41
〈표 3-3-7〉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2014)	41
〈표 3-4-1〉	IP5 특허출원 언어 요건 비교	45
〈표 3-4-2〉	지리적 표시 보호 소관부처와 근거법	53
〈표 3-4-3〉	유전자원 보호의 소관부처와 근거법의 목적 및 규율대상	54
〈표 4-1-1〉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58
〈표 4-1-2〉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실적	61
〈표 4-1-3〉	검찰청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62
〈표 4-1-4〉	경찰청의 상표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62
〈표 4-1-5〉	(舊)해양경찰청의 상표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62
〈표 4-1-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단속 실적	64
〈표 4-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현황	65
〈표 4-1-8〉	지자체·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적	66
〈표 4-1-9〉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68
〈표 4-1-10〉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현황	69
〈표 4-1-11〉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현황	69
〈표 4-1-12〉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70
〈표 4-1-13〉	실버감시원 제보를 통한 단속 실적	71
〈표 4-1-14〉	재택모니터링 운영 실적	72
〈표 4-1-15〉	ICOP을 통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74
〈표 4-1-16〉	품종식별 마커를 이용한 DNA 구축 현황	75
〈표 4-1-17〉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2014.12. 기준)	76
〈표 4-1-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현황(2014.12. 기준)	76
〈표 4-1-19〉	연도별 단체표장 등록 건수	77
〈표 4-1-20〉	국가 생물자원 보유 현황	78

〈표 4-1-21〉 소관부처별 정부연구기관 생물자원 보유 현황	78
〈표 4-1-22〉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직접대리 지원 실적	81
〈표 4-1-23〉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민사소송비용 지원 실적	81
〈표 4-1-24〉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법률상담 연도별 실적	82
〈표 4-1-25〉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주요 지원 현황	83
〈표 4-1-26〉 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현황	84
〈표 4-1-27〉 연도별, 분야별 조정 현황	85
〈표 4-1-28〉 조정 처리 현황	85
〈표 4-1-29〉 법원 연계형 조정 처리 현황(서울중앙지법)	86
〈표 4-1-30〉 연도별 조정신청 현황과 성립건수	87
〈표 4-1-31〉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87
〈표 4-1-32〉 연도별 지식재산권 관련 상사중재신청 현황 및 금액	89
〈표 4-2-1〉 IP-DESK 운영 실적(2014.12. 기준)	92
〈표 4-2-2〉 컨설팅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94
〈표 4-2-3〉 기업 간 협의체 지원내용	94
〈표 4-2-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내용	95
〈표 4-2-5〉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96
〈표 4-2-6〉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99
〈표 4-2-7〉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현황	101
〈표 4-3-1〉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 활동 현황	104
〈표 4-3-2〉 지식재산 보호 청소년 교육용 콘텐츠	106
〈표 4-3-3〉 체험교실 운영 현황	108
〈표 4-3-4〉 연구학교 운영 현황	108
〈표 4-3-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108
〈표 4-3-6〉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109
〈표 4-3-7〉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현황	109
〈표 4-3-8〉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10
〈표 4-3-9〉 대학생 및 일반인 온라인 저작권 교육 현황	110
〈표 4-3-10〉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현황	111
〈표 4-3-11〉 저작권 문화학교 수료 현황	111
〈표 4-3-12〉 저작권 아카데미 수료 현황	112
〈표 4-3-13〉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수료 현황	112
〈표 4-3-14〉 2014년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현황	116
〈표 4-4-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	119
〈표 4-4-2〉 2014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121
〈표 4-4-3〉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 발급 현황	123
〈표 4-4-4〉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 현황	123
〈표 4-4-5〉 프로그램저작물 임치계약 현황	124
〈표 4-5-1〉 분과별 간사기관 및 2014년 활동 실적	129
〈표 4-5-2〉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현황	129
〈표 4-5-3〉 글로벌 지재권 콘텐츠 주요 현황	133
〈표 4-5-4〉 양자협력 최근 주요 성과	134
〈표 4-5-5〉 특허청장회의 개최 현황	135
〈표 4-5-6〉 발효 및 타결된 FTA 주요내용	136
〈표 5-5-1〉 2014년 5대 산업분야 및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	169

그림목차

〈그림 2-4-1〉	기술유출범죄사범의 연도별 검찰 처리 현황	19
〈그림 3-1-1〉	2012~2016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3
〈그림 3-1-2〉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25
〈그림 3-1-3〉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27
〈그림 3-1-4〉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28
〈그림 3-1-5〉	EU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30
〈그림 3-2-1〉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31
〈그림 3-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구도	32
〈그림 3-4-1〉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43
〈그림 3-4-2〉	권리별 심사처리 기간 동향	43
〈그림 3-4-3〉	지식재산(IP) 금융 추진 개요	45
〈그림 3-4-4〉	기업 성장단계별 IP·기술 금융 지원방안	46
〈그림 3-4-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여부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비교	47
〈그림 3-4-6〉	바이오 산업 동향	54
〈그림 4-1-1〉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체계	59
〈그림 4-1-2〉	제1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활동 및 제2기 출범	64
〈그림 4-1-3〉	무역위원회가 제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5가지 유형	65
〈그림 4-1-4〉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복제물 단속 체계	67
〈그림 4-1-5〉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업무 절차 흐름도	70
〈그림 4-1-6〉	클린마크	72
〈그림 4-1-7〉	클린사이트 지정 추이(2012년~2014년)	73
〈그림 4-1-8〉	ICOP 시스템 구성도	73
〈그림 4-1-9〉	특허심판 및 특허민사소송 흐름도	79
〈그림 4-1-10〉	심판대리 지원 처리절차	80
〈그림 4-1-11〉	소송비용 지원 처리절차	80
〈그림 4-1-1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	88
〈그림 4-2-1〉	IP-DESK 설치 지역	91
〈그림 4-2-2〉	IP-DESK 추진체계	92
〈그림 4-2-3〉	언론 보도	92
〈그림 4-2-4〉	해외 지식재산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체계	95
〈그림 4-2-5〉	국내 브랜드 피해 사례	97
〈그림 4-2-6〉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99
〈그림 4-3-1〉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2014.5.30.)	103
〈그림 4-3-2〉	유명 브랜드와 위조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	103
〈그림 4-3-3〉	민·관 합동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104
〈그림 4-3-4〉	지식재산 보호 홍보 활동	105
〈그림 4-3-5〉	위조상품 유통근절 공익광고	105
〈그림 4-3-6〉	찾아가는 지식재산 보호 청소년 체험학습	106
〈그림 4-3-7〉	2014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	114
〈그림 4-3-8〉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슬로건/로고	114
〈그림 4-3-9〉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홍보영상	114
〈그림 4-4-1〉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절차	119
〈그림 4-4-2〉	전자연구노트 서비스 운영 절차	120

〈그림 4-4-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22
〈그림 4-4-4〉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개념도	124
〈그림 4-4-5〉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절차	125
〈그림 4-4-6〉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구성	126
〈그림 4-4-7〉	보안관제 서비스 개념도	126
〈그림 4-4-8〉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개념도	127
〈그림 4-4-9〉	기술임치제도 이용절차	127
〈그림 4-5-1〉	적정기술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사례	132
〈그림 4-5-2〉	ICOTEC 2013	139
〈그림 4-5-3〉	ICOTEC 2014	139
〈그림 5-1-1〉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 전·후 비교	146

제 1 장

서 론

서론

글로벌 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 활동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¹⁾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재산이 토지·자본·노동보다 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보유 정도와 가치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가 된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을 단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혁신 촉진 정책의 중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2012년 미국에 이어 2013년 유럽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4월 11일 특허, 상표권, 저작권별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정의하고 이 집약산업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²⁾한 바 있다('12.4.11.). 유럽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도 공동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3.9.30.). 그 결과, 미국은 전체 GDP의 35%, 유럽은 39% 정도를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주요국들이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주된 이유이다.

아울러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은 주요 쟁점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기존의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덤핑수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입국의 동종제품 생산자 등이 반덤핑제소(anti-dumping suit)를 하고 수입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지재권 침해에 기반을 두고 자국 내 수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

1)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분배·사용을 직접적인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말한다(an economy which is 'directly based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Knowledge-Based Economy', OECD(1996).

2) 미국 상무부, '지식재산과 미국경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2.

한 무역제재는 1998년 이후 연평균 약 2%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결정은 연평균 15%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³⁾

선진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축적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수익을 무형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또는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진행하는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후발 추격 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지재산 전략 수립 · 분쟁 대응 등을 위해 지재산 전담인력 확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개인과 기업의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등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6년(2009~2014) 연속으로 제외되었다. 특히, 2014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 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재산 보호순위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 기준 68위(144개국 대상),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D) 기준 41위(60개국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집행력 수준은 우리의 경제규모나 국가경쟁력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은 확대 · 재생산의 선순환을 통해 사회와 경제 전반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 · 존중 받지 못할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무단 도용, 지식재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 · 갈등이 유발되어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⁴⁾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및 존중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자산을 둘러싼 국내외의 보호환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로써 지난 1년 간 어떤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3)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2013), 35면.

4) 국내 위조상품 피해규모(추정) : 약 17조원(하보스코프닷컴, '13.).

구체적으로 ‘제2장 지식재산 보호환경’에서는 지식재산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로 나누어 경제적·사회적·법적 보호환경을 서술하였다. ‘제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추진체계,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법률(제·개정 포함) 및 소관 주무부처를 소개하고 이들이 행하는 주요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포함하였다. 가장 핵심이 될 ‘제4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에서는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및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새로운 기술적 보호조치의 소개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및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 및 국제협력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5장 대응방향 및 향후 전망’에서는 이러한 바탕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 2 장

지식재산 보호환경

제1절 | 산업재산권

1. 출원 및 등록 건수 변화

2014년 특허·상표의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8%, 1.7% 소폭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16.3%, 3.9%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장기간 보호 받을 수 있는 특허로 대체됨에 따라 2년 연속 두 자리 감소율을 보이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건수는 43만 4,047건으로 전년대비 0.9% 증가를 보였으며,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향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1〉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권리별	'10	'11	'12	'13	'14
특 허	170,101	178,834	188,305	204,589	210,292
실용신안	13,661	11,853	15,422	10,968	9,184
디 자 인	57,187	56,522	63,135	66,940	64,345
상 표	108,324	123,807	132,517	147,667	150,226
합 계	349,273	371,016	396,379	430,164	434,047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및 월별 지식재산통계(2014).

2014년 특허·디자인의 등록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9%, 14.2%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상표의 등록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6.8%, 0.3% 감소하였다. 2014년 산업재산권 전체 등록건수는 28만 8,553건으로 전년대비 2.8% 소폭 증가하였다. 산업재산권의 출원 증가세 및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해 매년 등록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2〉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권리별	'10	'11	'12	'13	'14
특 허	68,843	94,720	113,467	127,330	129,786
실용신안	4,301	5,853	6,353	5,959	4,955
디 자 인	33,697	42,185	46,146	47,308	54,021
상 표	53,136	71,255	77,903	100,094	99,791
합 계	159,977	214,013	243,869	280,691	288,553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및 월별 지식재산통계(2014).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가 발표한 '2014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에서 2013년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20만 4,589건, 실정등록 12만 7,330건 및 누적 81만 2,595건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심판 및 소송 분쟁 현황

가. 특허심판원 심판

2014년 심판청구 건수는 11만 981건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였는데, 이는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각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특허 9.5%, 실용신안 25.2% 및 상표 7% 감소하였으나, 디자인은 25.9%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 이슈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디자인 권리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디자인 심판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3〉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10	'11	'12	'13	'14
청구 (증가율)	특 허	9,270	9,664	10,039	8,111	7,335
	실용신안	559	473	402	336	251
	디 자 인	689	438	569	454	572
	상 표	3,354	3,855	3,737	4,113	3,823
	합 계	13,872	14,430	14,747	13,014	11,981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및 2014년 심사·심판 성과 보도자료('15.1.13.).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누적된 등록 건수임.

나. 특허법원 · 대법원 소송

1998년 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비율은 2000년 24.9%에서 2013년 15.3%로 감소추세에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의 심결취소율(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2.3%로 2007년 이후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4〉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 현황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특허법원	소제기 가능심결	6,452	6,195	7,267	6,930	6,816
	소제기	979	973	1,254	1,145	1,044
	제소율(%)	15.2	15.7	17.3	16.5	15.3
	판결건수	1,144	992	1,237	1,183	1,025
	취소판결	270	211	280	270	214
	취소율(%)	23.6	21.3	22.6	22.8	20.9
대 법 원	상고건수	468	367	408	427	344
	상고율(%)	40.9	37.0	33.0	36.1	33.6
	선고	556	399	369	419	372
	파기건수	54	46	44	36	37
	파기율(%)	9.7	11.5	11.9	8.6	9.9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33.6%이며,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13년 9.9%로 최근 5년간의 파기율 10.3%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3. IP · 기술금융의 확산

2012년 국내 IP 시장 규모는 약 11조 4천억 원이며, 공공 · 민간을 포함한 IP 금융 지원 규모는 약 6천 6백억 원이었다.⁶⁾ 2013년에 주요 금융기관들은 IP 펀드, IP 수출자금지원, IP 평가보증 및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3.7.30.).

IP 인수보증 등의 지식재산 금융에 총 1조 원을 지원할 방침을 세운 바 있고,⁷⁾ 특허청은 2014년 1월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를 설립하는 등 IP·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IP 가치평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권도 IP·기술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금융활동 전반에 대한 전용상품을 늘리고 전담조직을 정비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IP·기술금융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8월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⁸⁾을 수립하였으며, 기술가치평가에 기초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4.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현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사용료 수입은 51억 50백만 달러이고, 지급은 103억 68백만 달러로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52억 18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표 2-1-5〉 지식재산권사용료⁹⁾ 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수 지	-41.00	-59.95	-30.16	-47.14	-55.09	-52.18
수 입	32.55	31.88	43.99	39.03	43.28	51.5
지 급	73.56	91.83	74.15	86.17	98.37	103.68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및 월별 지식재산통계(20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기술무역¹⁰⁾ 규모는 18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은 전년(2012년 53억 천만 달러)보다 15억 3천 5백만 달러 증가한 68억 4천

7) 2013년 8월 12일자 기사, KDB산업은행 1,000억 원, 수출입은행 1,500억 원, 기술보증기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 원, 기업은행 2,500억 원 지원 방침(이투데이).

8) 2014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함.

9) 한국은행이 IMF의 국제수지매뉴얼(Balance of Payments Manual)에 따라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의 하 부항목으로 발표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음향영상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권, 컴퓨터 SW 복제·배포권,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및 R&D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재산 사용료 등 4개 범주로 세부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함.

10) 기술무역이란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적·상업적으로 비용의 지출 및 수입이 있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허 판매 및 라이선싱,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지도 연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6백만 달러로 28.9% 증가하였으며, 기술도입은 120억 3천 8백만 달러로 전년(2012년 110.5억 달러) 대비 8.9%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0.57로 2012년 0.4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은행¹¹⁾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세부 현황분석 및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특허·상표·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매매·라이선싱 거래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체계의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15년도 첫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¹²⁾

11) 2014년 5월 23일 특허청과 한국은행 간의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력 약정 체결.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개발방안」, 제11차 본회의('14.8.).

제2절

저작권

1. 저작물 등록 현황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의 권리발생요건이 아니지만, 분쟁발생시 추정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저작물의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의 등록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2-2-1〉 연도별 저작물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10	'11	'12	'13	'14	합계
저작물	26,033	27,867	30,470	31,076	33,549	148,995
저작인접물	729	233	595	324	217	2,098
데이터베이스	86	54	101	62	74	377
합 계	26,848	28,154	31,166	31,462	33,840	151,470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 국내 저작권 침해 현황

가.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2013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3,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피해규모는 약 2조 3,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연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던 수치가 2013년에 크게 증가한 원인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다시 증가한 것과 함께 유통 단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과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로 2013년도 전체적인 합법저작물 시장에서의 침해율은 16.0%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2〉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구 분	'09	'10	'11	'12	'13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	42.4%	35.9%	35.3%	32.4%	33.3%
불법복제물 유통량	23억 9,602만 개	18억 9,571만 개	21억 27만개	20억 6,000만 개	24억 742만 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8,784억 원	5,102억 원	4,220억 원	3,055억 원	3,728억 원
합법저작물 시장규모(A)	8조 1,507억 원	8조 9,347억 원	10조 8,153억 원	11조 4,963억 원	12조 5,723억 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2조 2,497억 원	2조 1,172억 원	2조 4,987억 원	2조 2,186억 원	2조 3,987억 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C=A+B)	10조 4,005억 원	11조 520억 원	13조 3,140억 원	13조 7,148억 원	14조 9,710억 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1.6%	19.2%	18.8%	16.2%	16.0%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4).

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에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43%에서 2010년, 2011년 각각 40%로, 2013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평균 43%보다 낮고, 아시아 평균 6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2011년 OECD 평균 2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불법복제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피해금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2-2-3〉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규모

(단위 : %)

구 분		'08	'09	'10	'11	'13
불법복제물	한국 평균	43	41	40	40	38
	세계 평균	41	43	42	42	43
	아시아 평균	61	59	60	60	62
피해액(백만 달러)		622	575	722	815	712

* 출처 : BSA, 「The Compliance Gap, BSA global software survey」, June 2014.¹³⁾

13) 2011년부터는 BSA-IDC가 격년으로 침해보고서를 발간하여 2012년 침해규모는 수록되지 못함.

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 지속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불법복제물 유통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되고 디지털파일 형태의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합법 유통시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유형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41.5%가 토렌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웹하드 36.0%, 포털 13.7%, P2P 8.7%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유통량이 증가하였고,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발된 풍선효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한 유통이 웹하드를 추월하였으며, 2013년에도 여전히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4〉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유통량 변화

구 분	P2P		포털		웹하드		토렌트	
	유통량 (천개)	증감(%)	유통량 (천개)	증감(%)	유통량 (천개)	증감(%)	유통량 (천개)	증감(%)
'10	442,362	-48.4	304,884	-11.5	860,379	48.4	-	-
'11	245,067	-44.6	293,981	-3.6	731,532	-15.0	525,724	-
'12	209,359	-14.6	222,704	-24.2	664,758	-9.1	745,067	41.7
'13	183,646	-12.3	289,316	29.9	759,241	14.2	874,351	17.4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4).

3.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2014년 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보고서('14.4.30. 발표)는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한 중국, 동남아 지역을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여 불법 침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이나 드라마 등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그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적 실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현지 시장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해외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침해 전략을 다국적으로 연계하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정부는 중국, 동남아 등 지역 국가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3절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emer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2호)를 총칭한다. 법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신지식재산은 사회적·기술적·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해 그 종류와 보호범위 및 효력이 결정된다.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과 사회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지식재산 또한, 일반적인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의 복제 또는 침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재산은 적절한 보호 범위 및 보호 수준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권리로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보호받게 된다. 특정 신지식재산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객체로 인정되는 제도화 과정은 종래의 지식재산권법령의 개정이나 해석을 통해 기존 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편입되거나, 새로운 보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신지식재산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또는 관련 특별법(식물신품종 보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아울러, 3D 프린팅, 빅 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 등장과 더불어 제기되는 새로운 보호이슈에 대해 관련 검토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FTA 등 국제조약이나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신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 법적인 권리로서의 신지식재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법률의 개정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최근 새롭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신지식재산들도 지속적으로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일례로 비즈니스 모델 발명과 생명공학에 관한 발명을 특허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¹⁴⁾ 특히, 2006년에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유성번식 식물발명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새로운 유형의 상표 및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표법은 ‘표장’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와 같은 것이라도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형태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¹⁶⁾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을 가지며,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¹⁷⁾

신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이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성질의 내용인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 또는 저작권법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내법상 특별법을 통해 보호되는 신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표 2-3-1〉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체계

법 률	보 호 객 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식물신품종 보호법(舊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트레이드드레스, 도메인 이름, 지리적 표시 등
인터넷주소지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 이름

14) 특허청, ‘컴퓨터발명 관련 심사기준’, 2005 ; 특허청,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5) (舊) 특허법 제31조 규정 삭제.

16)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 제4호의2.

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내지 제37조.

2. 신기술의 출현과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은 신지식재산 출현의 토대가 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기술 자체 또는 해당 기술 활용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방법 및 보호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Cloud)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며, 클라우드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인터넷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 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장비나 저장 공간의 제약이 없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그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09년을 전후하여 각국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¹⁸⁾ 우리정부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앞장서서 운용한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나 정보가 구현된 유형물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형화된 물건의 소유권과 결부되어 규정되어 있는 종래의 지식재산권법 규정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¹⁹⁾ 빅 데이터 기술은 정보의 홍수시대라는 현대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빅 데이터 기술의 특허출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장기술과 실시간 처리기술에 대한 출원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표현기술과 같은 데이터 운영 및 관리기술에 대한 출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²⁰⁾ 국내 기업의 출원은 주로 저장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데이터 운영 및 관리기술에 대한 출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데이터 운영 및 관리기술에 대한 출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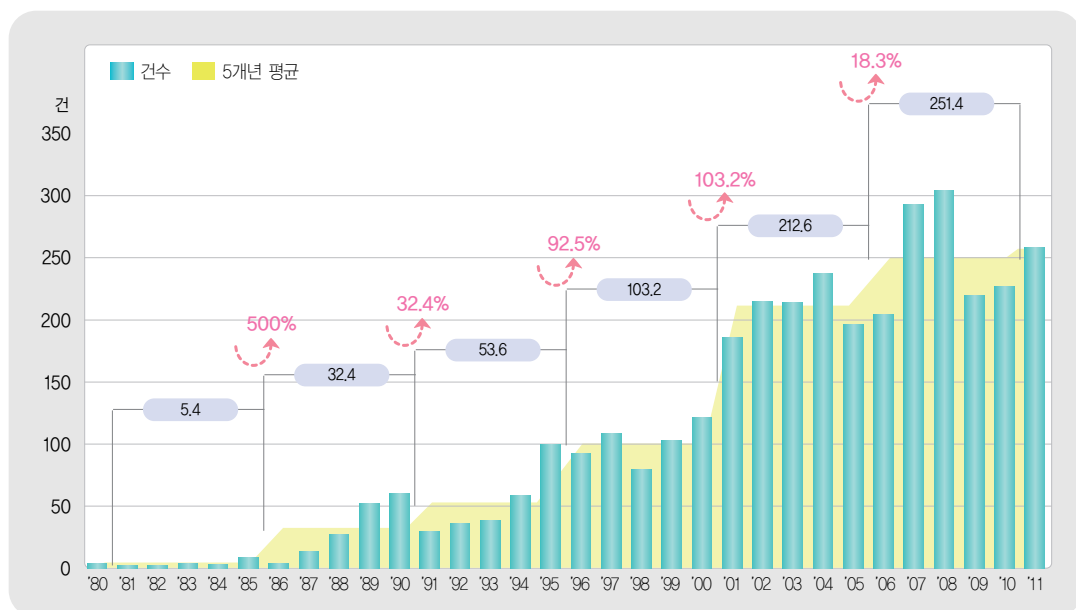
18) 미국정부의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Cloud Storefront’ 계획, 영국정부의 ‘G-클라우드’ 계획, 일본정부의 ‘가스미가세키(霞が関) 클라우드’ 계획이 해당된다.

19) John Gantz & David Reinsel,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2011년 6월, p.6.

20)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9권 제2호(‘14.4.).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의 구성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 사물간 네트워킹 구축 기술, 사물에 감각을 부여하는 센싱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물 인터넷에 의해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보안 기술, 데이터 저장 및 유통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계성을 갖는다. 향후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화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 및 민간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²¹⁾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출원은 2009년 33건에서 2013년 229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²²⁾

〈표 2-3-2〉 3D 프린터 분야 연도별 출원 현황



* '13. 6월 기준 공개특허에 대한 통계로 미공개건이 존재하는 '12~'13년은 분석에서 제외함.

* 출처 : 특허분석 이슈 보고서(한국지식재산전략원, '14.6.).

3D 프린팅은 입자를 분사,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부가 제조 기술의 일종으로서 1980년 초반 미국의 3D시스템즈사가 최초로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2D 프린터와 유사한 속도로

21) 사물인터넷 기본계획('14.5.8.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22) 특허청 보도자료('14.10.23.).

구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다. IT분야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3D 프린팅 시장이 2012년 16억 8,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3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D 프린팅 분야의 특허는 1980년 최초 출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 306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다. 5년 단위로 보았을 때 1996년~2000년, 2001년~2005년의 출원 건수는 1991년~1995년, 1996년~2000년 대비 각각 92.5%, 106.0% 증가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지적 창작물을 산출하고, 이들 산출물은 권리로서 보호가 필요한 신지식재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발전은 신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신지식재산의 보호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 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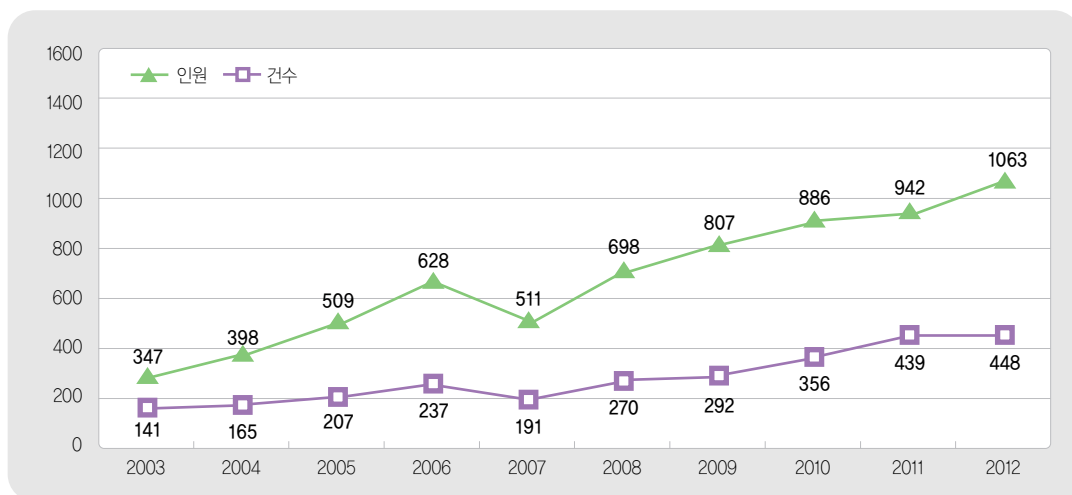
제4절

영업비밀

1. 산업기술 유출의 증가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 노하우나 영업비밀로 보유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술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03년 141건(347명)에서 2012년 448건(1,063명)으로 10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²³⁾ 또한,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²⁴⁾ 최근 3년(2010~2012)간 중소기업의 기술

〈그림 2-4-1〉 기술유출범죄사범의 연도별 검찰 처리 현황



* 출처 : 법무연수원, 2013년 범죄백서(대검찰청 통계자료).

23) 법무연수원, 2013년 범죄백서(대검찰청 통계자료).

24)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 조세일보('14.11.04.).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금액이 5조 2,863억 원에 달한다. 반면에 기술유출을 당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소송 등 법적인 구제절차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2. 영업비밀 소송의 글로벌화

2009년 미국의 다국적기업 듀폰(DuPont)이 우리 기업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²⁵⁾ 원심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9억 1,9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재판부가 코오롱 측에 유리한 증거를 불합리하게 배제하였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후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영업비밀 소송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다. 2014년만 해도 글로벌 보안업체인 시만텍(Symantec)과 우리 중소기업인 오투씨앤아이(O2CNI) 간의 소송,²⁶⁾ 도시바(Toshiba)가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²⁷⁾ 미국 석유화학회사인 UOP와 효성 간의 소송 및 독일 화학회사 머크어드밴스트테크놀로지(Merck Advanced Technologies Ltd)가 액정 혼합물 제조 비밀을 침해했다며 동진썸미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²⁸⁾ 등 영업비밀과 관련한 많은 소송이 있었다.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영업비밀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례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핵심 엔진 기술이 중국 업체에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기술유출에 연루된 이들은 해당 피해 국내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전 직장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무단으로 들고 나와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일보, '14.9.11.). 최근 내부자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5) E.I. Dupont De Nemours & Co. v. Kolon Indus., Civil Action No. 3:09cv58 (E.D. Va., 2010).

26) '국내 중소기업과 제휴된 사업 대박나자...인력·기술 빼간 글로벌 기업,' 한겨레('14.11.27.).

27) '한국 겨냥한 日 기술유출 처벌법...', 매일경제('14.11.25.).

28) '최근 3년간 로펌 영업비밀침해소송 수임 실적 들여다보니...', 한국경제('14.4.23.).

제 3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제1절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1. 국내 지식재산 보호정책

세계 경제 및 산업구조가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을 활용한 기술력·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에는 민·관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강국의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4년에는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6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성과를 ‘창출·활용’, ‘보호·집행’, ‘기반·신지식재산’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참고

2014년도 7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 | | |
|-------------------------|-----------------------|
| ①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 ②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
| ③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다각화 | ④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
| ⑤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⑥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
| ⑦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 |

또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매년 자원배분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참고

2015년도 8대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

- | | |
|---------------------|--------------------|
| ①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확대 | ② 저작권 등 창출기반 강화 |
| ③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 ④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
| ⑤ 지식재산 정보연계 강화 | ⑥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강화 |
| ⑦ 지식재산 문화 구축 | ⑧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

이러한 중장기적 국가정책 수립·점검 뿐 아니라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및 한·EU FTA 등 국제통상협정 타결에 따른 합의사항 반영 및 지식재산의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재권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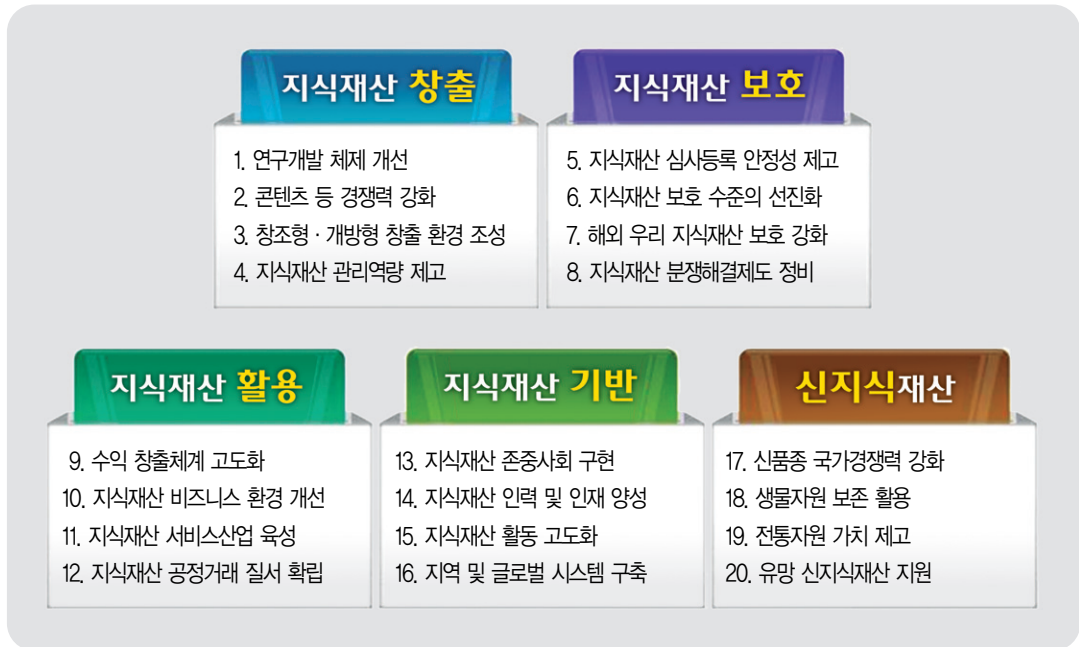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증대에 발맞춰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창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지식재산을 산업전반에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新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형성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1〉 2012~2016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 20대 전략 목표



특히, 2015년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 및 특허 손해배상제도 적정화 등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선진화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법무부·특허청 등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해외 주요국가 지식재산 보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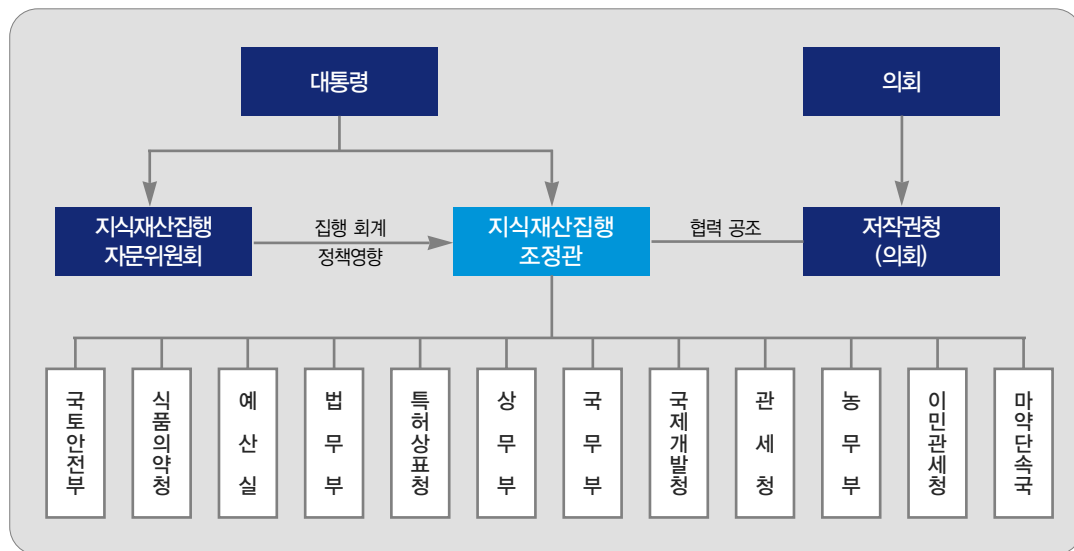
가. 미국

미국은 의회에서 제정한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에 관한 법률(PRO-IP법)」과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정책추진에 관한 행정체계는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 IPEC)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미국의 지식재산권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2013년 6월에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전략 계획’ 수립을 통해 6대 주요전략과 이를 위한 26개 조치 항목을 마련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2014년도 예산은 약 30억 달러로 2013년도 약 25억 달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증액된 수준으로 이를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의 심사품질 향상,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등 미국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림 3-1-2〉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 출처 : 美 백악관(2013).

참고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 주요 내용

- ① 정부차원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위조상품 유통에 대하여 정부조달 시 위조상품은 배제하고 연방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 ② 투명성 제고 및 국민 홍보
 -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입안 및 국제 협상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법 시행관련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공정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
- ③ 효율성 및 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율성 및 조정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 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집행효과의 향상 등을 도모
- ④ 국제적 집행
 - 외국 정부와의 협력, 국제기구, 무역정책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권리 집행을 강화
- ⑤ 합법적인 공급망 구축
 - 국경에서의 위조상품 식별을 위해 국토안보부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위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확산을 퇴치하는 등 합법적인 공급망 확보
- ⑥ 데이터 중심의 정부 구축
 - 집행 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집약적인 산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지식재산 집행에 지출한 미국정부 자원을 모니터링

나. 중국

2014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활용 및 신규 산업 발굴,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國家知識財產權 戰略實施 推進計劃)’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권의 전략실시업무에 관한 전국 각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를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국무원에서 2008년 6월에 반포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시행 정부부처 간 연석회의’에서 6년째 제정하는 연도별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7대 중점 목표와 이를 완성하기 위한 79개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2014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7대 중점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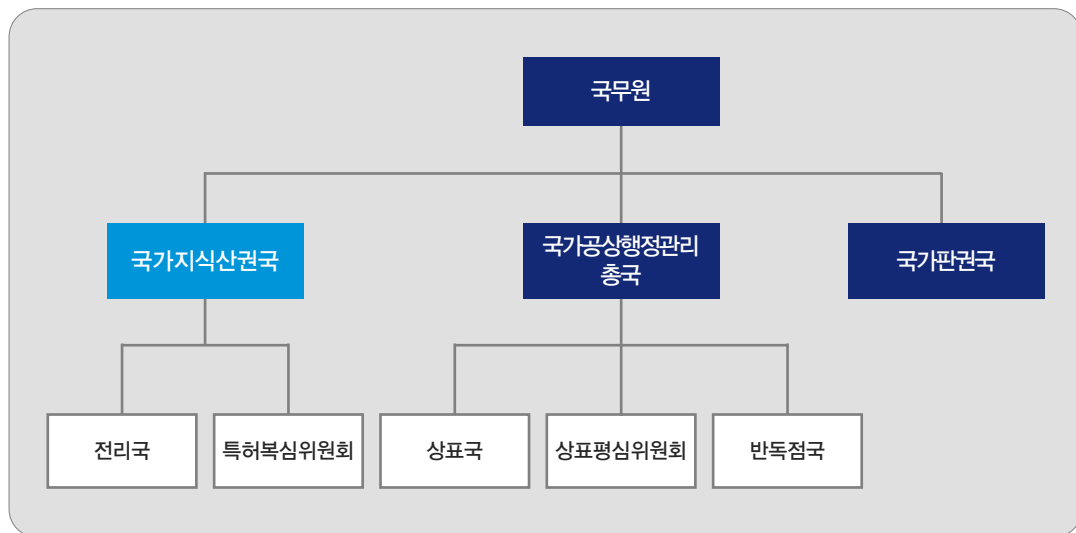
- | | |
|----------------------|---------------------------|
| ① 지식재산권 창출의 품질 향상 | ② 지식재산권의 활용 이익 향상 |
| ③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향상 | ④ 지식재산권 관리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향상 |
| ⑤ 지식재산권 국제교류 촉진 | ⑥ 지식재산권 기초능력 향상 |
| ⑦ 지식재산권 전략조직 실시수준 향상 | |

이와 함께, 2014년 1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행동 계획(2014~2020)’을 제정·발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로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지식자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획득 및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3곳에 ‘지식재산권 전담법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1~12월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 전담법원을 모두 설립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담법원’은 특허권, 상표권은 물론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민사·행정사건을 관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제약 등 특정분야에 몰려있는 현재의 특허포트폴리오를 농업부터 헬스케어까지 확대하여 자국 보유특허의 양적·질적 증가를 유도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강국 2020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림 3-1-3〉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 출처 : 中 국무원(2013).

다. 일본

2013년 6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는 세계 최첨단 지재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지적재산정책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종합한 ‘지적재산정책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동 비전의 정책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3년 10월 지적재산전략본부 산하에 ‘검증·평가·기획위원회(檢証・評価・企畫委員會)’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의 검증평가를 수행하였다.

한편, 2013년 12월 일본 경제 산업성은 제5차 ‘검증·평가·기획위원회’에서 ‘지적재산정책비전’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인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상황 및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畫) 2014’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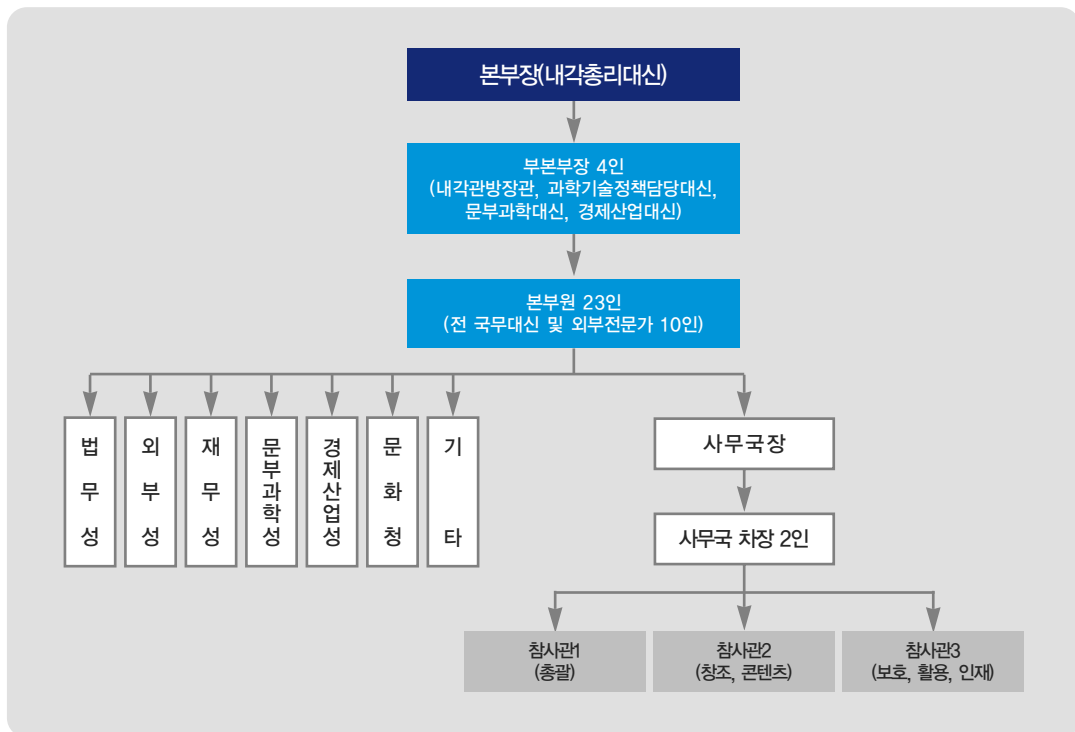
상기 추진계획에는 ‘지적재산정책 기본방침’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분야를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지적재산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참고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5대 핵심 과제

- ① 직무발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 현행 발명자 귀속인 직무발명제도를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
- ② 영업비밀 보호의 종합적인 강화
 - 영업비밀·기술정보의 보호 강화에 대해 기업, 정부의 역할 및 민·관이 협력해서 대처해야 할 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 ③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해외 지적재산 활동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인재, 자금, 정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 강구
- ④ 콘텐츠 해외 수출 촉진 및 인바운드²⁹⁾와 연계
 -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 및 정책자원의 중점적인 투입
- ⑤ 아카이브³⁰⁾의 이용 또는 활용 촉진을 위한 준비의 가속화
 - 일본의 문화자원을 디지털 형태로 축적하고 정비하여 새로운 산업이나 문화창작·교육의 기반이 되는 지적 인프라 강화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정책 비전'에 포함된 각 정책의 추진 상황과 평가를 통해 세부 행동 계획을 매년 갱신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4〉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

29) 인바운드(in-bound) : 일본 문화콘텐츠 관광객 유치.

30) 아카이브(archive) : 일본 문화자원의 디지털 기록물.

라. EU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보호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감시·집행 기능을 EC에서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으로 이관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7월 EC는 영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EU와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전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집행전략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동 실행계획은 EU 영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한 대응계획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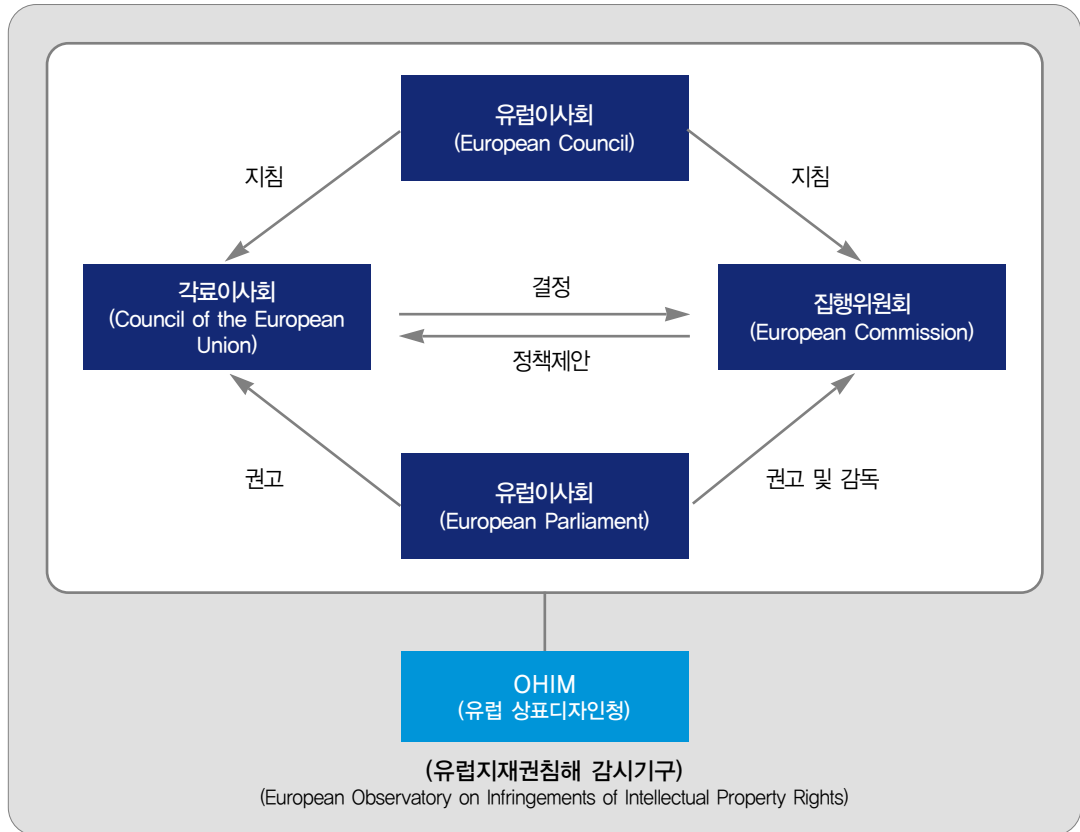
참고 '지식재산권 집행전략 실행계획(Action Plan)' 주요 내용

- ① 일반 서민,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보호 캠페인 추진
- ②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온라인 광고업체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③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를 위한 법률적 절차 개선
- ④ 공공기관의 불법 복제물 구매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⑤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 ⑥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해 회원국 내 광범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 ⑦ 회원국 간의 협력증진 및 의견 교환 등을 위한 전문가 그룹 발족
- ⑧ EU 지식재산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

동 실행계획에 따르면, EC는 실행계획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유럽의회, EU 이사회, 회원국, EU 경제사회위원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 25개국의 유럽특허협력조약에 따른 단일특허제도(Common Patent System) 실시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 UPC)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유럽 내에서의 특허취득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UPC가 유럽특허의 침해·무효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등 40년간 시행되어 온 유럽의 특허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3-1-5〉 EU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 출처 : 외교부(2012).

제2절

보호정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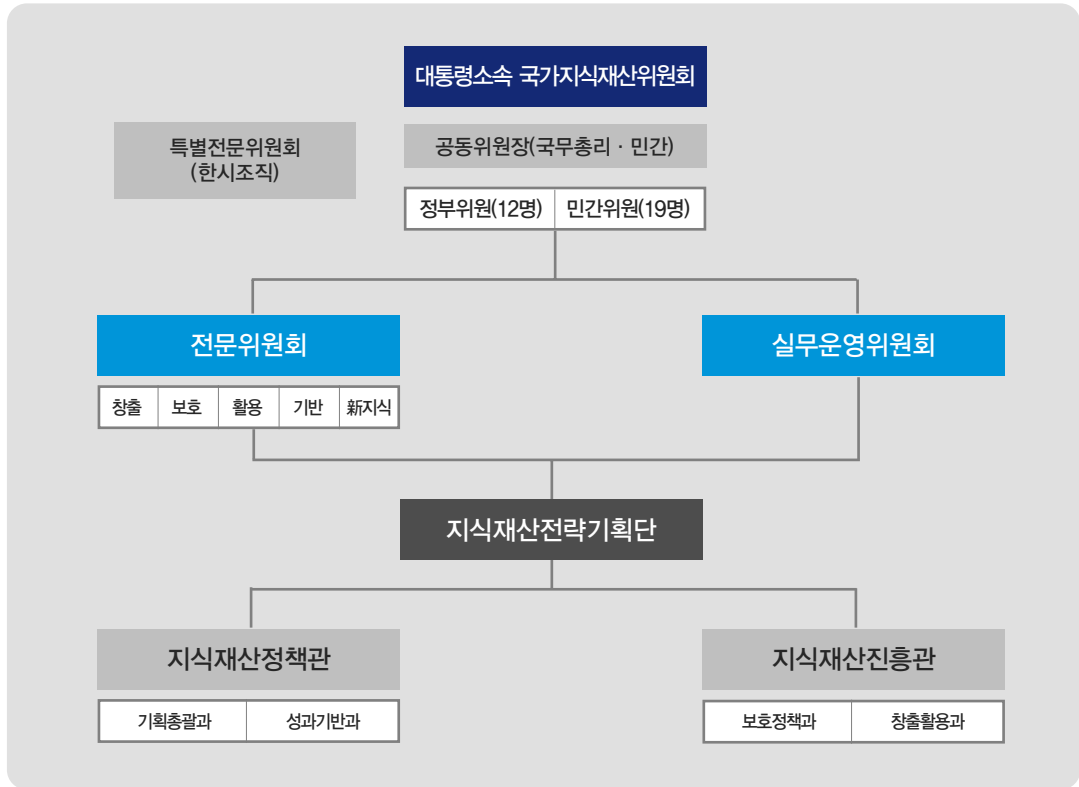
1.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관련 추진체계는 2011년 7월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각 부문별로 정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 및 출원·등록 등의 행정은 특허청에서, 저작권 관련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신품종·유전자원 등의 보호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종자원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업무는 관세청에서, 단속·수사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업무는 법무부(검찰청)·행정자치부(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전문적인 지식재산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1〉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그림 3-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구도



2.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허법」, 상표권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의 기타 지식재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최근 침해 정도와 양상이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라 단일법에 의한 규제 및 보호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복수의 법령에 의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TRIPs) 및 FTA 체결 등을 통해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표 3-2-1〉 지식재산 관련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법령	소관부처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특허청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무부 행정자치부
관세법	관세청

3. 각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활동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통합·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 세부기능으로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점검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는 창출·보호·활용·기반·新지식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2012년 4월 5일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 지식재산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KIPnet)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의 현안 및 현장의 정책제안 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 그룹 및 회의체의 논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나. 특허청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주요기능으로 ①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②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검토 ③ 특허권 등의 쟁송과 관련된 심판제도 운영 ④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및 국제화 추진 ⑤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⑥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기타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및 다자간 국제 협력체제 구축활동 등이 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를 관장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체계 구축,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저작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 등 저작권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관세청

관세청은 상표권·저작권·식물품종·지리적 표시 등의 국경보호대상을 특허권 및 디자인권까지 확장시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를 교환하고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공급망까지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인터넷 무역환경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 기반의 일대일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수법의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이 활발함에 따라 민간사이버 감시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요 교역국과의 FTA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였다. 즉,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은 관세청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해외시장 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며, 금융지원 등의 종합지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였다.

마. 법무부 · 검찰청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전국 26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상에서 음악 · 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 및 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과 유명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운동화, 의류 등의 위조상품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일반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및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위 사법집행기관으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침해사범 상담 ·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배포 · 전송 · 사용행위 및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의 불법복제 · 판매행위, 특허 · 상표도용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침해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바. 경찰청

경찰청은 국내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위해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상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표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류 · 가방 · 장신구 등 위조상품 제조 ·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주기적인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를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 · 만화 파일공유 및 복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사.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물품 등의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무역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 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이 내려지므로 법원판결에 비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자발적인 감시 · 적발을 위해 의류산업협회 등 14개 업종 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등록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에서 심판 및 재심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지재권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의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및 국가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품종보호제도 운영과 민간육종가 지원 사업이 있다. 품종보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은 재배심사와 종합등록심사 및 품종명칭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고 품종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출원, 권리 실시, 침해예방, 분쟁해결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은 「종자산업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신품종개발비 지원, 해외 품종보고 또는 특허 등록품종에 대한 장려금 지원 및 특수검정비용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산림청도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품종출원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 국제기준의 재배시험 실시, 생산·수입판매신고(국내생산 및 외국 수입판매용 종자 신고 처리) 및 불법품종 유통에 대한 단속 등을 하고 있다.

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자원의 적극적인 발굴·확보를 위해 해외의 우수 해양생물자원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양생물자원의 주권강국으로의 도약과 해양생물유래 신약, 산업소재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해양생명공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3.3.23.)하고, 확보된 국내외 해양생물 및 유전자원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해양생물과 생명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 외교부

외교부는 2012년 이후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① 침해대응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역할 홍보, ② 주

요 재외공관에 지재권 담당자 지정, ③ 주요국 지재권 관련 정책 동향 및 국제 지재권 관련 규범 형성 모니터링 등 지재권 침해대응 기초정보 제공, ④ 지재권 관련 분쟁 예방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정책 및 대외협상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상시 단속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의약품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광고를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 13개 업체대표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 단속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치는 한편, 온라인 단속범위를 인터넷 뿐 아니라 SNS까지 확대하여 불법 의약품의 유통·공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유헬스케어(U-Healthcare) 심전계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16품목) 신설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약 등에 관한 허가·특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타. 지방자치단체

특허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특허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서 수행해 오던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기능은 2011년부터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각급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조사활동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 이행여부 확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문제점 및 위법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

2014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의 제·개정이 있었다. 우선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표 3-3-1〉 특허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5.1.1.)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도입 (제42조의3 신설)	발명의 내용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적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인정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제81조의3 제3항)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하고,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내야 하는 금액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
특허료 감면 확대 (제83조 제2항)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 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특허료도 추가 감면 가능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제201조 제1항)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 가능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 (제201조 제6항)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함

「실용실안법」의 일부개정은 외국어 출원을 허용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표 3-3-2〉 실용신안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5.1.1.)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제도 도입 (제8조의3 신설)	고안의 내용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어 실용신안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인정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제35조 제1항)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 (제35조 제6항)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함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인 상표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3-3〉 상표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6.11.)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제6조 제2항)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 가능
상표의 희석화 방지 (제7조 제1항 제10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마련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 신설 (제7조 제1항 제18호 및 제53조 제2항)	계약 및 업무상 관계 등으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로 하고, 상표권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권 제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표 3-3-4〉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7.1.)

디자인 창작성 요건 강화 (제33조 제2항)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 부인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 (제33조 제3항 단서)	선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그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 디자인등록 가능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 (제35조)	중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 기간을 부여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91조)	등록일 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일 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 (제36조 제2항)	출원 시 뿐만 아니라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에 의해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가능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 (제41조 및 제65조)	최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만 거절결정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제66조)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 가능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 (제87조)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출원료 뿐만 아니라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1.31.)

보충적 일반조항 신설 (제2조 제1호 차목)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제16조)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마련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제18조)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만 가능하였으나, 전시 및 공중송신도 가능토록 하였다.

〈표 3-3-6〉 저작권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14.7.1.)

국가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업무상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 (제25조 제2항)	학교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행위 (종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 (현행)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 공중송신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임

그 외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변리사법」 일부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 및 「발명진흥법」의 일부 개정 등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이 있었다.

〈표 3-3-7〉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2014)

제·개정 법률	제·개정일 / 시행일
특허법(일부 개정)	'14.6.11. / '15.1.1.
실용신안법(일부 개정)	'14.6.11. / '15.1.1.
상표법(일부 개정)	'14.6.11. / '14.6.11.
디자인보호법(전부 개정)	'13.5.28. / '14.7.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14.1.21. / '14.1.21.
변리사법(일부 개정)	'13.7.30. / '14.1.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13.7.30. / '14.1.31.
발명진흥법(일부 개정)	'13.7.30. / '14.1.31.
저작권법(일부 개정)	'13.12.30. / '14.7.1.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 개정)	'14.12.30. / '15.7.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 개정)	'14.12.23. / '15.1.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4.5.28. / '14.11.29.

제4절

201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1. 산업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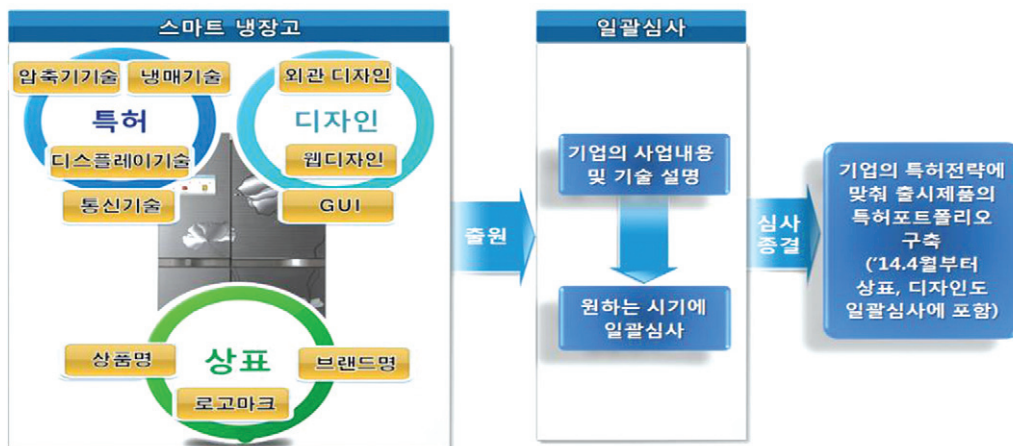
가. 고품질 권리의 신속한 창출

1) 포지티브심사 강화 및 일괄심사 제도 시행

특허청은 2014년 1월부터 기술난이도가 높은 발명의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관과 출원인의 면담에 의한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심사관과 출원인의 적절한 소통을 통하여 정확한 심사와 거절이유의 자발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괄심사 제도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맞춤형 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2013년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4년 4월부터는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출원인은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심사 결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일괄하여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4-1〉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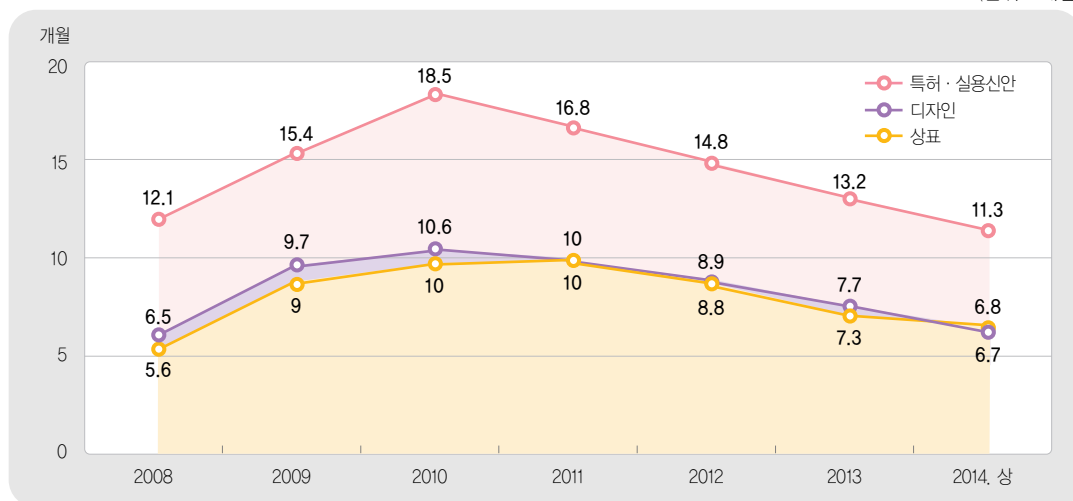
* 출처 : 특허청, 보도 자료('14.3.27.).

2) 심사처리 기간 단축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브랜드가 조기에 권리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4년 상반기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은 일본(2014년 3월, 11개월), 유럽(2013년, 26.4개월), 미국(2013년, 18.2개월) 및 중국(2013년, 10.9개월)과 비교하여 11.3개월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다. 디자인·상표의 심사처리 기간도 2014년도 상반기 디자인 6.8개월, 상표 6.7개월로 전년보다 단축되었다.

〈그림 3-4-2〉 권리별 심사처리 기간 동향

(단위 : 개월)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2013) 및 월별 지식재산통계(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2013년 12월)에 따르면, 2014년 심사처리기간이 11.7개월로 단축되면서 국민 총생산액 1조 3,433억 원 증가, 고용창출 4,347명 유발 등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¹⁾

3) 컴퓨터 프로그램³²⁾ 청구항 형식 개선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이후 출원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자체의 청구항 형식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형식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용하였으나 실질적 보호범위가 동일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형식의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를 허용한 것이다.³³⁾

개정된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고,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 확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는 한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를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2014년 PPH 대상 국가를 전년도 14개국에서 21개국³⁴⁾으로 확대하였다. 확대된 대상국가에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도입

2014년 6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외국어 특허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어 특허출원제도는 국어 이외에 영어로 된 명세서로도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권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1) Economic Study on Patent Backlogs(London Economics, 2010)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이 1년 지연될 경우, 미국·유럽·일본 3개 특허청 기준으로 연간 118억 달러(13조 3,800억 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

32)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 코드의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별도로 보호됨.

33) 2014년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

34)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영국,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표 3-4-1〉 IP5 특허출원 언어 요건 비교

국 가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언어	번역문 제출 언어
한 국	국어, 영어	국 어
미 국	모든 언어('78)	영 어
유 럽	모든 언어('78)	EPO 공식언어(영어, 독어, 불어)
일 본	일본어, 영어('94)	일본어
중 국	중국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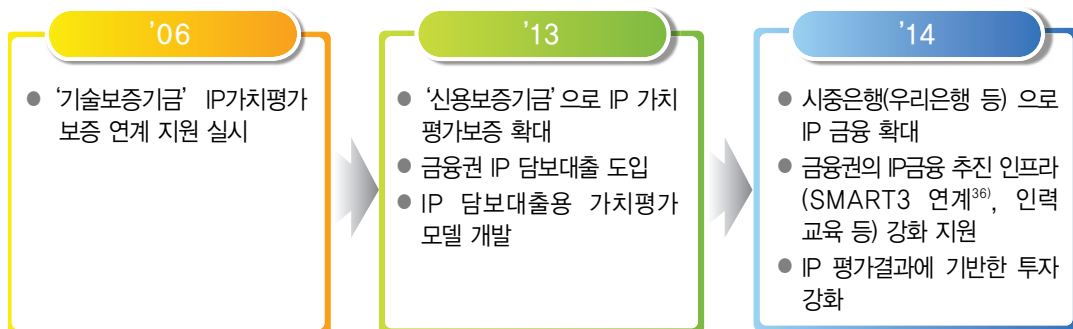
* 출처 : 특허청, 특허법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을 입법예고안 설명 자료.

나. IP · 기술금융 활성화

1) IP · 기술 평가의 제도적 인프라 고도화

2014년에는 IP · 기술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IP · 기술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201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IP · 기술 평가동향과 금융권 수요를 감안하여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 IP 특성화 평가 모듈을 반영하여 개정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도 2014년 6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온라인 간이 가치평가 시스템³⁵⁾을 개발 · 보급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시스템의 활용역량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림 3-4-3〉 지식재산(IP) 금융 추진 개요



* 출처 : 특허청 보도 자료('14.1.15.).

3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START-Value 4.0임.

36) 특허청의 특허 간이평가 시스템인 SMART3은 2014년 11월까지 총 687개사 1,246억 원의 IP 가치평가 보증에 활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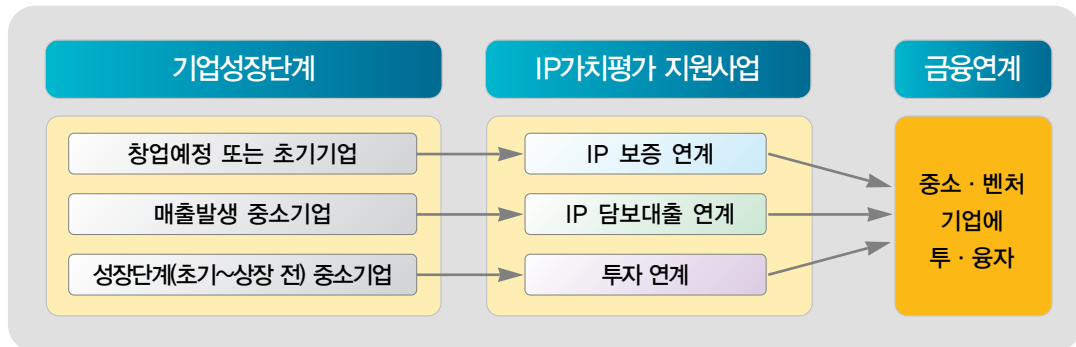
2) 금융권의 기술평가 기반 조성

2014년 6월 은행연합회는 기술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ech Data Base : TDB)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약 1,000만 건의 정보를 은행, 보증기관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등 23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벤처캐피탈 등으로 그 활용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11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신용등급 기반의 은행대출 규모는 총 9,921건으로 5조 8,848억 원을 달성하였다.

3) IP·기술 기반 금융 투자 확대

2014년 금융위원회는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금융의 투자를 지원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특허청은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시중은행에 확대·적용하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 촉진을 유도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와 IP 가치평가를 연계한 맞춤형 IP 금융을 통해 총 300개사에 1,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림 3-4-4〉 기업 성장단계별 IP·기술 금융 지원방안



*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자료('14.12.10.).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4년 11월까지 IP 담보대출로 총 88개사에 758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IP 가치평가보증을 통하여 총 121개사에 257억 원을 대출하였다. 향후 IP·기술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과 우수한 IP·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찾고 있는 금융권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발명에 대한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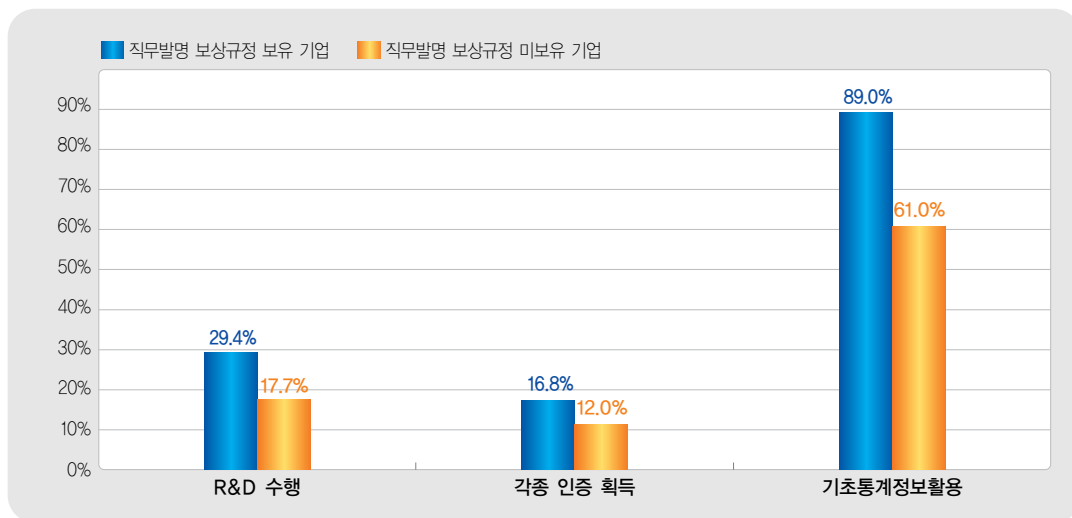
1)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개정된 「발명진흥법」(2014.1.31. 시행)은 직무발명에 참여한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 시대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개선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4-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여부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비교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무발명 관련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2013).

2)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2014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상문화 확산을 시도했다.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등록료의 한시적 감면,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시책을 병행하였다.

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2014년 11월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³⁷⁾을 기초로 하여 실무적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모범 약관을 마련하였다. 모범 약관은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주최자의 아이디어 사용 범위,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 시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분쟁 시 조정 및 중재의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하고 있다.

특허청 조사결과에 따르면,³⁸⁾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2013년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하였고, 주최자 귀속 비율은 2013년 47.3%에서 2014년 8월 이후 20%로 감소하는 등 공모전 아이디어의 보호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범 약관의 제정·배포로 공모전 참가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디자인 권리 강화

1)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

특허청은 2014년 3월 31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新헤이그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³⁹⁾에 가입하고, 2014년 7월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하였다.

헤이그협정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디자인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도 新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한

37)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13.12)에서 확정·발표됨.

38) 특허청이 2013년 11월~2014년 11월에 개최한 아이디어·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

39) 정식명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국내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조만간 新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2014년 7월 이후 출원부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보호기간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설정등록한 날부터 15년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었다. 디자인권도 특허권과 동일하게 20년 동안 보호받게 되어 디자인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3)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개선

2014년 7월부터 디자인등록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도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 시 이를 주장하면 등록받을 수 있었는데, 주장시기를 출원 시로 한정하여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출원 이외의 시점에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면 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 출원 전 출원인이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한 이유만으로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권리가 무효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 상표·디자인 정보 서비스 강화

1) 상표 5개국 협의체(TM5) 웹사이트 개통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rade Mark 5 : TM5)⁴⁰⁾는 전 세계 출원인들의 편의제고와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TM5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5월 공식 웹사이트(www.tmfive.org)를 개통하였다. 공식 웹사이트는 각 개별 국가의 상표관련 법령, 심사기준, 상품목록 및 출원심사통계 등 상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세계 디자인권 정보 제공 확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⁴¹⁾는 2014년 4월부터 미국, 일본, WIPO의 해외 디자인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는 기존 디자인권 포털 서비

40) 전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협의체.

41) www.kipris.or.kr.

스인 디자인맵⁴²⁾과 함께 전 세계 디자인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 저작권

가. 저작물 이용기반 선진화

음악 분야 저작권 집중관리에 있어서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쟁을 통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3년 12월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1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14년 2월 24일에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2014년 9월 12일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전문경영인제 도입, 투명한 회계운영, 재원조달 방안 이행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초기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추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신규단체에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유도하여 권리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한 저작물 역시 자유이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수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권역별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대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기관은 약 4배 증가(80개→341개)하였고,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는 약 3배 증가(1,005천 건→2,933천 건)하였다.

42) www.designmap.or.kr.

나.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불법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게임사설서버의 저작권법 위반 기획 수사를 진행하였고, SD 카드, PC방, DVD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해외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유통을 줄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공고히 하였다.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협력채널을 구축함과 동시에 해외 저작권 침해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현지 유통채널과 우리나라 권리자와의 교류 촉진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 저작물에 대한 해외 합법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WIPO와 협력하여 아시아·남미 등 개도국 대상 현지 저작권 보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현지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하였다.

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문화 정착

1) 저작권 분야 표준계약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영화·출판·방송 등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나,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⁴³⁾ 및 각 계약서별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여 창작자가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였다.

2)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공모전 주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 이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43)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3)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분쟁의 급증으로 국민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영화계 중심의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음악, 만화, 캐릭터 등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의 확산을 추진하고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3. 신지식재산권

가. 식물신품종 보호

식물 신품종의 개발은 식물이라는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집약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한 식물신품종 개발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작물, 산림품종 및 해양수산식물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UPOV)의 일원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국제적 보호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농림축산식품부·농업진흥청·산림청) 협력 R&D 프로젝트로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 GSP)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분야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법적 조화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지리적 표시 보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GI)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표시하는 것이다. WTO TRIPs는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도입한 이래로, 2009년 개정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04년 개정 상표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3-4-2〉 지리적 표시 보호 소관부처와 근거법

	법 률 명	소 관 부 처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법 제2조,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23조, 제50의3조, 제66조, 제71조, 제73조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그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은 지리적 표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FTA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특별보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등록배제효가 부여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의한 사용금지효가 부여되므로 국내 등록을 받지 않아도 등록에 의한 법적 효과와 사실상 동일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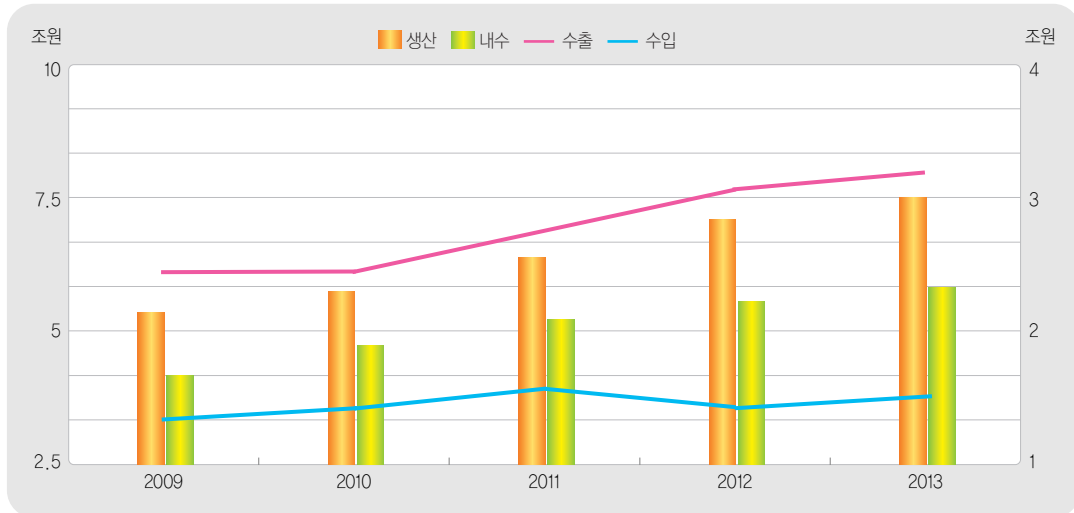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FTA를 통해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한·EU는 FTA를 통해 지리적 표시 보호범위를 ‘동종상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상품’보다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를 상표법에 반영하기 위해 후출원배제효, 사용금지효를 기존의 ‘동일상품’에서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한·캐나다는 FTA를 통해 양국이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합의한 바 있으며, 페루, 터키와의 FTA에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다. 유전자원 보호

국내 바이오산업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이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연평균 20%의 성장이 예상된다. 차기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산업은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은 신지식재산으로서 그 가치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⁴⁴⁾ 실제로도 권리화 등에 관한 쟁점에 있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44) 스위스 제약회사 로셰 홀딩(Roche Holding)사는 중국의 토착식물인 팔각회향에서 시킴산(Shikimic acid)을 추출하여 신약인 ‘타미플루(Tamiflu)’를 생산,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30억 달러의 부가 가치를 올리고 있다.

〈그림 3-4-6〉 바이오 산업 동향



* 출처 :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2013년 기준).

이러한 유전자원은 과거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1992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확립되었다.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2010년 나고야의정서⁴⁵⁾가 채택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우리정부는 보호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3-4-3〉 유전자원 보호의 소관부처와 근거법의 목적 및 규율대상

소 관 부 처	법 률 명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5) 본 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다.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경우 실물과 정보 양자를,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정보를 각각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부부처는 각각의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 수장 및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보호·관리 외에 유용성 평가, DB 구축, 생물자원 제품화 등 다양한 유용생물자원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 전통문화 표현물·전통지식 보호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요구가 커지면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2000년 WIPO 총회결과로 WIPO 유전자원·전통지식·민속표현물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 IGC)가 설치되었으며, 2001년 제1차 정부간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 제28차 정부간위원회까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점검하고, 국내 전통문화표현물 이용 실태와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는 구별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정책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4년도에 전통지식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전통지식 DB에 대한 검색서비스⁴⁶⁾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상표법 개정⁴⁷⁾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 퍼블리시티권 보호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초상보호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일면 유사하나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을 포함한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보호 객체로 한다는 점과 재산권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구별될 수 있다.

46)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을 통해 전통지식 관련 논문, 약재, 처방, 병증, 향토음식, 생활, 농업, 무형문화재, 전통식품, 전통문양 등에 관한 36만여 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7) 법률 제11113호, 2012.3.15. 시행.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양산과 연예산업의 확대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명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재산적 가치, 고객흡인력, 인지도가 인정될 수 있는 ‘특정인의 개성이 표출된 동일성(identity)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보호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우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현행 법체계하에서 독점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객체에 대한 보호의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퍼블리시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⁴⁸⁾

4. 영업비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상담·제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수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에 기술 분쟁 조정·중재 제도 등의 활용을 권장하는 등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국가정보원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4년 5월 22일)에 상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관련 규제와 지원책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⁴⁹⁾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기술유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다.

48)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으로 별도의 입법을 통한 방안 이외에 민법에 의한 보호방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4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제 4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제1절 |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분쟁해결 지원

1.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가. 산업재산권 침해 및 단속 현황

1)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특허청은 위조상품 관련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서울, 대전, 부산)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의 판매·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기존 산업재산보호과 내에 소속되어 있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하여 위조상품 단속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조사과를 신설하였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 위조상품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온라인 포렌식(Forensic) 등 전문장비를 갖춘 온라인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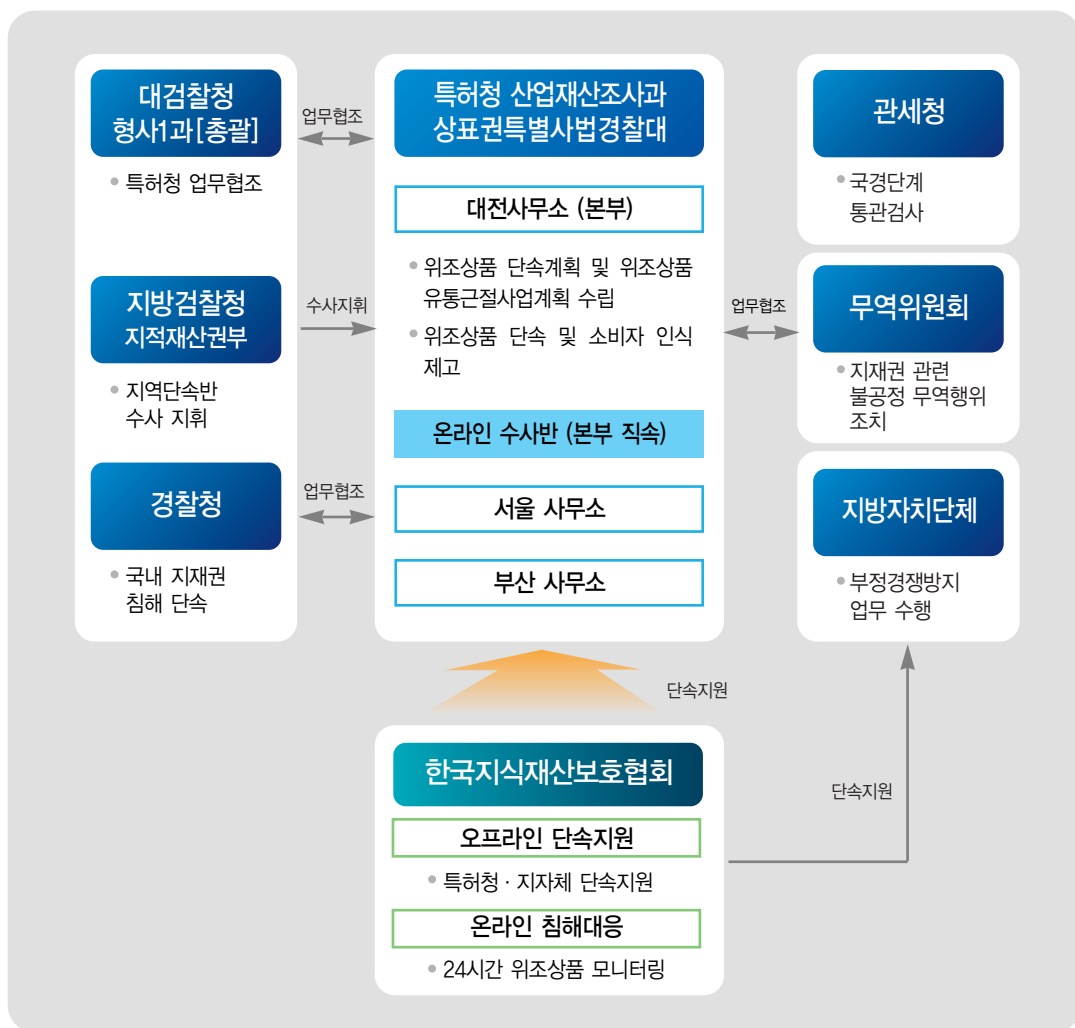
〈표 4-1-1〉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구 분		'10.9~'12	'11	'12	'13	'14	합계
형사 입건	인원(명)	45	139	302	376	430	1,292
	압수(점)	28,629	28,589	131,599	822,370	1,114,192	2,125,379
정품가액(억 원)		54.8	85.5	246.7	567.2	880.8	1,835

* 출처 : 특허청.

2014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자동차 부품류, 장신구류, 신발류, 의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880억 원에 이른다.

〈그림 4-1-1〉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체계



향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위조상품 척결을 위해 위조상품 단속전담 수사관을 증원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조상품 유통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외에 가짜 의약품, 자동차 용품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사례

2014년 2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기획단속을 통해 부산지역 등에서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이용하여 10여년 간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일당을 검거하였다(의류 1만 5천여 점 현장압수, 정품가액 29억 원 상당).



〈위조상표를 붙인 아웃도어 바지〉



〈현장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2) 관세청의 위조상품 단속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위조상품 밀수 등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들어오는 위조상품은 적발해도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위조상품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개인이 구매한 우편물(특송 화물 포함)에서 위조상품이 적발되는 경우 이를 압수하여 폐기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반입물품 이외에 해외반출 목적의 국제우편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을 펼쳐 2014년 144건(적발수량 10,329점)을 적발하였으며, 외국세관과의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불법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위조상품 주요 판매처인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최근 단속대상으로 추가된 지리적 표시, 특허, 디자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정보교류 및 단속기법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4-1-2〉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 분		'12		'13		'14	
		적발건수	금액	적발건수	금액	적발건수	금액
지재권 침해	상표권	508	7,642	338	5,462	240	4,606
	저작권	66	1,604	25	102	16	459
	특허권	1	66	1	91	1	90
	기타	13	20	9	95	2	9

* 출처 : 관세청.

* 기타 : 디자인, 부정경쟁방지행위 위반 등.

참고 관세청의 위조상품 불법 반입행위 단속 사례

서울세관은 개인소비를 위장한 위조상품 불법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출된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하여 중국산 위조상품 3만 5천점(정품가액 447억 원 상당)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와 관세사 등 관련 일당을 검거하였다(2014년 7월).



〈단속된 중국산 위조상품〉



〈세관이 압수한 위조상품〉

3) 검찰·경찰·(舊)해양경찰청의 위조상품 단속

대검찰청은 전국 26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매년 지재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2013년에는 지재권 침해사범 70,396명을 적발하여 그 중 75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4-1-3〉 검찰청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단속인원(명)	81,854	82,966	84,001	70,396	72,079	391,296
구속(명)	1,446	1,334	953	751	637	5,121

* 출처 : 검찰청.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의류, 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위조상품 유통 등 지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에서만 운영하던 지능범죄수사대를 2014년부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까지 확대 설치함으로써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표 4-1-4〉 경찰청의 상표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구 분	'10	'11	'12	'13	'14.8	합계
발생건수(건)	3,172	2,178	1,640	1,996	1,804	10,790
검거인원(명)	4,466	2,831	2,378	2,580	2,173	14,428
기소(명)	3,642	2,093	1,732	1,913	1,549	10,929

* 출처 : 경찰청.

(舊)해양경찰청은 가방·의류·의약품 등 주요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특히,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상표권 위반사범을 검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표 4-1-5〉 (舊)해양경찰청의 상표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

구 분	'10	'11	'12	'13	'14.11	합계
단속인원(명)	38	52	42	37	16	185
압수금액(백만원)	247,711	8,279	54,749	26,368	35	337,142

* 출처 : (舊)해양경찰청.

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의약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상시 단속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의약품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 사이트 및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의 유통·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을 통한 불법 판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법 의약품의 구매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참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의약품 명칭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품 20여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은 물론 시력상실, 청력감퇴 등 감각기관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4).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향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인터폴·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해외 불법제조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의약품을 신속하게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4-1-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의약품 단속 실적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온라인 게시물 삭제(개)	822	2,409	10,912	13,542	16,394	44,079
고발 · 수사의뢰(명)	48	15	14	51	39	16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자발적인 감시를 위하여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한국베어링공업협회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14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또한, 전국의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제2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발족하여 무역위원회의 제도 홍보와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림 4-1-2〉 제1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활동 및 제2기 출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홍보 캠페인〉
(삼성역, '14.8.27.)



〈제2기 지식재산권 지킴이 출범식〉
(COEX, '14.11.24.)

〈그림 4-1-3〉 무역위원회가 제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5가지 유형

* 출처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

〈표 4-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지재권 침해	상표권	3	1	3	4	1	12
	특허권	7	3	5	1	4	20
	실용신안권	2	1	—	—	—	3
	디자인권	1	—	—	—	2	3
	저작권	—	—	—	—	—	—
	영업비밀	—	—	—	2	—	2

* 출처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

6)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

전국 17개 지자체는 연간 위조상품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역 내 위조상품 유통 빈발 구역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이행여부 확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특허청, 관세청, 경찰 및 상표권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4-1-8〉 지자체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적

(단위 : 명, 점)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시정권고	3,570	2,044	2,325	2,333	1,806	12,078
시정여부 확인	-	-	92	478	457	1,027
적발물품	19,234	10,821	9,246	11,253	8,190	58,744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단속과 수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판매 · 유통이 빈번한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등 주요 변화가 및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위조상품 판매방지 및 위조상품 위법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 사례

서울 중구청은 2014년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일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413건, 65,090점(정품가 299억 원)을 적발하고 판매업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조상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종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불시에 심야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중구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서울중부서-중구청 위조상품 단속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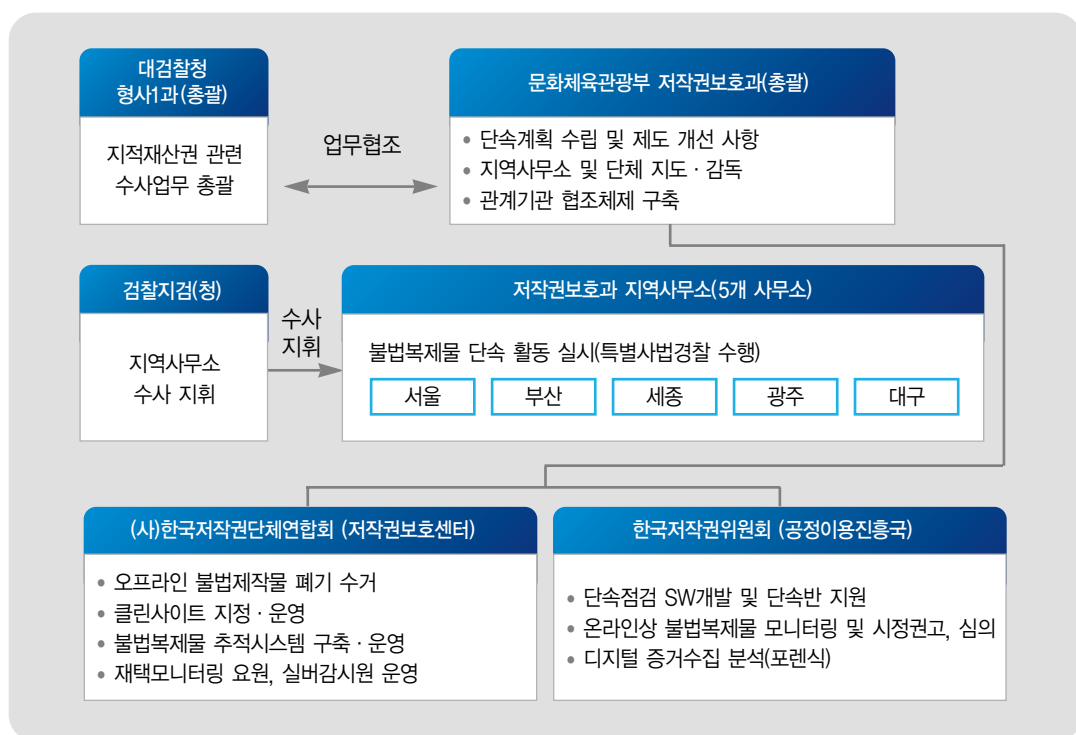
나. 저작권 침해 및 단속 현황

1) 단속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의 다섯 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는 해당 관할지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지원체계 운영의 확대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건수도 2008년 11명, 2009년 312명, 2010년 716명, 2011년은 1,115명, 2012년 1,803명, 2013년 1,192명에서 2014년 2,136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1-4〉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복제물 단속 체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이송·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등 기술지원 요청을 받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취약시간대 집중감시 및 불법복제물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해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내사착수 및 압수영장 집행 지원을 통해 디지털 증거수집을 진행한다.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베이스(DB) 및 소스코드 등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증거분석실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물 불법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 복제물 공유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은 2010년 94건, 2011년 291건, 2012년 32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에는 웹하드 기획수사(16개 업체 31개 사이트)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분석지원을 하였다. 2013년에는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인 토렌트 사이트(9개 사이트)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124건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설게임서버에 대한 수사지원 9건과 함께, 미등록·비제휴 웹하드를 운영하며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웹하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획수사를 지원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사범 수사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4-1-9〉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검찰	기타	합계
	본부	서울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소계			
'10	—	18	39	17	20	—	94	—	—	94
'11	2	28	14	26	8	3	81	204	6	291
'12	1	118	65	42	61	24	311	11	1	323
'13	64	74	67	48	70	66	369	3	0	372
'14	76	39	110	43	71	59	398	13	0	411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서는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및 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웹하드 등록제 시행, 검찰·경찰의 수사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은 폐쇄형 커뮤니티, 웹하드 등의 카페와 같이 보다 은밀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 35,345건의 권고조치를 한 이후 2010년에는 85,085건, 2011년에는 107,724건, 2012년에는 250,039건, 2013년에는 170,867건, 2014년에는 296,360건 등 매년 권고조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률은 99%에 이르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는 시정권고 불이행 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1-10〉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현황

구 분	연간실적	시 정 권 고		
		경 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09	33,545	13,466	21,840	39
'10	85,085	42,794	42,200	91
'11	107,724	54,504	53,106	114
'12	250,039	130,304	119,560	175
'13	170,867	86,455	84,412	-
'14	296,360	150,722	145,638	-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와 별도로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및 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그리고 반복침해자의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그리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82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총 1,207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99%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별도의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표 4-1-11〉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현황

(단위 : 개, 건)

구 분	처분명	OSP	건수
'10	경 고	40	696
	삭제 또는 전송중단	5	43
	계정정지	3	11
	합 계	48	750
'11	경 고	15	220
	삭제 또는 전송중단	15	220
	계정정지	4	17
	합 계	34	457

* '12년, '13년, '14년 현재 시정명령 조치건수 없음.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림 4-1-5〉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업무 절차 흐름도



4)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정보·프로그램에 대한 수거·폐기 및 삭제업무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2007년부터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상설단속반 운영을 통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불법복제 음악의 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에 제작공장을 기획 단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년 하반기 부터 노년층을 중심으로

〈표 4-1-12〉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점)

구 분	음악		영상		출판		게임		기타		합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09	367	35,163	873	380,769	541	11,956	2	1,480			1,783	429,368
'10	310	458,522	430	310,355	704	18,902	9	6,529			1,453	794,308
'11	150	41,227	435	211,491	489	16,541	—	150			1,074	269,409
'12	326	412,100	535	209,539	537	17,224	1	427			1,399	639,290
'13	741	13,544,783	596	184,107	460	13,225	—	5	1	1,085	1,798	13,743,205
'14	935	15,320,691	382	380,419	392	33,576	1	409	—	29	1,710	15,735,124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일명 ‘효도라디오’에 음원 수천곡이 내장된 SD카드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참고 전국 재래시장(장터) 등 음악 불법복제 SD카드 집중 단속 사례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길거리 노점, 지하철 등 오프라인 상에서 기습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음반 및 영상물의 판매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희 고령 인력의 고용시장 재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 인력으로 구성된 실버감시원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판매현장 발견 시 단속기관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13〉 실버감시원 제보를 통한 단속 실적

(단위 : 건, 점)

구 분	제보 실적(건)	단속 실적(건)	단속 실적(점)			합계
			음 악	영 상	게 임	
'12	1,291	406	96,484	40,587	292	137,363
'13	1,812	579	798,898	31,968	5	830,871
'14	1,292	430	2,824,646	17,489	—	2,842,135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5)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택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재택모니터링은 휴일 없이 주·야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 35명, 2010년 71명, 2011년 100명, 2012년 100명, 2013년 350명, 2014년 300명으로 재택모니터링 요원 채용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불법복제물 유통근절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채용하여 총 400명 규모로 재택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4-1-14〉 재택모니터링 운영 실적

(단위 : 건, 점)

구분	'10		'11		'12		'13		'14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음악	6,877	736,533	11,275	1,210,329	27,351	2,969,024	57,874	2,486,174	81,991	3,331,659
영상	196,767	2,295,964	196,160	2,264,515	295,305	3,055,388	1,261,902	2,188,579	1,431,569	3,929,014
출판	7,889	20,111,250	17,439	24,625,504	27,109	34,000,473	30,877	26,137,897	40,519	28,483,408
게임	22,466	128,677	20,456	130,067	25,558	89,450	44,284	59,190	35,006	36,469
만화	3,718	9,875,833	15,867	52,223,470	16,383	69,729,984	37,013	41,459,969	50,825	49,933,302
SW	-	-	2,089	5,107	21,012	38,337	17,675	23,354	34,912	37,271
합계	237,717	33,148,257	263,286	80,458,992	412,718	109,882,656	1,449,625	72,355,163	1,674,822	85,751,123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6)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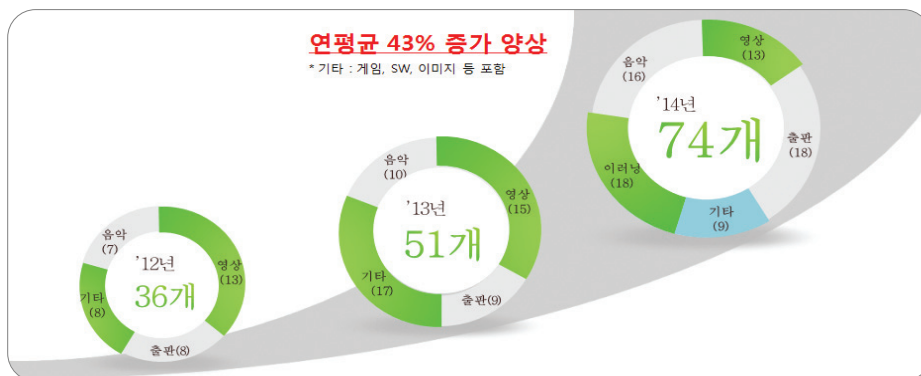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유통시키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6〉 클린마크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평가위원단의 재평가를 통해 클린사이트 지정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클린사이트에는 클린마크를 부여하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클린사이트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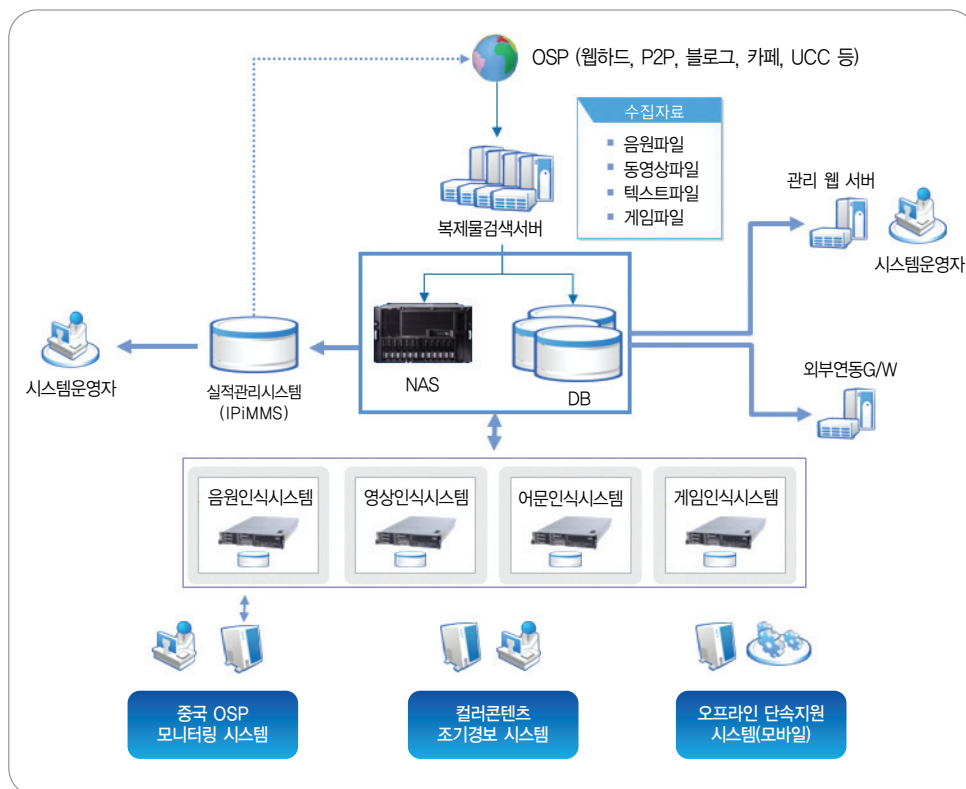
〈그림 4-1-7〉 클린사이트 지정 추이(2012년 · 2014년)



7) 불법복제물 추적 · 관리 시스템(ICOP)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 ICOP)은 저작물 자동 검색 및 특징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모니터링하여 복제 ·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ICOP은 크게 특수한 유형의

〈그림 4-1-8〉 ICOP 시스템 구성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블로그, 카페, UCC 사이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과 검색결과 및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콘텐츠를 인식하는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음악·영화·방송·출판·만화·게임·SW 등과 같은 저작물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OSP들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ICOP은 불법복제물의 자동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현황 데이터와 실적 정보를 도표와 그래프로 제공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적 관리 기능도 수행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활용하여 2009년 음악장르를 시작으로 2010년 영화, 2011년 방송·출판·게임, 2012년 만화·SW로 장르를 확장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다양한 침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OSP모니터링 시스템,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실시간 연계를 위한 ICOP 통합운영실을 구축하였다. 2013년도에는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을 실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요 콘텐츠의 초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에는 비트토렌트 사이트 불법 복제물 자동 검색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고, 그 외의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ICOP 적용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4-1-15〉 ICOP을 통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구 분	대 상	건	점	증 감
'09	음악	3,188	173,767	-
'10	음악, 영화	17,799	472,439	172% 증가
'1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82,621	3,161,355	569% 증가
'1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491,253	65,132,086	1,960% 증가
'13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207,888	57,901,693	11% 감소
'14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255,866	55,871,779	3% 감소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다. 신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성과

1) 식물신제품 보호정책의 성과

국립종자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자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일례로 핵산 분석법을 활용한 품종 식별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 품종에 적용하고 있는데, 딸기의 경우 26개 단순 반복 염기서열 마커를 이용하여 딸기 110품종에 대한 핵산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 4-1-16〉 품종식별 마커를 이용한 DNA 구축 현황

구 분	작물명	활용기법	품종수	구 분	작물명	활용기법	품종수
채소류	고추	SSR ⁵⁰⁾	672	과수류	복숭아	SSR	174
	수박	SSR	300		사과	SSR	67
	멜론	SSR	180		블루베리	SSR	40
	토마토	SSR	122		감귤	SSR	113
	양파	SSR	77		자두	SSR	160
	배추	SSR	435		배	SSR	87
	딸기	SSR	110	화훼류	장미	SSR	70
	참외	SSR	108		국화	SSR	128
	호박	SSR	167	식량 작물	벼	SSR	373
						SNP ⁵¹⁾	78
	무	SSR	288		보리	SSR	71
	상추	SSR	171		콩	SSR	148
	오이	SSR	175		옥수수	SSR	90
			버섯류	느타리	SSR	69	
계(25작물) 4,473 품종							

* 출처 : 국립종자원, 종자관리 주요통계(2014).

2014년 12월 기준 품종보호권은 총 5,288 품종이 등록되었으며, 작물군 별로 살펴보면, 화훼류 2,897, 채소류 921, 식량 832, 과수 256, 특용 187, 버섯 93, 사료 32, 산림조경수 65, 수산식물 5 품종이다. 5,288 품종 중 국내 품종은 4,067 품종(76.9%)이며, 외국 품종은 1,221 품종(23.1%)으로 국내 품종의 등록건수가 외국품종 등록건수의 3배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 품종보호권 등록은 국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자업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작물 분류별로 살펴보면 화훼류, 채소류, 식량작물의 출원·등록이 활발하며, 산림 분야 및 수산식물 분야는 출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0) SSR(Simple Sequence Repeat) : 반복염기서열 분석법, 염색체 내의 특정 부위에 분포하는 단순 반복 염기서열의 차이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법.

51)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단일염기다형성으로 유전체 상에서 뉴클레오티드 하나의 차이를 갖는 변이.

〈표 4-1-17〉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출원 작물	합 계						국 내						외 국			
	합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체	국가	기타	합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체	국가	기타	합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훼류	2,897	386	1,306	608	570	27	1,700	352	143	608	570	27	1,197	34	1,163	
채소류	921	30	679	63	117	32	911	30	669	63	117	32	10		10	
식량작물	832	29	32	69	640	62	828	28	29	69	640	62	4	1	3	
과수류	256	94	27	35	96	4	251	93	23	35	96	4	5	1	4	
특용작물	187	5	27	24	125	6	186	5	26	24	125	6	1		1	
버섯류	93	21	12	36	20	4	90	19	11	36	20	4	3	2	1	
사료작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산림조경수	65	35	3	6	21		65	35	3	6	21		0			
수산식물	5		1	1	3		5		1	1	3		0			
합계	5,288	605	2,088	843	1,617	135	4,067	567	905	843	1,617	135	1,221	38	1,183	0

* 출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공보 제198호」('15.1.15.).

2) 지리적 표시 보호정책의 성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는 2002년 보성녹차 1호 등록을 시작으로 164건(농축산물 93건, 임산물 51건, 수산물 20건)이 등록되었고,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2006년 장흥 표고버섯 1호 등록을 시작으로 212건이 등록되었다('14년 12월 현재).⁵²⁾

〈표 4-1-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연도	등록수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08 이전	67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황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고려인삼), 고려태극삼,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꽃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꽃감, 남해창선고사리,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

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qs.go.kr>) 참조.

연도	등록수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09	23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영동포도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약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자, 홍천자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장흥키조개
'10	18	진도대파,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예산사과,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보성옹치올벼쌀, 사천꽃마늘	정선곤드레, 보은대추, 청도반시, 거제맹종죽순, 태백곰취, 인제곰취	-
'11	19	고령수박, 의령망개떡, 강릉한과, 금산깻잎, 과산찰옥수수, 인제콩, 김포쌀, 영광한우	덕유산고로쇠수액, 진도구기자, 횡성참숯, 담양죽순, 무주머루와인, 충주밤, 함양곶감	완도김, 완도넙치, 장흥김, 장흥매생이
'12	15	나주배, 청령마늘,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부산대저토마토	울릉도 우산고로쇠 수액, 강릉개두릅, 화순작약, 화순목단, 원주 못 칠액	여수굴, 남원미꾸라지, 고흥미역, 고흥다시마
'13	10	안성배, 진영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천안배, 고령감자	무주천마, 홍천명이	진동미더덕
'14	12	고흥석류, 진도올금, 포항시금치(포항초)	청양표고, 청양밤, 무주호두, 인제고로쇠수액, 영월곤드레	신안김, 해남김, 해남전복, 여지만새꼬막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특허청 등록건수는 2009년에는 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71건이 등록되었다.

〈표 4-1-19〉 연도별 단체표장 등록 건수

구분	'09	'10	'11	'12	'13
단체표장 등록 건수	10	55	15	48	71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연보(2013).

3) 유전자원 보호정책의 성과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 발간한 2013년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정부연구기관, 대학연구실, 자연사박물관, 서식지 외 보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은 총 11,760,81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연구기관에서 5,413,823점, 대학연구실에서 1,925,697점, 자연사박물관에서 1,049,000점,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3,463,217점을 보유하고 있다.⁵³⁾

53)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2013)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표 4-1-20〉 국가 생물자원 보유 현황

No	구 분	기관 수	생물자원	유전자원	자원합계
1	정부연구기관	11	4,312,804	1,101,019	5,413,823
2	대학(연구실)	40	1,742,301	183,396	1,925,697
3	자연사박물관	13	1,047,000	2,000	1,049,000
4	서식지 외 보전기관	23	2,202,113	1,261,104	3,463,217
5	합 계		9,246,093	2,514,719	11,760,812

* 출처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2013).

이 중 부처별 정부연구기관의 생물자원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1-21〉 소관부처별 정부연구기관 생물자원 보유 현황

소속 및 관련 부처	기관명	생물자원	유전자원	자원합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953,003	839,431	1,792,434
	국립산림과학원	269,472	326	269,798
	국립수목원	550,810	0	550,81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90,805	24,643	215,448
	국립식량과학원	2,823	6,329	9,152
	농림축산검역본부	0	5,150	5,150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	65,394	0	65,39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868,357	49,241	917,598
	극지연구소	5,964	14,144	20,108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337,682	83,967	2,421,649
	국립공원관리공단	15,256	1,078	16,334
	국립생태원 ⁵⁴⁾	0	0	0

* 출처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2013).

2.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가.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분쟁의 당사자는 심판 및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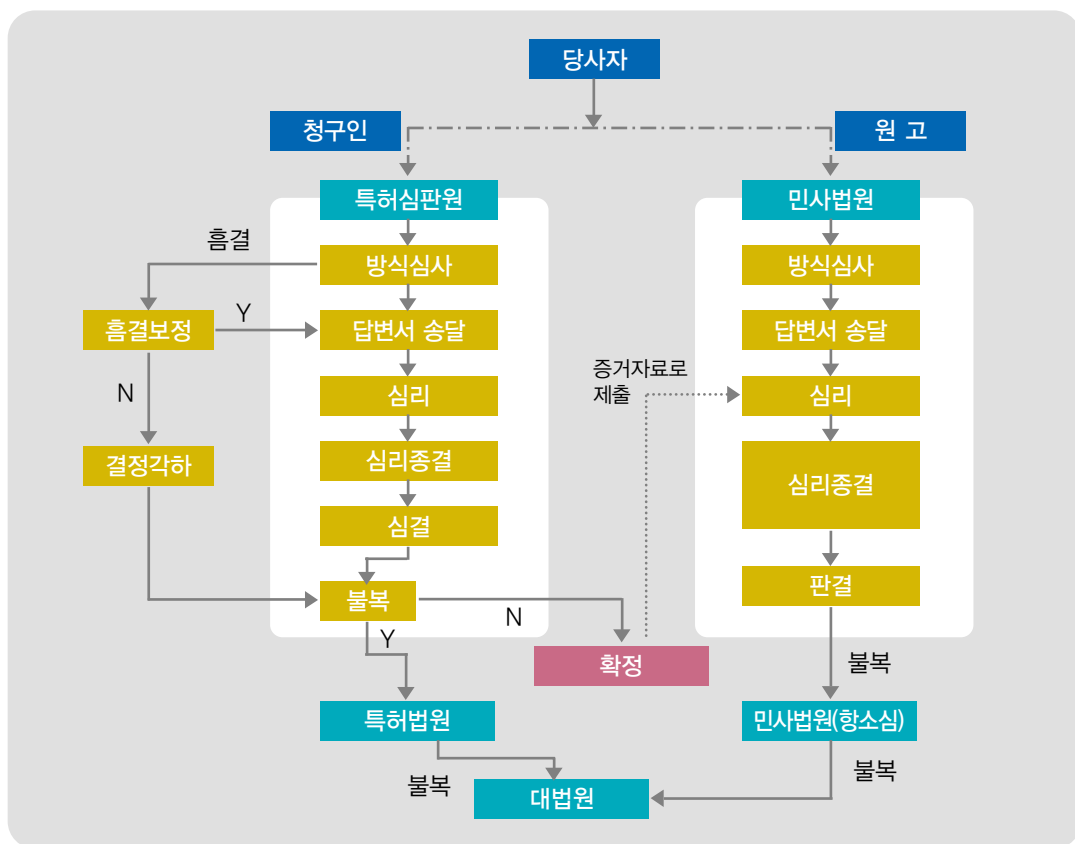
54) 국립생태원은 2013년 신설기관으로 보유자원 없음.

은 특허심판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심판원에서, 소송 절차는 민·형사 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심판원⁵⁵⁾의 심판 절차를 통해서 산업재산권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다. 이외에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정정하거나, 그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등록된 권리에 대한 실시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분쟁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림 4-1-9〉 특허심판 및 특허민사소송 흐름도



55) 특허심판원은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여 심판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13년 심판당사자 1,560명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85%), 경기(3.5%) 지역의 심판당사자가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쟁해결 지원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위탁을 받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직접 대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분쟁해결 지원의 대상자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록장애인,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6세 이상과 만 19세 미만인 자, 소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 범위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록장애인,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⁵⁶⁾

〈그림 4-1-10〉 심판대리 지원 처리절차



〈그림 4-1-11〉 소송비용 지원 처리절차



* 출처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56)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경우 지원 금액은 신청 건당 최대 500만원(대기업과 분쟁 중인 경우 최대 1,000만원).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직접대리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에는 32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4-1-22〉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직접대리 지원 실적

(단위 : 건)

구 분	'11		'12	'13	'14
	직접대리	비용지원			
지원 건수	12	27	29	14	32

* 출처 : 2014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한편, 민사소송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은 지역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및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표 4-1-23〉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민사소송비용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11	'12	'13	'14
지원 건수	19	21	17	28
지원 금액	103	111	88	145

* 출처 : 2014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 접근 편의성 제공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 RIPC)는 지역 내 지식재산보호의 활성화 및 변리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특허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마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0개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 전문 인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므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종합 지원을 통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지재권 역량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성장하여 21세기 지식재산 창조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이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상담 창구인 특허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별, 심사별, 분쟁별 대응을 위한 절차적 방법의 안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일반인 및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CQM(Contact Center Qualified Mark) 및 KS 인증을 획득하였고, 'PC

원격지원 상담서비스'와 '엔젤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개설 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6,168건(월 평균 19,574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에는 연간 686,664건(월 평균 57,222)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져 2002년 대비 192%가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⁵⁷⁾

3) 법률 자문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출원·심사·등록에 대한 제반절차 등 권리획득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쟁대응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고장·심판청구서·의견서·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심판·소송 쟁점의 파악방법, 권리범위해석 방법 등 절차적·실체적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표 4-1-24〉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법률상담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구 분	지재산 관련 상담					서류 작성	지재산 설명회	합계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내방자 상담	순회 상담	소계			
'07	2,348	904	915	540	4,707	405	48	5,160
'08	2,736	1,142	1,122	719	5,719	458	63	6,240
'09	3,269	1,175	1,261	682	6,387	462	74	6,923
'10	3,658	1,085	1,155	710	6,608	500	13	7,121
'11	4,445	1,290	1,652	622	8,009	652	9	8,670
'12	5,883	1,565	2,289	582	10,319	801	12	11,132
'13	12,609	856	2,350	489	16,304	700	11	17,015
'14	14,967	955	2,186	720	18,828	860	15	19,703

* 출처 : 2014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4)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또는 해외 전시회 참가 시 해외경쟁사와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납품기업으로부터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우리기업에게 해외경쟁사의 특

57)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13).

허분석, 무효 및 회피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경고장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받은 경우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침해소송 발생 시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 및 기술검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을 통해 2011년 72개사, 2012년 110개사, 2013년 128개사를 지원하고 2014년에는 283개사를 지원하여 점차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표 4-1-25〉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주요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수출 전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	전시회 참가	분쟁확대 예방	라이선스 전략	분쟁피해 예방	권리행사 전략	합계
'09	1	1	1	21	14	5	2	45
'10	22	4	3	16	9	15	9	78
'11	20	7	1	19	—	17	8	72
'12	58	6	2	19	2	13	10	110
'13	77	12	1	14	7	6	11	128
'14	217	24	—	21	12	—	9	283
합 계	395	54	8	110	44	56	49	716

* '14년 컨설팅 유형 개선으로 전시회 참가, 분쟁피해 예방 유형 통합.

5)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권리자에게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이나 일반인 등이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상, 어문 등의 저작물이 문제되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고소에 따른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저작권 지킴이 교육’ 이라 한다)’ 를 도입하였다.

저작권 지킴이 교육은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아래 저작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은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지킴이 교육은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검찰청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성인,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 저작권 지킴이 교육은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미성년자)들만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침해자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과실로 침해하였고 교육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에는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저작권 지킴이 교육으로 2,461명(성인 2,442명, 미성년자 19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4-1-26〉 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교육이수 인원	161	7,812	3,444	2,657	2,856	2,426	2,461	21,817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편, 청소년은 초범인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는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소송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DR은 소송의 지연 및 비용부담에 따른 불만에서 시작된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으로 행정기관이나 단체는 조정기관을 두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ADR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법관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 하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 절차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을 행하는 기관과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기관이 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배정받아 진행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 학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 6부와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단독 4부 등 총 11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의 대상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보상금에 관한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조정 신청 건수는 130건이었으며, 이월된 28건을 합하면 총 158건이 진행되어 그 중 51건이 성립되었다. 유형별로는 사진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어문저작물의 비중이 높았다.

〈표 4-1-27〉 연도별, 분야별 조정 현황

(단위 : 건)

분야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합계
'09	10	3	1	7	-	11	-	-	2	1	4	-	16	55
'10	18	6	-	12	-	7	2	1	1	-	7	-	8	62
'11	26	1	-	11	-	7	5	2	-	-	11	-	19	82
'12	17	13	-	1	-	4	-	-	-	-	10	-	33	78
'13	23	4	1	6	-	5	5	1	1	-	22	-	33	101
'14	19	1	-	8	-	73	-	-	1	-	8	-	20	130
합계	113	28	2	45	0	107	12	4	5	1	62	0	129	508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표 4-1-28〉 조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 수			처 리 현 황						
	전년 이월	신규	합계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합계	성립률
'09	-	-	-	29	10	13	3	-	55	74.4%
'10	-	62	62	23	17	7	-	15	62	57.5%
'11	15	82	97	28	29	28	-	12	97	49.1%
'12	12	78	90	21	27	27	-	15	90	43.8%
'13	15	101	116	34	27	26	1	28	116	55.7%
'14	28	130	158	51	49	49	-	9	158	51.0%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근 법원은 ‘소송에서 조정으로’, ‘법관 조정에서 비법관 전문가 조정으로’, ‘변론이후 조정에서 조기조정(early mediation)으로’ 등의 기치아래 조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전담자 주도형으로 단기간 동안 진행되는 조기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은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의 내용·성질에 적합하게 분류·배정하는데, 서울법원조정센터나 상근조정위원 등 법원 내의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배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법원 내의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법원 부속형 조정’ 이라 하고,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배정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법원 연계형 조정’ 이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년 3월부터), 남부지방법원(2014년 9월부터)으로부터 총괄조정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2013년 3월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그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29〉 법원 연계형 조정처리 현황(서울중앙지법)

(단위 : 건)

구분	접 수			처 리 현 황						
	전년 이월	신규	합계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합계	성립률
'13	—	113	113	36	53	5	1	18	113	40.4%
'14	18	182	200	80	98	5	1	16	200	44.9%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와 협력하여 2013년부터 매년 ‘조정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⁵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 또는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⁵⁹⁾

58) 발명진흥법 제41조.

59) 발명진흥법 제44조.

1995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접수된 조정신청은 73건이며,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21.4% 수준이다.

〈표 4-1-30〉 연도별 조정신청 현황과 성립건수

(단위 : 건)

구 분	'09	'10	'11	'12	'13	합계
신 청	4	3	2	2	3	14
성 립	1	—	—	2		3
불성립	3	3	2	—		8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09), 2009년~2013년 자료는 정보공개시스템 공개정보.

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가 투기의 대상이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주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전담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관련 연구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02 ~ 2004년 까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26건으로서, 그 처리에 있어서는 이전 42건, 말소 48건, 기각 12건, 합의취하 18건 및 수수료 미납 취하 6건에 이른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368건이 접수되어 그 신청 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청 건의 처리는 이전, 말소 및 합의에 의한 취하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있다.

〈표 4-1-31〉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정신청	조정 결정				취하
		이전	말소	기각	소계	
'09	25	7	16	—	23	2
'10	30	5	17	1	23	7
'11	56	15	24	4	43	13
'12	64	22	35	—	57	7
'13	40	6	26	2	34	6
합계	215	55	118	7	18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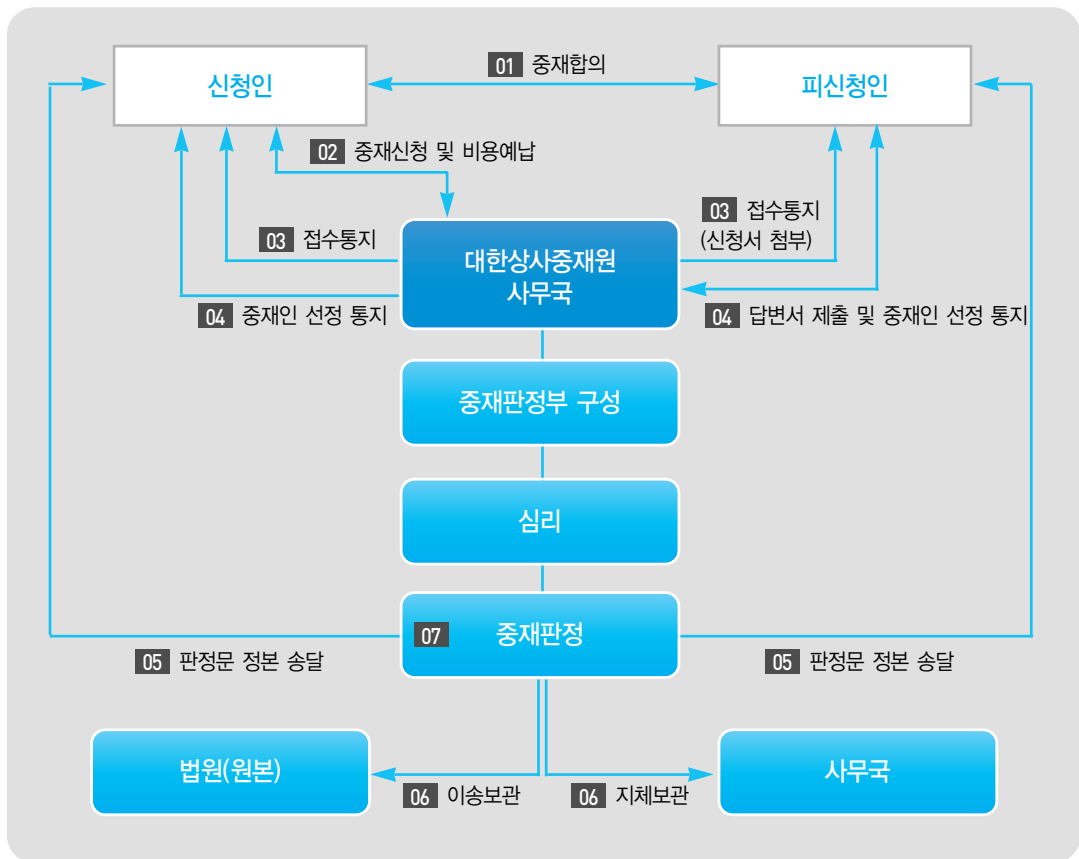
* 출처 : 도메인이름분쟁백서(2014).

5)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단 1회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종료되고, 중재 소요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걸리므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일반절차와 신속절차로 나누어지고, 신속절차는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이나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내 중재사건에 적용하며,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1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



지식재산 침해 관련 분쟁 및 기술·지식재산권 계약관련 분쟁에 대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재신청 건수를 보면 매년 10~20건 수준이고, 2013년의 경우 15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32〉 연도별 지식재산권 관련 상사중재신청 현황 및 금액

(단위 : 건, US달러 1,000)

구 분	'09	'10	'11	'12	'13
신청(건)	20	13	10	19	15
금액	7,858	6,884	4,058	14,001	8,274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기술계약과 지식재산권 계약을 합친 현황임.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의 양태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재권 보호방안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하드웨어에 비하여 구체성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 NPEs)⁶⁰⁾의 활동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NPEs의 소송 중 8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⁶¹⁾

유럽(특히, 독일)에서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를 중심으로 전시물 압수조치가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전시회 참가 또는 유럽 시장 진출 전에 이러한 특허분쟁의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원에 방어서면을 제출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제작할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대방 특허권자가 법원에 가처분 또는 세관조치를 신청할 때 카탈로그

60)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해 특허권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PEs와 표준필수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법 집행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14.12.17)하고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의 개정을 통해 NPEs를 ‘특허관리전문사업자’라 칭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NPEs의 남용행위를 ① 과도한 실시료 부과, ② 표준필수특허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 FRAND) 조건의 적용 부인, ③ 부당한 합의, ④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위협, ⑤ 특허권자가 NPE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견제하고 공격하는 사나포션(privateering) 행위로 구체화하여 예시하고 있다.

61) “Intellectual property – Assessing factors that affec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ould help improve patent quality”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Report, August 2013.

나 브로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흔히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의 유통이 우리 기업의 신 시장 개척을 저해함은 물론 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침해물품이 세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 단계부터 권리행사를 하거나 수출 단계에서 세관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세계 1위의 특허출원 국가로 부상하면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체제 하에서 국가적으로 지재권 보호 의지와 침해물품의 규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해 오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에서의 지재권 확보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 지원

가.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KOTRA)는 해외 주요국에서 IP-DESK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재권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에 IP-DESK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미국 LA, 2013년 뉴욕에 이어 2014년 6월에는 EU 국가 중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최초로 IP-DESK를 개소하여 현재 5개국에서 10개의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2-1〉 IP-DESK 설치 지역



〈표 4-2-1〉 IP-DESK 운영 실적(2014년 12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상담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침해조사지원(완료)	협력채널 구축
건수	5,044	471	14	186

* 출처 : 특허청.

1) 지식재산권 종합상담 지원

IP-DESK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IP 수준을 진단·분석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2013년 3,765건에서 2014년 5,044건으로 34%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2)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등록할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2014년 245개사 471건 출원). 진출국에서의 산업재산권 확보는 안정된 기업 활동의 전제조건이며, 현지인이 동종의 산업재산권을 선(先) 등록할 경우 현지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업재산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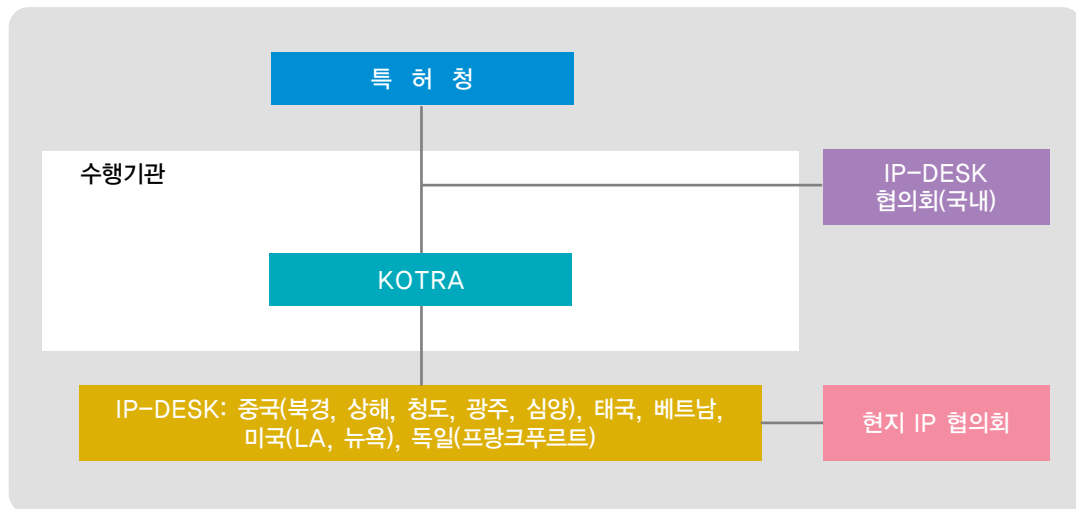
3) 침해조사 지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IP-DESK는 피해 기업의 신청 또는 자체 기획에 의해 피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행정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해외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컨설팅 및 협의체 지원, 소송보험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있다.

4) 협력채널 구축

KOTRA 해외무역관 중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KOTRA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 현지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 태국 및 베트남 지재권 공무원을 매년 국내에 초청하여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기업,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베트남 등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들을 방문하고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사향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4-2-2〉 IP-DESK 추진체계



〈그림 4-2-3〉 언론 보도

'해외지재권 보호 점병'으로 뛰는 중국 내 IP-DESK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14-12-06 05:00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업단체 등으로 이뤄진 '2014년 하반기 중국 민관합동조사단'이 북경 해리어트 호텔 회의실에서 현지 지적권 침해조사기관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식재산센터(IP-DESK) 중국 내 한국기업 권리보호 '한몫'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4-11-27 11:20 (베이징=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한국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베이징 등 5곳에 설치된 지식재산센터(IP-DESK)가 우리 기업의 권리보호 등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중국지역에서 의류와 화장품 등 소비재의 불법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는 등 한류 브랜드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내 5곳의 지식재산센터가 피해 실태조사 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베이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입주해 있는 IP-DESK는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 175개사를 상대로 276건에 대한 각종 지식재산관련 상담을 하는 등 2011년부터 해마다 400건에 가까운 상담으로 현지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다. 또 올해 중국에 진출한 70개 한국기업을 상대로 200여건의 상표출원 지원과 침해조사, 설명회, 정보제공 등의 실적도 올렸다. 특히 상표나 디자인 출원, 등록을 진행할 경우 소요 비용과 진행절차를 지원하고 지적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다.
아시아경제('14.12.6.)	연합뉴스('14.11.27.)

나.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

특허청에서는 해외 기업과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8개사 그리고 2014년에는 283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4-2-2〉 컨설팅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수출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대응전략을 수립
특허보증 대응 컨설팅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여부 분석, 회피설계안,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라이선스 전략 컨설팅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전략을 제공하여 소송 등으로의 분쟁 확대를 예방
분쟁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제공
상표 권리행사 컨설팅	상표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악의적 선등록 상표의 무효화 전략 등을 제공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컨설팅 성공사례

(분쟁사실) 국내 중소 의류기기 제조업체 A사는 미국에서 제품을 활발히 판매하던 중, NPEs인 B사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피소를 당함. A사는 B사의 고액 합의금 요구 및 특허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지원내용 및 결과) 컨설팅을 통해 대상제품과 소송특허의 침해여부를 심층 분석 하였으며, 소송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자료를 확보하여 B사를 압박한 결과 B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없이 분쟁이 종결됨

대·중소기업 및 동종업계 기업들이 공동으로 분쟁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지원(교육, 자문서비스 등)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은 16개 분과(LED 조명, 셋톱박스 등), 2014년에는 자동차 공조, 블랙박스 등 25개 협의체를 지원하였다.

〈표 4-2-3〉 기업 간 협의체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상시지원	〈이슈심화분석〉 - 협의체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발굴 및 심화분석 지원 - 공동이슈관련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 협의체별 공동대응 이슈 주제로 3회이상 '심층교육' 진행
협의체 컨설팅	지원비율 : 분담금 중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특허청은 국내기업이 해외 수출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

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50개 기업, 2014년에는 119개 기업에 소송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부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이 신설되었으며, 효율적인 소송보험 지원을 위해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지원 기준표를 마련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선정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4-2-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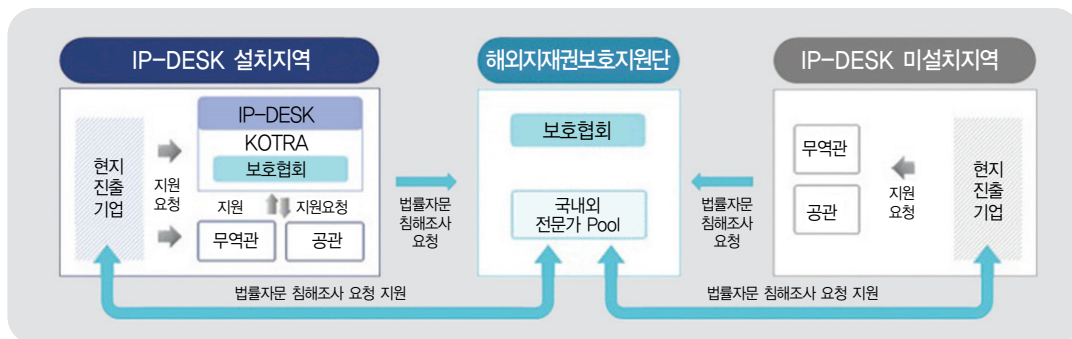
구 분	지재권 소송보험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대상	산업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	산업재산을 보유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지재권 소송보험료 중 일부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재권 소송보험료 중 80% 지원 (정액 4백만 원)
보험기간	보험 가입시로부터 1년(소멸성)	보험 가입시로부터 1년(소멸성)
보상범위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공동부담비율 20%)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공동부담비율 20~40%)
보상지역	전 세계	아시아(중국 제외, 한국 포함) 및 오세아니아
보장내용	보유한 산업재산권 행사(소제기) 및 지재권 권리보호·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	보유한 산업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률비용(소제기)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라. 해외 지식재산권분쟁 초동대응 지원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과 피침해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해 해외 전시회 참가 분쟁, 위조상품 관련 분쟁, IP 계약서 쟁점 자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침해 조사는 위조상품 유통현황 및 출처 조사,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지원 등을 포함한다.

〈그림 4-2-4〉 해외 지식재산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체계



마. 해외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정보 제공

분쟁 정보 조사 수집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분쟁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⁶²⁾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해외 대리인 정보, NPEs의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일일단위 분쟁속보, 월간 뉴스레터, 분기별 분쟁이슈보고서, NPEs 동향보고서 등 분쟁 관련 정보와 분쟁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재권 판례 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재권 판례는 2014년 누적 기준으로 IP5 국가에 대한 범용 판례 17,901건을 구축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중요 핵심판례 239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지재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속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륙별로 총 25개 국가와 특성별 2개 주제에 대한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을 제공하였으며, 주로 기업 수요와 FTA 대응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 4-2-5〉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구 분		발간현황('05~'14)
대륙별(25)	아시아(12)	말레이시아('06, '14), 필리핀('06, '14), 대만('06, '14), 인도('08, '13), 중국('05, '09, '14), 일본('06, '09), 태국('07, '09), 베트남('06, '09), UAE('10), 홍콩('11), 싱가포르('11), 인도네시아('12)
	유럽(7)	터키('07), 영국('08), 독일('07, '09, '14), 네덜란드('11), EU('12), 러시아('06, '11), 프랑스('13)
	아메리카(4)	브라질('07, '14), 칠레('08), 미국('06, '09, '13), 멕시코('11)
	아프리카(1)	남아프리카공화국('08)
	오세아니아(1)	호주('12)
특성별(2)		수출기업 체크포인트('10), EU권 보호 실무핸드북('13)

바. K-브랜드 보호 지원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지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의류, 화장품 등 전 산업에 걸쳐 우리 기업의 브랜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현지상표 무단 선 등록, 위조상품 유통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2)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피해 유형

(상표 무단 선 등록) A사는 중국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 중에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의 중국 현지상표 무단 선 등록에 의한 입점계약 취소로 50억 원의 피해 발생

(위조상품 유통) 유럽에 수출중인 B사의 중국산 위조상품이 중국오픈마켓을 통해 유럽으로 유통되는 피해 발생

* 출처: 중국 등 FTA 시대를 대비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2014.

〈그림 4-2-5〉 국내 브랜드 피해 사례



해외 현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과 범부처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보호 종합 지원체계 구축,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강화, 외국 세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차단,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의결 하였다.⁶³⁾ 정부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해외 위조상품 유통, 현지 상표 무단 선 등록 등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으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상표 상담원을 통해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 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법률자문

법무부는 변호사·변리사·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구성

6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2차 본회의('14.12.10.).

하여 중소기업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⁶⁴⁾ 또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별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 및 지재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대응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분쟁 방지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 러시아·베트남 등에 대한 총 14권의 분쟁 방지 가이드를 발간하고 배포하였으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별 법령정보 및 계약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 분쟁 방지 가이드를 발간 완료할 예정이다.

아. 재외공관의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지원

외교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외공관은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IP-DESK, 해외저작권센터, KOTRA 등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벨기에, 중국 등 40개 재외공관에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지정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저작권 해외 보호기반 강화

가. 해외 저작권 보호와 해외 저작권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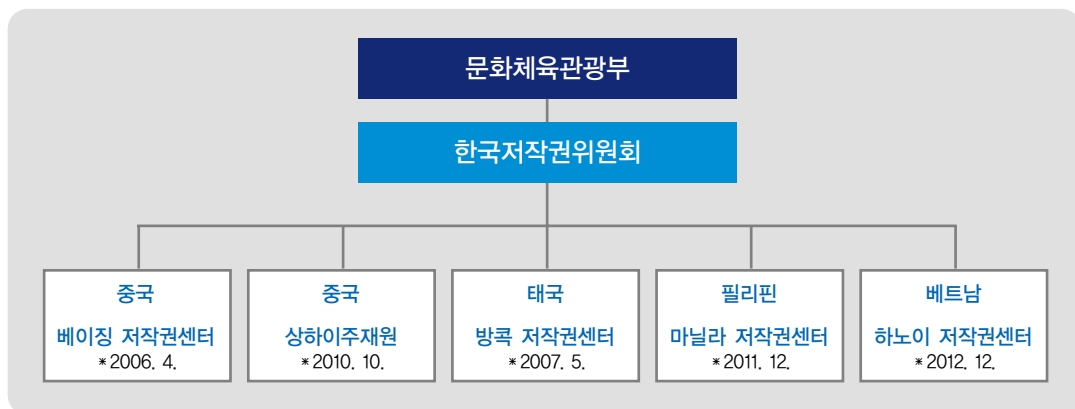
최근 한류 열풍을 계기로 국내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한류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문화산업 시장에서 콘텐츠 수출의 저해 요인으로 불법복제와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저작권 보호와 합법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보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중점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합법 교역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진행해온 ‘해외 저작권보호 프로젝트’이다. 2006년 4월 중국 베이징,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요 한류 지역에서의 보호 기반을

64) 2013년 64건, 2014년 9월까지 96건의 법률자문 제공.

구축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중국 상하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 파견, 2011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2012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센터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주요 한류 저작물 진출 지역에서 저작권 보호와 시장 진출을 위한 상시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림 4-2-6〉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나. 현지 침해대응 지원과 합법 유통환경 조성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나 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존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시 법률지원 등 일련의 구제조치를 진행해왔다.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해외저작권 법률상담은 매년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최근 한류 열풍에 맞춰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고 현지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2008년부터 경고장 발송(1,374건), 증거보전(1,494건), 행정처벌(76건) 신청 등 2014년까지 총 2,944건의 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불법음원사이트, 불법 IPTV 서버,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침해대응 실적을 거두었다.

〈표 4-2-6〉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조치 건수	119	114	97	365	358	1,039	852	2,944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년의 경우 우리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번역되어 게시되는 사례가 있었다. 웹툰의 경우 작가들이 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신분 증명 없이 침해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순정만화’, ‘고양이 희나’ 등 국내 웹툰 작품 15개 작품에 대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방송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는 국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송하는 6,633개 URL에 대한 서비스 차단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높은 불법 복제율로 인하여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보호 및 합법유통 지원에 힘입어 해당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 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최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센터가 설치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과의 저작권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해외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법률컨설팅, 구제조치지원, 합법이용계약지원 및 저작권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법률컨설팅은 해외저작권센터가 직접 ‘상담’ 하는 방식과 현지 법무법인과 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컨설팅’ 방식으로 구분되며, 현지진출 권리자 및 업체 등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구제조치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구제조치 지원은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고장 발송’, 침해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그리고 침해자에 대한 ‘행정처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합법이용계약 지원은 계약을 ‘내용’과 ‘금액’ 분야로 구분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한국 저작물에 대한 현지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 우리나라 저작물의 합법이용 수출계약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의 종류(영화, 음악 등) 및 목적(저작권 등록, 침해단속, 유통계약) 별로 구분하여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인·인증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한다.

〈표 4-2-7〉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해외법률 컨설팅	253	302	368	489	573	670	642
구제조치 지원	119	114	97	365	358	1,039	852
합법이용계약 지원	—	—	—	—	43	69	81
저작권 인증	1,493	1,121	1,853	2,571	1,240	2,070	853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라. 해외 저작권 정보제공 확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및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저작권 법제 정보 및 관련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포털⁶⁵⁾ 내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 통해 최신 해외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는 우리기업의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미국,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정보(저작권 법제, 등록제도, 유관 기관 정보 등)와 온라인 해외 저작권 상담, 지식커뮤니티, 정보 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 사이트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 및 주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존 12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의 해외 저작권 가이드 정보에 3개국(러시아, 싱가포르, 캐나다)을 추가하여 총 15개국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361건의 해외 저작권 동향 및 전문자료를 게시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국가인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현지의 최신 저작권 동향과 관련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5) <http://www.copy112.or.kr>.

제3절 |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노력

1. 산업재산권 분야

가.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창조경제의 핵심 주제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식재산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총칭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정부부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관세청 · 특허청)와 민간기업(네이버 · 11번가 · 이베이코리아 · 쿠팡)은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합법적 유통거래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2014. 5. 30.).

앞으로 업무협약 참여부처와 기업들은 매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 (4월 26일)을 전후하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식재산 보호 교육, 정품 사용 홍보 활동 및 공유저작물, 특허 등의 나눔과 확산 등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협력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업무협약과 다르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로 보호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고, 그간 지식재산 단속과 침해 방지 등 정부 주도의 보호 활동을 넘어 민간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 민간 기업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보호 활동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4-3-1〉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2014.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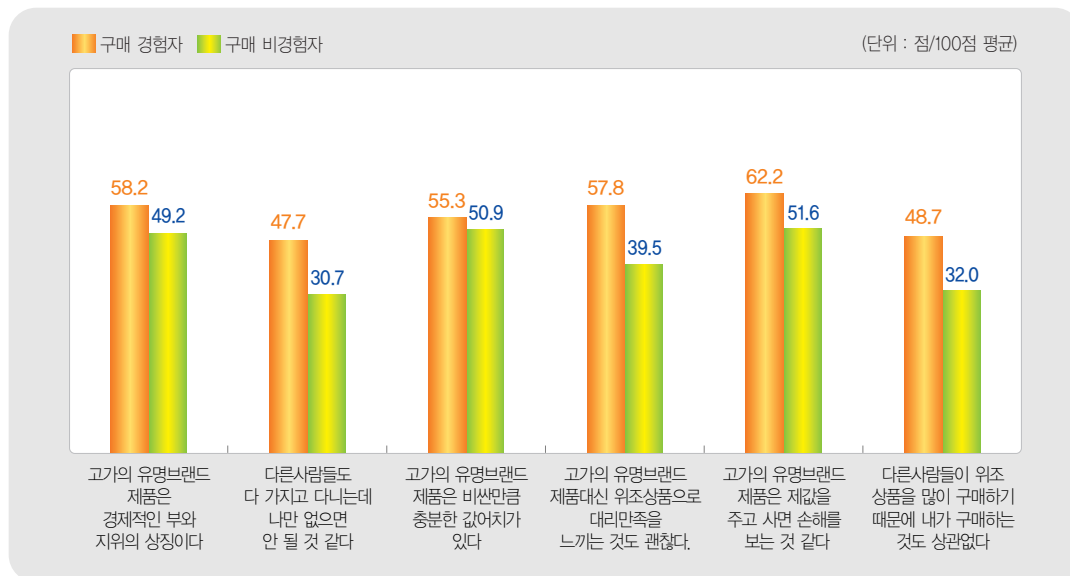


나.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 활동

1) 소비자의 인식 개선 필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4 지식재산 보호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원해서(40.5%)’와 ‘정품의 가격이 비싸서(25.0%)’ 등 금전적인 요인 때문에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유명 브랜드와 위조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조상품 구매자 대부분이 대리 만족, 정품 구매자와의 동질감, 경제적인 부유함 과시 등의 이유로 잘못된 소비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캠페인, 소비자·청소년 교육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1〉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 활동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소비자 캠페인 언론홍보	15회	35회	64회	310회	364회
소비자 교육 횟수	15회	20회	21회	22회	33회
청소년 체험학습 횟수	—	1회	4회	10회	17회
블로그 방문자수(연간 누적)	64,000명	715,387명	1,667,120명	2,358,557명	3,337,754명
SNS 관심자수(연간 누적)*	—	1,650명	9,560명	11,509명	14,650명

* SNS 관심자수는 트위터의 '팔로워 수'와 페이스북의 '팬(좋아요)의 수'의 합.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특허청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도형 가두 캠페인을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지역상인회, 유관기관, 상표권자 및 소비자단체와 매년 개최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4-3-3〉 민·관 합동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올해 캠페인은 업무협약 참여부처와 민간기업, 유관기관이 동참하여 서울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품·위조상품, 불법복제물 비교 전시 등 합동 캠페인을 5일간(14.5.19~23)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유통·판매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재산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활동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호감과 정품 사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방송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블로그 및 SNS를 운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하는 등 위조상품 소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4-3-4〉 지식재산 보호 홍보 활동



〈그림 4-3-5〉 위조상품 유통근절 공익광고



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교육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학부모,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정품·위조상품 식별요령,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련 교육을 추진 중이다.

1) 청소년 교육

미래의 주요 소비 계층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위조상품·불법복제물 유통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지식재산 존중문화와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교실은 위조상품의 불법성,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지식재산 침해

물품 폐기·리폼, 정품·위조상품 비교체험 등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중심형 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올바른 소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DVD, 만화도서 등을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일선학교 교사에게도 학습용 지도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4-3-6〉 찾아가는 지식재산 보호 청소년 체험학습



〈표 4-3-2〉 지식재산 보호 청소년 교육용 콘텐츠

구분 · 콘텐츠	주요 내용
'10 DVD	• 짝퉁가죽 명에달한 대작전(총 5편, 30분) –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개그맨 허경환 등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용 콘텐츠
'12 표준 교안	• '정품사용 실천교육 Good-bye 짝퉁' 표준 교안 – 지재권 관련 수업시, 체계적이고 원활한 수업 진행 및 교사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지재권 보호 표준 교안
'13 만화 도서	• 키키 포포 동화나라 정품 원정대 '위조상품으로 얼룩진 동화나라를 구하라!' – 유소년기 학생들이 정품사용 필요성 등에 대해 올바른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만화도서 제작
'14 교사 교재	• 교사를 위한 지식재산보호 교육 길라잡이 '지식재산보호 콘서트 탐구와 실천' – 지재권 보호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및 학습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론학습과 실천학습으로 구성된 교사용 교재 개발

이와 별도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방법, 권리화, 보호 방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소비자 교육

지식재산과 위조상품 관련 정보 습득 기회가 부족한 주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광역시·도의 초·중등학교,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품 사용 실천 및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교육은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발명교사 등 전문 강사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및 위조상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대내외적인 문제점 등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저작권 분야

가. 침해 예방 교육

1) 청소년 대상 교육

청소년 대상 교육에는 학생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저작권 체험교실,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입한 저작권 연구학교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학생), 온라인 청소년 교육이 있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특별활동 시간(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일정 시간(6시간 이상)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2006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국 195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였다.

저작권 체험교실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체험교실 운영 교사를 선발하여 다음 해 신규 운영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험교실을 통해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저작물이 개발되었으며, 운영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표 4-3-3〉 체험교실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교실 수		20개	20개	79개	117개	198개	99개	100개	193개	195개	1,021개
교육 인원	학생	921명	745명	3,479명	4,095명	10,669명	5,827명	6,997명	8,996명	8,790명	50,519명
	교사	20명	20명	79명	120명	151명	79명	74명	148명	148명	839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연구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연구반 운영, 토론회, 가두 캠페인, 글짓기 대회,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UCC 제작 활동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3-4〉 연구학교 운영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학교 수		15개교	23개교	27개교	50개교	43개교	39개교	9개교	9개교	215개교
교육 인원	학생	12,000명	18,400명	21,600명	42,856명	34,400명	31,200명	1,745명	2,400명	164,601명
	교사	600명	920명	1,080명	67명	1,720명	1,560명	237명	199명	6,383명
	합계	12,600명	19,320명	22,680명	42,923명	36,120명	32,760명	1,982명	2,599명	170,984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연구학교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연구학교 운영 방법,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의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4-3-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단위 : 명, 회)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교육인원	14,265	74,938	254,130	294,035	354,868	354,299	376,330	1,722,865
교육횟수	19	130	2,028	3,008	3,016	7,981	8,314	24,496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

용하고 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수준을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조사결과 저작권 지수는 76.4점(인식지수 79.2점, 의식지수 73.7점)이며, 저작권 교육을 경험한 학생(79.2점)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75.2점)보다 저작권 지수가 4.0점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4-3-6〉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저작권 지수	71.1점	73.8점	75.1점	74.1점	76.4점
저작권 인식지수	74.9점	77.4점	78.6점	75.3점	79.2점
저작권 의식지수	67.4점	70.2점	71.7점	72.9점	73.7점

* 저작권 지수 : 저작권 인식지수 + 저작권 의식지수.

* 저작권 인식지수 : 올바른 저작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산출 지수.

* 저작권 의식지수 : 올바른 저작물 이용행위 가치판단에 대한 산출 지수.

* 2013년 인식지수 문항 변경(인식지수 1개 문항 : SNS 이용에 대한 저작권 인식).

* 2014년 의식지수 5개 문항 척도 변경(5점 척도 → 7점 척도).

2011년 6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인 ‘저작권과 친구될래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은 청소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방법을 올바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표 4-3-7〉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11	'12	'13	'14	합계
교육이수 인원	804명	1,462명	122명	2,347명	4,735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 성인 대상 교육

성인 대상 교육으로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성인), 대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한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사업,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과정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자 개설된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현재 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국회공무원,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자단, 포털사이트 내 파워블로거 등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창작 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4-3-8〉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단위 : 명, 회)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교육인원	7,340명	19,039명	28,726명	21,473명	18,844명	16,951명	18,292명	130,665명
교육회수	103회	244회	431회	403회	358회	371회	313회	2,223회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편, 2010년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해마다 저작권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저작권 내용이 방송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을 통하여 기존 창작자들의 몫을 예비창작자들에게 환원하여 저작권 환경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원 사업으로 2013년에는 총 10개 대학에 저작권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총 618명이 수강하였으며, 2014년에는 19개 대학에서 2,246명이 수강하였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과정은 대학가에서 논문, 리포트 표절 같은 지식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생이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으며 2014년에는 4,250명이 수료하였다.

〈표 4-3-9〉 대학생 및 일반인 온라인 저작권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교육이수인원	361명	258명	281명	3,545명	4,250명	8,695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학부모 온라인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자녀들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학부모 교육 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초등 학부모용, 중등학부모용)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25명의 학부모가 수료하였다.

〈표 4-3-10〉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11	'12	'13	'14	합계
교육이수인원	329명	855명	11명	30명	1,225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나. 전문인력 양성 교육

1)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분야 종사자와 창작자는 물론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체계적인 입문자 과정으로, 2008년 이후 727명을 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 저작권법,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 사례,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및 실무 특강 등 종합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과정과 단기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3-11〉 저작권 문화학교 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수료 인원	178명	182명	69명	61명	85명	83명	69명	727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 아카데미

저작권 아카데미는 저작권산업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현장 인력의 저작권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분야별 전문 단체, 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법제 및 실무, 사례 위주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아카데미는 음악, 출판, 방송, 언론, 사서, 법조인, 공무원 등 10개 내외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8년 이후 1,702명이 수료하였다.

〈표 4-3-12〉 저작권 아카데미 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수료 인원	259명	250명	202명	287명	215명	267명	222명	1,702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2010년에는 원격교육연수원을 개소하여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러닝 저작권 교육을 함께 운영하였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저작권산업 종사자 과정은 2010년에 음악, 출판, 인터넷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소프트웨어, 게임, 방송 종사자, 저작권 개요 4개 교육과정을 추가·확대하여 총 7개 과정이 운영되었다. 2013년에 신규 3개 및 2014년에는 신규 2개 과정이 추가되어 총 1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010년 675명, 2011년 778명, 2012년 652명, 2013년 5,149명, 2014년 8,761명이다.

온라인 저작권산업 종사자 과정은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 분야의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비한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시, 15차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11월부터 2014년까지 매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4-3-13〉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	'10	'11	'12	'13	'14	합계
수료인원	223명	248명	232명	255명	1,365명	1,324명	3,647명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3) 저작권 강사 양성·운영

교원직무연수는 교사가 먼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알리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마다 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원직무연수는 연 2회(하계, 동계) 5일(30시간) 과정으로, 회차 당 40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저작권 제도 개요, 저작권 침해 및 분쟁 해결 방안, 저작권과 인용법 등 학교 현

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온라인 교원직무연수는 오프라인 교원직무연수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수기관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現 교육부)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0월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저작권 강사 풀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강사는 ‘전문강사’, ‘입문강사’, ‘청소년강사’, ‘청년강사’로 분류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운영된다.

4)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교과 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교과과정 개편 시 적용할 학습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 연구를 2006년부터 진행해 왔다.

2014년에는 저작권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내용의 교과서 반영 실태조사를 연구하였으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협동학습과 토의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 개념의 교육 교재 ‘알쏭달쏭 저작권 교실’을 개발하였다. 또한, 온라인 청소년 교육의 경우 2013년 청소년 2종에 대한 리뉴얼을 시행하였고, 2014년에는 중·고등학생 대상 콘텐츠인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동영상인 ‘즐거운 저작권 세상’ 등 2종을 새롭게 개발하여 총 4종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작권 교실’을 운영 중이다.⁶⁶⁾ 그리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저작권 심화 원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감 있는 저작권 핫이슈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014년 새롭게 개발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산업종사자용 12종, 교원 7종, 대학생용 2종 및 공무원용 2종, 평생교육용 3종, 학부모용 2종, 일반인용 1종 등 총 29종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교육에 대한 교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 현장에 활용 가능하도록 쉽고 실제 사례를 반영한 실무형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66) 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

다. 저작권 홍보 활동

1)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전개

201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12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음악, 영화, 방송, 만화, 웹툰, 캐릭터, 게임 등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을 선포하였다.

〈그림 4-3-7〉 2014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은 ‘불법 침해는 창작의 걸림돌’이라는 부정적 홍보에서 ‘합법 이용은 창작의 디딤돌’이라는 긍정적 홍보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며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더해 한 차원 높아진 캠페인으로 성장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작권 존중과 나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착한 이용으로 존중하고 착한 저작물 나눔으로 공유의 실천을 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4-3-8〉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슬로건/로고



〈그림 4-3-9〉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홍보영상



2) 참여와 소통형 저작권 홍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SNS 기자단’과 공식 페이스북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2기 ‘저작권 SNS 기자단’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하였으며, 특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홍보하였다. 2014년 3기 ‘저작권 SNS 기자단’은 5월에 기자단을 선발, 12월까지 약 7개월 간 20명의 기자단이 생생한 저작권 소식을 기획기사나 UCC·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저작권을 쉽고 친근감 있게 전달하였다.

또한, 공식 페이스북은 온라인 사용이 활발한 일반 대중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2014년 12월말 기준 9천여 명이 저작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참여형 이벤트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국내외 저작권 동향 등의 콘텐츠 개편으로 유익한 정보를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도 저작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단계의 회사에서 저작권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두거나 충분한 지식을 갖고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이런 현실 때문에 회사의 창업이나 운영단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곤란을 겪거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소규모 기업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 개발한 콘텐츠나 SW 및 이에 대한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국의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상담,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2014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크게 개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저작권 서비스를 묶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주요 권역에 저작권 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에 대한 제도나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거의 수도권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지만, 정보를 알고 있어도 거리의 제약 등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저작권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의 목적이다.

기본적인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포함하여, 경영 전반의 저작권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및 산업 분야 실무 전문가들과의 컨설팅 제공 등 기업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0여명에 이르는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다 많은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기관을 공모해 4곳의 지역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센터는 지역의 산업별, 입주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상시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지원 등 센터별로 특화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저작권 해결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기업들이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지역센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14〉 2014년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원 현황	-	9	12	6	14	35	12	286	247	224	212	140	1,197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4) 소프트웨어 점검·컨설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공공기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W 관리 소홀 및 의식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W 관리 가이드와 점검용 프로그램 배포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SW 점검 및 컨설팅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무료로 SW 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2013년 40개 기업체·공공기관과 2014년 60개 기업체·공공기관이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공정한 SW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에는 총 12회, 2014년에는 15회에 걸쳐 전국 공공기관의 SW 관리 담당자 각각 994명, 1,314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활동과 더불어 SW의 효율적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4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였다. ‘2014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에는 라이선스 정의, 관리 절

차 등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SW 관리대장, 서약서도 참조로 수록되어 있다. 책자에는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무료와 유료 SW에 대한 설명이 있어 SW 관리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서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최근 IT 환경 변화에 맞도록 최신화한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가이드 2.0'을 발간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 4 절 | 지식재산 보호기술의 고도화

1. 산업재산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가.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IP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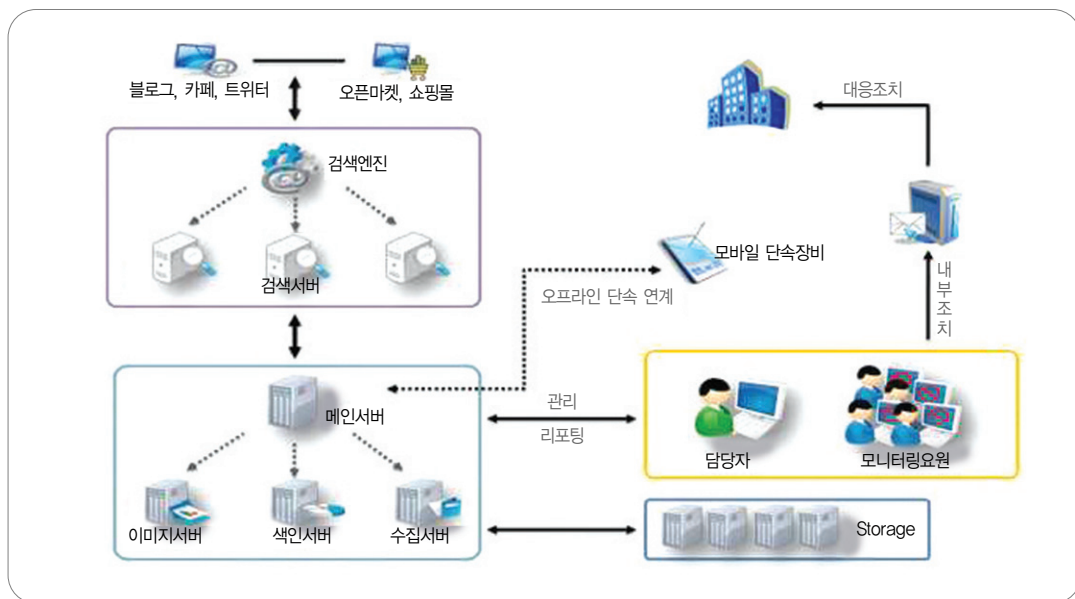
특허청은 온라인상에서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Intellectual Property Online Monitoring System : IPOMS) 운영을 위탁하여 위조상품 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IPOMS)은 국내 유명 오픈마켓과 개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이들의 정보 삭제 등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상기 시스템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게시물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 담당자를 통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의심키워드, 블랙리스트, 가격정보, 이미지 정보 등과 비교하여 위조상품 판매정보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식별된 위조상품 판매의심 정보는 전문성을 갖춘 모니터링 담당자의 분석 및 상표권자의 감정 등 침해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오픈마켓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판매 게시물 및 ID삭제, 사이트의 접속 차단·폐쇄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식이 점차 지능화, 다변화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위조상품 자동식별 기능을 개선하여 모니터링 범위를 기존 오픈마켓과 개인쇼핑몰에서 포털사이트, SNS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상표권 보유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 감시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림 4-4-1〉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절차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표 4-4-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	합계
오픈마켓	2,890	3,566	4,256	4,422	3,543	18,677
포털사이트	-	-	-	-	1,325	1,325
SNS	-	-	-	-	480	480
개인 쇼핑몰	207	364	505	828	454	2,358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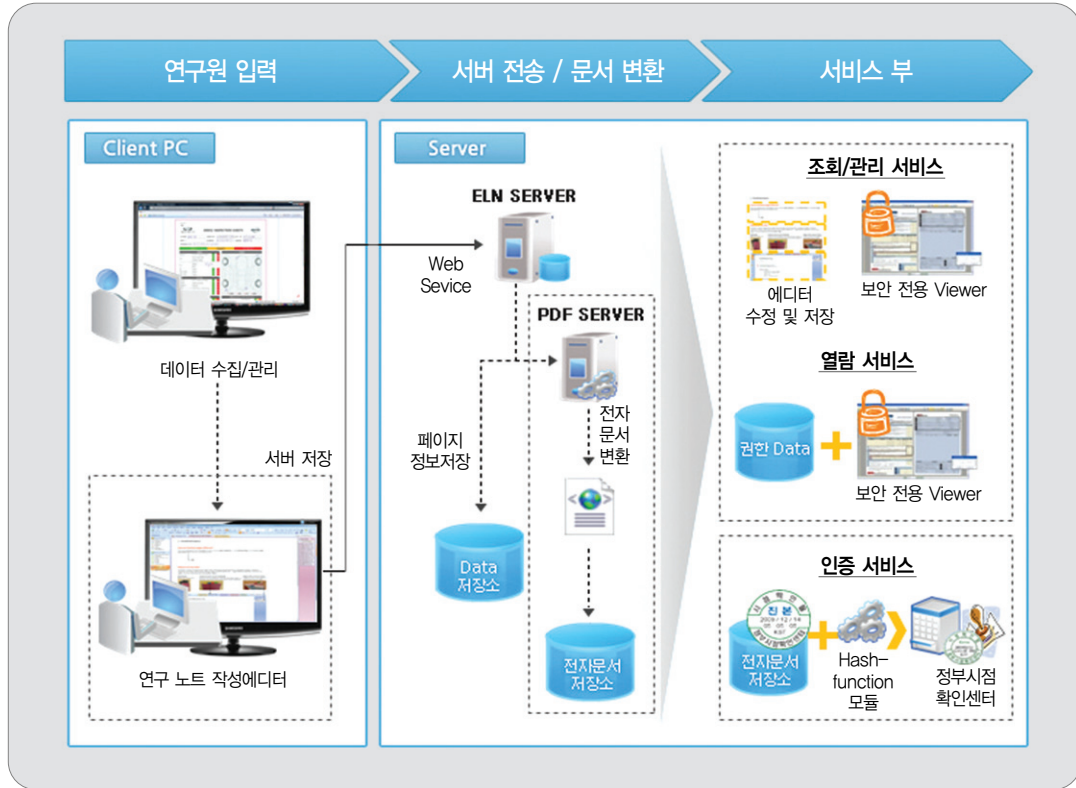
나. 전자연구노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출원 이전에 원천기술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기업이 연구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자연구노트’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전자 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로서 작성시점 인증 등 연구정보에 대한 기록일시와 위·변조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30년 간 그 내용이 보존된다.

이러한 연구노트의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과정 및 연구독창성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침해방지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4-4-2〉 전자연구노트 서비스 운영 절차



* 출처 :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 홈페이지(<https://www.e-note.or.kr>).

2. 저작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가.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기술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저작권 보호, e-Book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호환, 저작권 침해예방 및 점검 S/W, 클린 클라우드, 비트토렌트, 3D 영상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기술 R&D 사업은 17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92건의 특허출원, 19건의 특허등록, 7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에는 복스캔 보호기술, 비트토렌트 등 신규 4개 과제를 포함 총 9개 과제를 추진하여 특허출원 35건, 특허등록 12건으로 저작권 보호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59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HTML5 기반 저작권 보호, 3D 영상 보호기술 등 신규 6개 과제를 포함 총 12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개발된 저작권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관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표 4-4-2〉 2014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구 분	연구개발 과제명	사업기간
저작권 기술 개발	클린 클라우드를 위한 내용 기반 이용제어 기술 개발	3년('12~'14)
	바이너리코드 동적 고유정보 기반 SW 유사성 감지 기술 개발	3년('12~'14)
	복스캔 어문 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3년('13~'15)
	소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메시업 도구 요소기술 개발	3년('13~'15)
	비트토렌트 불완전체로부터의 저작물 식별 기술 개발	2년('13~'14)
	저작물 관리 유통 분배 정산에 대한 혁신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	3년('13~'15)
	EPUB SCP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3년('14~'16)
	HTML5 기반의 웹 앱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2년('14~'15)
	3D 영상 및 동영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개발	3년('14~'16)
	개인 간 저작물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 이력추적 및 이용현황 분석 기술	3년('14~'16)
	국가연구보고서 저작권 관리체계 서비스 연구	3년('14~'16)
	국제표준 식별체계(UCI) 부착정보 확인을 통한 저작물 추적관리 기술 개발	3년('14~'16)
기술실용화 지원	저작물 관리 · 유통 · 분배 · 정산에 대한 혁신서비스 모델 연구 실용화 사업	1년('14)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나.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와 적용

저작권기술 성능평가는 웹하드에 적용되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해 최소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이하의 웹하드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기술 성능평가는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로 기술업체별로 기술의 상이함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평가와 기술적용점검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2013년에는 기존 오디오·비디오 분야 성능평가를 확대하여 카툰(웹툰, 이미지) 분야에 대한 기술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2014년에는 모바일 앱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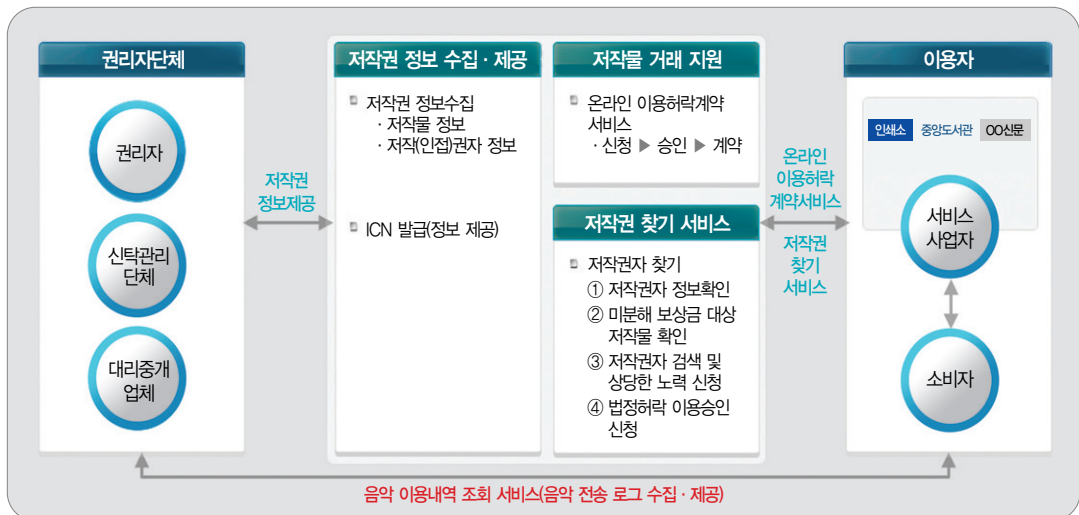
기술평가가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평가한다면, 기술적용점검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이 성능저하 없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말 4개 업체의 기술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5개 업체의 기술이 각각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권리와 이용자 간 이용허락계약 체결 및 투명한 정산·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관리와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등 저작권 찾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4-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 ICN)’는 매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누적 2,566,029건을 완료하였다.

〈표 4-4-3〉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건수	770,000	525,089	531,790	2,763,175	2,918,537	3,868,098	2,566,029	13,942,718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과 이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CLMS)’을 2008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건수는 음악 3,880건, 어문 300건, 뉴스 15건 등 4,195건이고, 저작물 건수로는 약 4억 4백만 건에 달한다.

〈표 4-4-4〉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계약	저작물	계약	저작물	계약	저작물	계약	저작물	계약	저작물	계약	저작물	계약	저작물
음 악	152	10,434,206	353	103,311,698	561	250,101,276	3,403	288,951,385	3,465	306,462,259	3,533	357,330,264	3,880	404,953,716
어 문	-	-	-	-	-	-	45	-	149	19,833,258	126	1,004,357	300	335
뉴 스포츠	-	-	-	-	-	-	-	-	39	39	20	20	15	15
합 계	152	10,434,206	353	103,311,698	561	250,101,296	3,488	288,951,385	3,653	326,295,556	3,679	358,334,641	4,195	404,954,066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라. 프로그램저작물 임치제도 운영

프로그램저작물 임치제도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과 합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수치기관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제도의 정비, 임치서비스의 개선, 지속적인 홍보 활동, 온라인 임치 시스템(전자계약) 구축 등 제도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노력을 실시한 결과 총 2,646건의 임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규 계약 1,042건, 갱신계약 1,161건, 사용권자 등록 330건, 최신본 임치계약 113건이 체결되었다.

〈표 4-4-5〉 프로그램저작물 임치계약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신규	121	155	151	149	116	163	187	1,042
갱신	65	97	126	182	212	224	255	1,161
사용권자 등록	59	47	53	62	22	37	50	330
최신본의 임치	14	17	13	20	21	15	13	113
소계	259	316	343	413	371	439	505	2,646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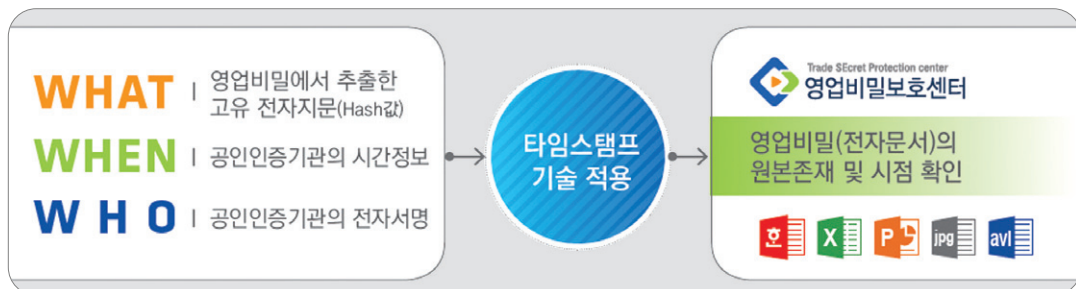
특히,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를 개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 시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 결과물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통한 소프트웨어 관련 용자보증 심사 시 평가항목에 프로그램저작물 임치제도를 반영하였다.

3. 영업비밀 보호기술의 고도화

가. 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

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은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 자료가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해당 기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이하 제9조의7까지 조항 신설(2014.1.31.)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⁶⁷⁾

〈그림 4-4-4〉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개념도



* 전자지문 :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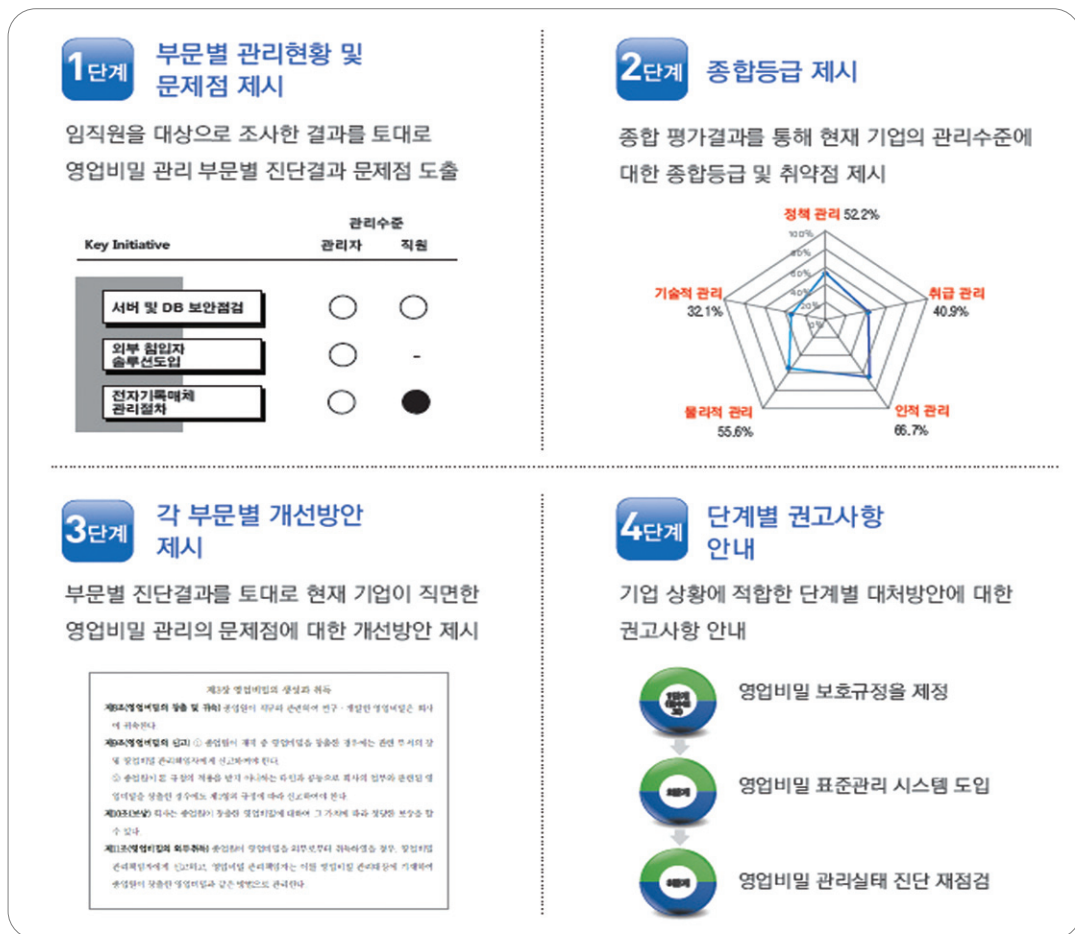
* 타임스탬프 기술 : 특정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

67) www.tradesecret.or.kr.

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서비스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미흡한 기업들이 자사의 영업비밀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4-4-5〉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절차



* 출처 : 영업비밀보호센터.

다.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영업비밀 보호·관리가 취약한 기업에서 주요 기술자료 및 경영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관리에 최적화된 통합 개념의 공공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교육, 법률상담, 영업비밀 종합관리용 시스템 및 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4-6〉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구성

기본혜택

1.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및 설치비용 무료 제공 (필수)
2.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교육 (연1회)
3.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실시 (연1회)
4. 사내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시 감수 지원 (요청 시)
5.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요청시)

특별혜택

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록 및 유지 비용 면제 (월10건)
2. 시스템 출장방문 유지보수 무상 지원 (연2회)
3. 영업비밀 심화교육 및 정기교육 수강료 면제 (연2~3회)
4. 중소기업청 기술지킴서비스 연계 (요청 시)
5. 영업비밀 관련 교육자료 및 온라인 소식지 제공 (수시)

* 출처 : 영업비밀보호센터.

라. 보안관제 서비스

우리 기업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 침해시도를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의 보안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하고, 기업 내부 정보자산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보안관제 서비스는 보안전담인력 및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사고 예방·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보안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4-7〉 보안관제 서비스 개념도



* 출처 :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

마. 내부 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기업 내 중요문서 및 기술 등이 내부 임직원에 의해 E-mail, 이동형 저장매체(USB, HDD)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대응해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내부 중요문서로 분류된 파일의 유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중

요문서의 유출 시 원문파일이 저장(중소기업 파일서버에 저장) 되도록 하며, Help Desk를 통한 상담 등을 수행한다.

〈그림 4-4-8〉 내부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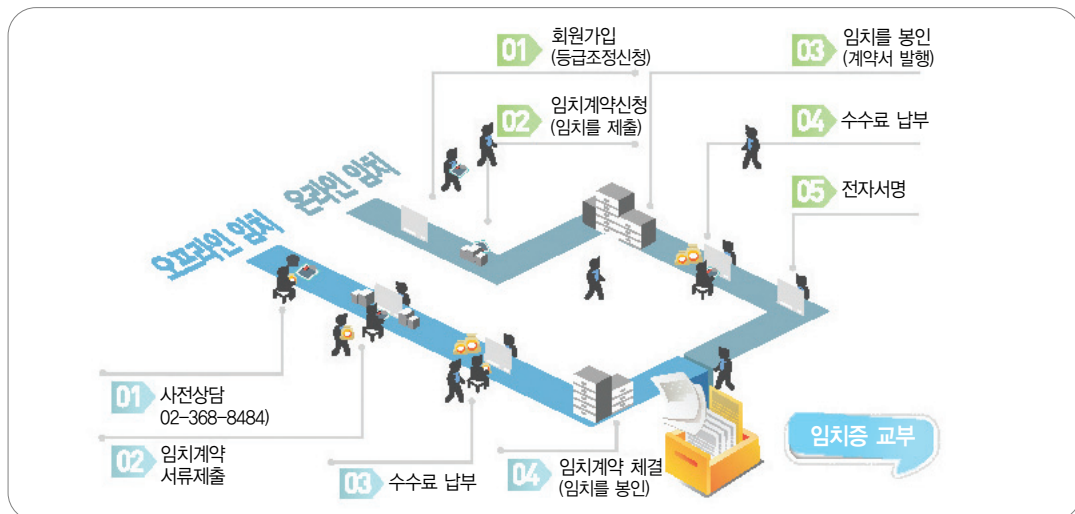


* 출처 :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

바. 기술임치제도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어떤 기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은 협력 임치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한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4-4-9〉 기술임치제도 이용절차



* 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제5절 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1. 부처 간 협업

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 산·학·연 및 산업별 협회 등은 2012년 4월 5일, 지식재산 분야 협력채널이자 정책 논의의 장(場)으로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KIPnet)’를 출범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5개 분과별 협의회, 워크숍을 통해 참여기관 간 해당 분야 현황과 이슈를 공유·토론하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례 컨퍼런스(2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등 각계에 분산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금융기관, 기업까지 참여하여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친 현장 집행력을 확보하고 영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100여 개의 지식재산 유관기관·단체가 KIPnet에 참여 중이다.

1) 5개 분과 중심의 교류·협력 활동 강화

연구개발(R&D), 보호, 금융, 인력·교육 및 저작권의 분야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참여기관이 자유롭게 분과에 참여하도록 하고, 분과별로 간사기관과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내 담당관을 지정하여 분과 활성화 및 참여기관 간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사기관은 분과별 협의회와 워크숍 개최를 주관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간사기관 간 간담회를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KIPnet의 발전

방안과 컨퍼런스 개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각 분과 참여기관 담당자들에게 분과 참여위원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표 4-5-1〉 분과별 간사기관 및 2014년 활동 실적

분 과	IP-R&D	IP-보호	IP-금융	IP-인력·교육	IP-저작권
간사기관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한변리사회	한국저작권 위원회
참여기관	총 42개	총 20개	총 20개	총 18개	총 21개
분과활동	소분과 회의 7회 통합 회의 3회	협의회 4회 공모전 개최	협의회 4회	협의회 3회 토론회 1회	협의회 4회 워크숍 1회

*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 기준).

2) 컨퍼런스 개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매년 다양한 주제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표 4-5-2〉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차 (’12.4.5.)	- 주제 : 경계 없는 협력, 국가IP전략의 요체 - 주요내용 5대 협력아젠다에 대한 5개 분과별 주제 토론 - 표준특허 창출·확보, 지식재산 보호·금융, 지식재산 인력 양성·교육 3개 분야 업무협약 체결 등	
제2차 (’12.12.3.)	- 주제 : IP 연구개발·보호·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 - 주요내용 - IP-R&D, 보호, 금융 분야의 동향과 향후 과제 토론 -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확산 등	
제3차 (’13.6.19.)	- 주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 주요내용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 연구소·대학·기업의 역할 및 간사기관장 공로패 수여 등	
제4차 (’13.12.16.)	- 주제 :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지식재산·기술 가치 평가 업무협약 체결 - 성공적인 IP경영 전략 방향 및 기업 상담 부스 운영 등	
제5차 (’14.12.9.)	- 주제 : 평가·금융·거래가 어우러진 IP 생태계 - 주요내용 - IP금융 관련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5개 분과 성과 발표 및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 - 금융기관 및 평가기관 상담부스 운영 등	

2012년 ‘경계 없는 협력, 국가IP전략의 요체’를 주제로 시작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는 2014년까지 5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100여개의 지식재산 유관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담당자 및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KIPnet 5개 분과 간사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변리사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서 주관하고 있다.

나. 범정부 지식재산 보호 종합대책 마련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식재산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정기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부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화를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으로 심의·확정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12차 본회의(2014.12.10)에 안건으로 상정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은 FTA 환경에 발맞추어 중국과 아세안(ASEAN)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브랜드 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 위조상품의 해외 현지 단속 지원 강화, 외국 세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차단,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합동 기획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다양한 업무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체계화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2. 국제협력

지식재산 관련 논의는 양자, 다자, 국제기구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국 지재권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각국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통상협상에서 지재권 분야를 핵심 의제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선진국들은 개도

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임으로써 자국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부분 FTA에서 지재권 분야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章)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지재권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선·후진국간의 지재권 격차해소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사업 등 국제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위상과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재권이 해외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WI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다각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IP5(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를 중심으로 지재권 분야의 다양한 글로벌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우리 콘텐츠가 진출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저작권 부문 협력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건강한 유통 및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덧붙여, FTA를 통해서도 주요 교역국들과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

1)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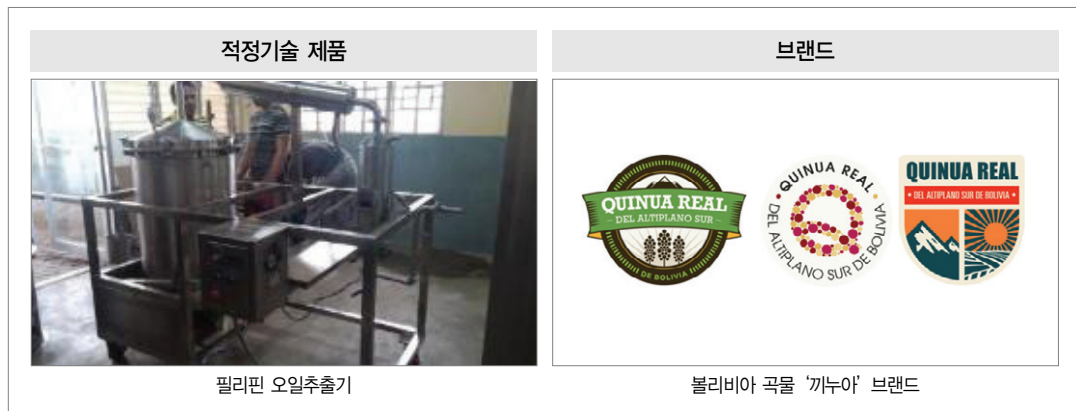
특허청은 WIPO내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 : KTF) 출연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재산분야 역량강화와 인식제고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에티오피아와 말레이시아에서, 2012년에는 필리핀에서, 2013년에는 베트남과 잠비아에서, 2014년에는 베트남과 몽골에서, 개도국에서의 일상생활 문제 해결 및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개도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특허·상표 제도, 심사 실무, 특허품질관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제도, 마드리드 시스템, 현장 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2010년에는 몽골특허청 관계자 역량 배양을 위하여 국내초청연수를 진행하고 335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재권 전자 접수, 검색, 심사, 등록, 공보발간, 수수료 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한 몽골특허시스템(IPOMnet) 구축을 완료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420만 달러 규모의 특허정보화사업을 통해 2013년 5월에 아제르바이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사업 모니터링, 평가, 기술자문 및 역량배양 프로그램 제공 등 아제르바이잔 특허정보화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18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간 지식재산 협력기구인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ARIPO) 정보화 협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0년 특허청

과 ARIPO 기관장 간의 포괄적 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허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ARIPO-WIPO 기술협력 MOU를 2011년 체결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까지 580만 달러 규모로 ARIPO 및 회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현지 기반환경에 최적화된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0년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상표권 획득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6개국(차드, 네팔, 캄보디아, 과테말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에서 8건의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경우 6개국(차드, 중국, 칠레, 캄보디아, 볼리비아, 필리핀)에서 7건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그림 4-5-1〉 적정기술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사례



2) WIP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특허청은 WIPO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예산·감사 등의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출원인 편의 제고, 절차 간소화 등 지식재산 제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출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마드리드 출원의 기초요건 완화를 제안하였고, 2014년에는 헤이그 시스템 가입을 통한 국제 출원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PCT 시스템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APEC 지재권전문가그룹(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 IPEG)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PEC 기금을 활용하여 APEC과 공동으로 적정기술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2014년 7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APEC 지재권전문가그룹(IPEG) 회의에서 특허청이 제안한 공동협력 구상안이 채택되었다. 덧붙여, WTO TRIPs 이사회 등을 통해 지식재산 통상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동식물 특허 여부, 유전자원 보호 등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선진국과 공조하여 개진하였다.

덧붙여,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IP 이그나이트 등 글로벌 지재권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재권 격차(IP-Divide)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WIPO 188개 회원국 및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재권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IP 파노라마를 UN 공용어판(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을 비롯한 세계 24개 언어 버전으로 개발·보급하여 글로벌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5-3〉 글로벌 지재권 콘텐츠 주요 현황

구 분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IP 이그나이트
특징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재권 활용전략 소개	특허DB 검색·분석 등 특허정보 활용방법 소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재권(법) 개론 소개
개발시기	'05~'06년(모듈1~10), '08년(모듈11,12), '10년(모듈13)	'06~'07년(모듈1~14)	'09년(모듈1~6), '11년(모듈7~12)
협력기구	WIPO 중소기업국	APEC	WIPO 국제교육원
투입예산	5억 원	4억 원	2.4억 원
저작권 보유	KIPO, WIPO 공동 (발명진흥회 : 무상사용, 수익권)	KIPO, APEC 공동 (발명진흥회 : 무상사용, 수익권)	협약 중
주제(수)	13개	14개	12개
특이사항	총 24개 언어*로 개발·보급	일반편, 실전편(Ⅰ·Ⅱ)*	'15년 공식 출시 예정 (WIPO 공식 회의와 연계)

* 24개 언어 : UN 공용어 (영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판 및 18개 언어.

* 일반편, 실전편 : 특허정보활용인력양성사업 오프라인 강의자료의 콘텐츠 개발.

3)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국가 간 협력

특허청은 국내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UAE 특허심사대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PCT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에 합의하는 등 국내 특허행정 서비스의 중동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 중동지역 진출 본격화

(UAE) 특허심사대행 관련 MOU 체결('14.2)을 통해 현지 고용형태의 한국 심사관(5명)을 파견하고 특허심사대행 서비스를 개시('14.6)하였으며, UAE 지재권 제도 정비 및 특허청 설립 자문 역할 수행과 UAE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4.5백만 달러(잠정) 규모의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출원인들이 국내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동지역 PCT 심사서비스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함('14.9).

또한, 주요국과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식재산 행정의 한류 확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인력교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국가에는 후속파견을 추진 중이며, ARIPO·아제르바이잔 등에도 정보화 전문가를 신규로 파견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과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다각적인 양자협력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는 기존 진행 중인 양자협력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덧붙여, 국제 지재권 논의에 대한 주도적 참여 및 논의 결과의 국내 반영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4-5-4〉 양자협력 최근 주요 성과

구 분	주 요 성 과
미국	CPC 사범사업 기술분야 확대 추진('14년 25개 → '16년 75개) / 특허분류 협력 MOU 체결, 심사협력 분야 전문가 파견 합의(9월)
중국	지재권 연락관 파견(5월, 12월) / 공동선행기술조사 대상 건 확대, 양국 심판장회의 정례화, 과거문헌 CPC 분류 상호협조 등(11월)
일본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대상 및 공유정보 확대, PPH 공동 세미나 개최, 양국 간 데이터 교환 확대를 위한 MOU 체결 추진 등 합의(10월)
한·중·일	3국 PPH 통계정보 교환,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시범실시 논의, 심판제도 비교연구사업 지속추진, 공동 홈페이지 3개 국어로 확대 등 합의(11월)
유럽	'14~'15 양자협력 Work Plan 승인, CPC 협력 MOU 체결 등(6월) / 디자인 데이터 교환 MOU 체결(9월)
UAE	한국 심사관 현지 파견 및 국내 대행 서비스 개시(6월) / 한국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MOU 체결(9월)
사우디아라비아	PCT 국제조사서비스 제공 MOU 체결(9월)
미얀마	포괄적 지재권 협력을 위한 MOU 체결(9월)
콜롬비아	양국 지재권 협력 강화, PPH MOU 체결 추진 등 합의(9월)
아프리카	잠비아 특허청 한국 연수방문 및 한·잠비아 청장회담(6월)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는 중국, 태국 등 현지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거나,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개최를 통해 현지 지재권 담당 공무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베트남 등 현지 정부기관 등을 방문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온라인 지재권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14.4)함으로써 중국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제품 유통 건은 연간 8,700만건(2012년) 수준으로, 향후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4) 선진 5개 특허청 협력

IP5는 특허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장 회의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 부산에서 7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출원건수 증가에 따른 특허심사 적체라는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5개 국가의 특허청 간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상호 활용 및 특허분류, 정보화, 특허제도 통일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5〉 특허청장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개최일	'07. 5	'08. 10	'10. 4	'11. 6	'12. 6	'13. 6	'14. 6
장 소	美 하와이	韓 제주	中 계림	日 동경	佛 코르시카	美 쿠퍼티노	韓 부산

5) 주요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야 FTA 추진 현황

통상 환경의 글로벌화와 지재권의 통상 무기화에 따라 FTA 논의에서 지재권 협상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15.1) 15개국과의 FTA가 타결 또는 발효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총 14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11월 10일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WTO TRIPS 지재권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4-5-6〉 발효 및 타결된 FTA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성 과
한·칠레 FTA (‘04.4.1. 발효)	• 칠레가 우리나라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 • 한국은 Pisco(포,증), Pajareto(포,증), Vin Asoleado(포) 3가지 지리적 표시에 대해 독점권 부여
한·싱가포르 FTA (‘06.3.2. 발효)	• 한국특허청을 싱가포르 PCT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 지정 • 한국 특허출원과 동일한 싱가포르 출원의 빠른 심사 처리
한·EFTA ⁶⁸⁾ FTA (‘06.9.1. 발효)	• ‘08년까지 로마협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및 준수 • GI의 보호,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
한·ASEAN FTA (‘07.6.1. 발효)	•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한·인도 CEPA (‘10.1.1. 발효)	• PCT ISA/IPEA 지정, 특허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양국 특허청 간 별도 협력 MOU 체결 추진
한·EU FTA (‘11.7.1. 발효)	•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부여 • GI는 협정부속서에 기재하여 보호 (사용이 확립된 선행상표는 계속 보장) • 의약품 분야 특허기간 연장, 자료 독점은 기존 제도 유지
한·페루 FTA (‘11.8.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유전자원(GR)/전통지식(TK)은 CBD Text의 선언적 내용 등으로 타결 • 인터넷상 반복침해 방지 조치 도입
한·미 FTA (‘12.3.15. 발효)	• 일시적 복제권 부여, 접근통제 기술조치 보호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공지예외 적용기간 12개월 연장 • 소리·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지재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한 강화
한·콜롬비아 FTA (‘13.2.21. 서명)	• 상표권, 저작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등 • 소리·냄새 상표등 비시각적 상표 보호
한·터키 FTA (‘13.5.1. 발효)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및 향후 추가 가능 •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TRIPs 의무 준수 • 인터넷상 반복침해 방지 조치 도입
한·중 FTA (‘14.11.10. 타결)	• 외국 유명상표 보호 등 중국내 악의적 상표선점 및 유사상표 등록 방지장치 강화 •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강화 및 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법정손해배상제도, 지재권 침해물품 압류·폐기 명문화 등 지재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
한·베트남 FTA (‘14.12.10. 타결)	• WTO·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규범 및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한·호주 FTA (‘14.12.12. 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 공지예외적용기간 12개월 연장 등 • 인터넷상 반복침해 방지 조치 도입
한·뉴질랜드 FTA (‘14.12.22. 가서명)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에 대해 규정, 냄새·소리 등 비시각적 상표 보호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포괄적 권리 인정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강화 • 인터넷상 반복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한·캐나다 FTA (‘15.1.1. 발효)	• 양국이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한 GI에 대하여 동일한 보호수준 부여

68)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나. 저작권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

1) 국가 간 협력 강화

2014년에 10회를 맞은 ‘한중저작권포럼’ (7월)과 6회째를 맞은 ‘한일저작권포럼’ (12월)을 통해 한·중, 한·일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4년 9월에 한-필리핀 정부 간 저작권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저작권 보호·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밖에도 2014년 5월, 6월과 11월에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한-태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저작권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해당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학술행사인 ‘서울저작권포럼’은 2014년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저작권 개혁의 흐름, 그리고 저작권 개혁의 핵심이슈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베이징, 상하이, 방콕, 마닐라, 하노이 등에서 개최한 각종 현지 저작권 설명회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은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의 저작권 인식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제10차 한중저작권포럼(2014.7.)



2014 서울국제저작권컨퍼런스(2014.10.)



2014 한태저작권포럼(2014.11.)



제6회 한일저작권포럼(2014.12.)



또한, 한·중 간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 당국이 한·중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중 저작권 보호 캠페인 추진

중국 내 한류 드라마 소비 확대를 계기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인기 드라마 영상을 활용·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홍보영상물 송출

* SBS(9월~), MBC(10월~), KBS(11월~), 중국 지역방송사(12월~)



2) 개발도상국 대상 저작권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WIPO 차원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외 저작권 이슈를 논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연수(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Republic of Korea)'를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 10개국의 저작권 관련 고위급 정책 담당자가 참가하여 한국의 저작권법 개관, 저작권 산업과 기술, 저작권 시스템 등 한국의 저작권 법제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저작권 관련 국제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에는 WIPO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WIPO 지역간 워크숍(WIPO Inter-Regional Workshop)' 2회와 'WIPO 소지역 워크숍(WIPO Sub-Regional Workshop)' 1회 등 총 3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각 지역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한국의 저작권 법제와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 WIPO 신탁기금을 확대하여 2012년부터 개최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MCST-WIPO-KCC Inter-Regional Training Program on Enforcement)'을 신탁기금으로 이관하여 개도국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집행에 특화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0월 개최한 워크숍에 9개국 18명의 보호·집행을 수행하는 판·검사 및 경찰을 비롯한 저작권 정책담당자가 참석하여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와 현황을 소개하였다.

3)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저작권기술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저작권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저작권, 콘텐츠의 생명이다!’를 주제로 시작한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 ICOTEC)는 2014년까지 4회째 개최되고 있다.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는 WIPO와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있으며, ICOTEC 조직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3회 행사는 ‘저작권 협업과 창조적 기술’을 주제로 저작권 기술의 기회와 도전, 문화 창조와 저작권 그리고 국제협력, 창조경제 시대 저작권 정책방향 등의 연설과 저작권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 저작권 기술이전 설명회 등이 개최되었다. 2014년 11월에 개최된 4회 행사는 ‘저작권기술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행사가 개최되었다.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저작권법, 제도 등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이 논의 되었으며,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국내 저작권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4-5-2〉 ICOTEC 2013



〈그림 4-5-3〉 ICOTEC 2014



제 5 장

대응방향 및 향후전망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1. 권리화 단계에서의 보호 강화

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최근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를 바탕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들 중에는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컨대, 발명을 완성하기 전 단계의 아이디어는 현행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창출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무척 중요하다. 최근 아이디어 보호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에 의하면(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3), 조사대상의 98.6%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현행 제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보호한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하였다.⁶⁹⁾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의 법적보호 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0월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로”, “안정적 제도

69) 김혁준, ‘아아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지식재산정책(IP Policy) 통권 제16호, 2013, 55면.

운영에서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모방경제 시대의 추격자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선도자 보호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였다.⁷⁰⁾ 동 방안을 통해 아이디어의 창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식기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권리화하고 다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 및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상담·교육 및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

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강화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비중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둔 발명진흥법이 개정(시행 '14.1.31)되었다. 동 개정법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을 종업원과 협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개정법으로 인해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및 공개가 의무화되고 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연구자 보상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못한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상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상과 관련한 연구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발명자의 권리보호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⁷¹⁾

또한, 기업환경의 패러다임과 산업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여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혁신을 위한 발명의 환경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⁷²⁾

70) 특허청 보도자료('13.10.31.).

71) 광충목,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67면.

72) 참고로,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7일 경제산업성과 특허청 등의 협력을 얻어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보고한 ‘지적재산정책비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인식하고 직무발명제도를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사적 계약에 맡기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日知財情報局, 보도기사, '14.11.21.).

다. 산업재산권 심사·등록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 확보는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신속한 사업화와 로열티로 인한 수익 증대 등 산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므로,⁷³⁾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단계에서의 보호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⁷⁴⁾ 이로 인한 권리의 무효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출원자로 하여금 보정할 수 있는 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 건수 중 무효가 되는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⁷⁵⁾

높은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출원인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획득한 권리가 심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막대한 투자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는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⁷⁶⁾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등록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심사관의 증원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심사관 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⁷⁷⁾ 최근 5년간의 지속적인 특허출원 증가추세(연평균 3.1%)를 고려하면 향후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심사관의 증원을 통해 1인당 심사처리 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심사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를 확대하거나⁷⁸⁾ 주요 국가 간 심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심사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73)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조사에 의하면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파급될 경제적 효과가 총생산액 증대 약 12조원, 부가가치 증대 약 2조 6천억 원, 세입 증대 3,597억 원, 고용창출 40,508명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74) 2014년 심사처리기간은 특허 11.0개월, 상표·디자인은 각각 6.4개월, 6.5개월 달성(특허청 보도자료, '15.1.13.).

75)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09년(60.1%)에서 '14년(53.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본 20.4%('13년), 미국 40.2%('14.10월)에 비하여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자료, '15.1.7.).

76) 이일구 외, '특허 심사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개방형 심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4호, 2011, 6면.

77) 심사관 수('13년 기준)는 한국(812명), 일본(1,701명), 미국(7,928명)이며, 1인당 처리건수('13년 기준)는 한국(225건), 일본(156건), 미국(77건)이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자료(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자료, '15.1.7.).

78)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8년 출원인이 첫 번째 거절통지(first OA)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허용하는 심사착수 면접시험 프로그램(First Action Interview Pilot Program, FAI)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경제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

가. 지식재산권 소송의 실효성 확보

1)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

지식재산권 분쟁이 글로벌화 되고 관할법원선택(forum shopping)⁷⁹⁾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은 사법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을 설립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선구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그 관할이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어 있고, 침해소송 등은 일반법원에서 진행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전문적·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판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체계는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침해여부(침해소송)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무효를 항변하는 경우 일반 민사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또는 권리범위에 관한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일반 민사법원도 유효성 판단요건인 신규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며,⁸⁰⁾ 진보성에 대해서도 일반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⁸¹⁾ 그러나 여전히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소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13.11.13)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대법원과 협의를 통해 소송관할집중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14.8월), 국회를 통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⁸²⁾

산업성(産業省) 일본 특허청이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심사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3, 10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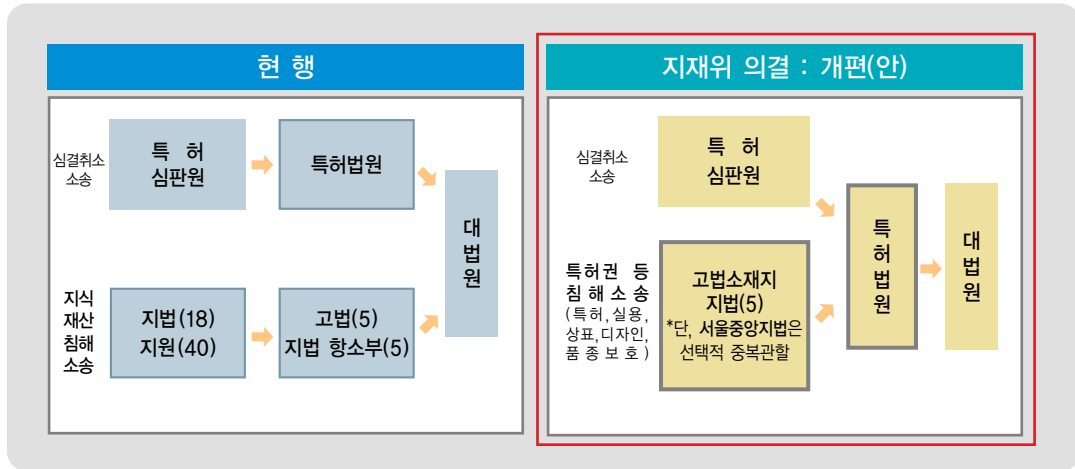
79) 특허침해소송 당사자에 있어서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내용을 가진 법정지에서 재판을 제기하려고 힘쓰는데 이를 관할법원선택(forum shopping)이라고 한다.

80) 대법원 1985. 09. 10. 선고 84다카1608판결, 대법원 1986. 12. 09. 선고 86도1147판결(대법원은 등록된 발명특허의 전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에는 무효심결 없이 당연 무효를 인정한다고 판시).

81) 대법원 2010다 95390판결.

82)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법사위원장)이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14.9.1.)하였으며, 국회에 여야의원들이 함께 구성한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1-1〉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의 합의(안)은 지식재산권 소송 중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제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5개의 전속관할(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로 하고, 제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소송체계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소송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국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법원 등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³⁾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제지재권분쟁해결에 있어 우리 법원의 역할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의 실체적 내용과 특허법 등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특히, 소송대리인의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적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변호사만이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민사소송법 제87조)하고 있어, 특허분쟁의 양적증가 및 쟁점기술 등의 복잡화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기술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83) 미국은 19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CAFC)을 설립하여 특허소송 항소심 관할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은 2014년 11월 베이징(北京)에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을 필두로 같은 해 12월에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에도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였다. 일본은 1심은 도쿄·오사카 2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고(2004년),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2005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관할을 집중하는 공동특허법원(European and EU Patent Court : EEPCT) 설립을 준비 중이다(2015년 예정).

이와 관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가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하였다(’13.11.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안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무부·특허청·변호사협회·변리사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기술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국·EU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계 로펌의 법률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미흡하여 특허제도의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허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적은 손해배상액은 특허의 실효적인 적정 가치를 저하시키고 특허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특허권 침해소송을 살펴보면, 1심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5천만원 이하로 선고된 경우가 전체 사건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액이 청구액의 1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미국의 경우 2007~2012년 사이에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간 값이 미화 4.9백만 달러(약 49억 원)였던 반면,⁸⁵⁾ 우리나라의 경우 2009~2013년 사이에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간 값이 5천9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의 경제규모(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배상 인용액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특허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⁸⁶⁾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합리적 실시료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⁸⁷⁾ 한국에서는 법원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6항) 등에 따라 손해

84) 최승재, ‘특허법 제128조에 의한 손해배상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43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341면.

85) PWC, ‘2013 Patent Litigation Study’, p.7.

8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방안’, 2014.

87) 2005~2011 손해배상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특허권 침해 판결이 21건이 있었는데, 그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⁸⁾ 실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액 증명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미비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적은 측면이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피고측의 증거제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료 배상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가 특허권자를 침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14.12.10.)에서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동 개선방안을 통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실시료의 적절한 산정 기준, 악의적 특허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증액배상 도입,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는 특허침해 억제를 통해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각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절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입법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신속성,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조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경우, 1995년 제도 실시 이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약 6건(최근 5년간 신청건수는 연평균 약 3건)으로 총 조정 성립율은 25.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⁸⁹⁾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53건으로 연평균 약 90건(조정 성립율 평균 51%)을 수행하였다.⁹⁰⁾ 최근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88) 장태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제2014-44호, 2014, 28-29면.

8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년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계획.

90) 한국저작권위원회 내부 자료.

현재 지식재산권, 특히,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저작권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조정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주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결국, 분쟁상황을 합의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의지에 따라 조정결과가 결정되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분쟁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어 효과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DR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현재의 ADR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분쟁해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정제도의 적극적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⁹¹⁾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식재산보호 집행력 강화

가. 지식재산권 단속 실효성 확보

2013년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규모는 약 17조원 정도로 위조상품은 국내기업의 매출 저하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철강, 원전,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위조상품의 낮은 품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위조상품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해외직구,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해외유입이 확대되어 집행기관의 개별적인 수사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IP 침해대응 및 위조상품 단속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하여 위조상품의 국내유입 차단 조치 강화 및 위조상품 반발 유통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단속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 관련 전문교육 등을 통해 단속공무원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위조상

9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년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계획.

품 근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불법적인 복제품에 대한 단속 및 위조품에 대한 상당한 적발과 관련자에 대한 기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실제 기소율은 낮은 상황이다. 또한, 단속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지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할 경우 직접적인 수사 대신에 고발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가 기존의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실시됨으로써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수사업무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²⁾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특별사법경찰의 인력증대 및 효율적인 침해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선진화 등의 방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활동 강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기술유출 피해 경험에 있는 기업의 비율은 10.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유출 피해 경험 기업 비율인 12.1%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경우 2012년에 15.7억 원에서 2013년 16.9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유출의 피해액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로 유출된 기술 역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중소기업 해외기술 유출은 31건이며 대기업 8건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⁹³⁾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술유출 주체는 전직직원 60.8%, 현직직원 19.6%, 협력업체 9.6%, 유치과학자 1%, 투자업체 0.5% 그리고 기타 8.6%로 나타났다. 전·현직 직원 등 내부유출이 80%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⁹⁴⁾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은 주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권리획득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요구 역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감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은 기술 및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관한 인식이 아직은 충분치

92) 민형동, '특별사법경찰의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0호, 2007, 60-61면.

93)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4.10.10.).

94)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통계(<http://service4.nis.go.kr/page?cmd=preservation&menu=AAA00#.VNITOI2weUI>).

높지 못한 실정이다.⁹⁵⁾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으로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보안관제)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⁹⁶⁾

따라서 기업 내 관련 담당자의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 기업의 보안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제도 이용의 활성화,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서면요청 절차 강화, 기술을 유출하거나 탈취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의 강화 등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관련부처와 중소·벤처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⁹⁷⁾

4.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분야는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은 산업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 전통지식과 문화표현물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에는 정부부처와 일부 민간기업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 조성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글로벌·디지털 환경에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환경에 대응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권 집행체계를 연계하여 집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보호

95) 김시열·박주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소고', IP Insight 제1권 제3호, 2013, 23-24면.

96)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4.10.10.).

97) 박정구,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1호, 2014, 214-216면.

98)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지재산 제도와 단속·수사 등 집행업무 담당부처('소관부처') 및 안전별 참여부처('협력부처')로 구성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이 운영·지원하고 부처별로 순회하며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1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⁹⁹⁾가 출범하였다. 동 협의회에서는 정부부처 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복제·위조상품 합동 단속 및 수사 공조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⁹⁹⁾

이러한 정부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의 협력체계 확대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의 종합보호계획을 보다 체계적·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5.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유·확산의 조화

발명가나 저작자가 발명이나 저작물 등을 창작할 때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것을 배포(dissemination)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조합의 불균형으로 모방이나 도용이 용이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적절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발명 등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단순히 발명가에게 개발을 위한 노력이나 비용의 회수를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타인의 진입 규제 형태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고 배포하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한다.¹⁰⁰⁾

반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타인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자유야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또 다른 훌륭한 아이디어로 재생산될 수 있게 하는 원천인데, 과도한 보호는 다른 사람들이 선행연구 결과나 창작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선된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제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식확산을 제한하는 비용(cost of limiting diffusion)의 상승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유인의 혜택(economic incentive benefits)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소비자의 이익과 기술의 발전에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¹⁰¹⁾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지식재산권의 남용 등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9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 구성·운영(안), 2014.

100) 김창화, ‘자연독점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제도의 이해’, 정보법학 제17권 제1호, 2013, 176-178면.

101) 김중호,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재학교 법학연구소, 2012, 653-655면.

따라서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지식재산의 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않게 지식재산 이용자의 이익도 고려하고, 저작권에서의 공정이용이나 특허법에서의 실험적 사용 등과 같은 비규제화 및 취약계층·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비롯한 공익사업의 확충 등 지식재산의 합법적 이용영역의 확대를 통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노력은 발명가나 저작자로 하여금 보다 개선된 창작물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현행 지식재산권 체계 아래에서의 부당한 남용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발전과 함께 권리자 및 이용자 이익의 균형된 보호의 추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¹⁰²⁾

102) 김창화, 전제 논문, 188-190면.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1.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다.¹⁰³⁾ 그런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여 저작권 보호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¹⁰⁴⁾

한편, 위조상품은 해외에서의 직접구매나 병행수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통신판매허가번호, 금융정보 등을 허위 기재하여 판매·유통도 되고 있어 집행기관의 개별적인 단속만으로는 위조사범 단속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및 사전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별

103)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자 다른 성격으로 저작권보호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를 맡고 있으며,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중단 요청을 맡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즉각적인 삭제조치를 요청·확인함으로써 불법복제물 확산 방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권리자 위임 저작물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물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10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4, 39면.

적인 수사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단속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위조상품 단속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위조상품 근절인식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⁰⁵⁾

2. 온라인 불법복제물 대응력 강화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250명의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가 지원하였다.¹⁰⁶⁾ 현재는 총 350명의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과 함께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ICOP)을 활용하여 불법복제물유통의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민 오픈 모니터링’ 제도¹⁰⁷⁾를 운영하여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및 콘텐츠의 침해를 모니터링으로만 근절하기에는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결여로 한계가 있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감정보렌식팀을 운영하여 디지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증거수집, 분석으로 온라인 저작권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도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를 확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¹⁰⁸⁾

한편, 특허청은 2009년에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IPOMS)를 개발하여 국내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있으며, 게시물 삭제, 쇼핑물 접속차단·폐쇄 등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고

10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안), 2014.

106) 2012년 약 1억 1,000만 점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전년대비 37% 증가)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한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 100명의 요원이 활동했으나 최근 토렌트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선발하게 되었다.

107) 국민 오픈 모니터링은 내부 모니터링이 곤란한 폐쇄형 웹하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활동을 감시할 수 있어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토렌트, 블랙마켓,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4, 35-36면.

있다. 최근 온라인 상품거래 시장의 급증과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의 유통방법이 지능화·다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¹⁰⁹⁾ 따라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의 수집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¹¹⁰⁾ 이를 활용하여 특별사법경찰 온라인수사반에 위조상품 상습 판매사범 추적수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소프트웨어 보호수준 강화

가. 소프트웨어 개발산출물의 저작권 확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식정보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산업 중의 하나이며, 수출 중심 경제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2008년 43%에서 2013년에는 38%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 이는 국제평균인 43%보다도 낮고, 아시아 평균인 62%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지만, 2011년 OECD 평균인 26%보다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며,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는 저작권법으로 인해 발주자가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소스코드를 변경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는 관행이 생겼다. 그런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주자 귀속으로 인해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 등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발주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될 때,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사가 후속 개발을 위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사가 소프트웨어 산출

109)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상품거래 시장 규모가 2010년 27.3조 원, 2011년 31.8조 원, 2012년 36.1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10) 온라인 쇼핑물의 위조상품 판매 증거확보 기능 개발.

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며 발주 기관인 국가 등은 용역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현장과 산업계에서는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경우도 정부가 소유하기보다는 특허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를 소유하고 관리하던 체제에서 민간이 특허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해 왔다.¹¹¹⁾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 특허 소유와 활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14.11)에서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개선안에 따라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자했다라도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소유하는 제도가 정부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나 연구개발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업들이 활발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간의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귀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¹¹²⁾

나. 분쟁해결 및 불법복제 수사 체계의 효율성 강화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대상 유형은 대부분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IT 서비스 분야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은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든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역량이 확보된 전문가 및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감정제도를 소프트웨어 감정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통해 규모 및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단속의 개념으로 실시되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수사는 최근 고소가 전제된 수사적 관점의 증거수집을 위한 집행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여부의 존재를 밝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의 관점이

111) 미국 Bayh-Dole Act(1980),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1999), 산업기술력강화법(2007) 등.

112) 특허청 보도자료('14.11.20.).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수사에 있어 권리자의 권리보호 수요와 수사기관의 수사공급 불일치, 소프트웨어 독과점 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증가 문제를 야기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상당한 증거제출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증거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가 수사 개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수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보호 수요와 수사기관의 수사공급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거래구조의 한계로 인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끔 되는 근본적·현실적 원인을 제거하거나 권리자 스스로가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에 의한 형벌권 발동이 매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이지만, 권리자 스스로 자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3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최근에 기업환경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전 세계 우수 기업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중 주로 소송 등의 활동에 특화된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 PAE)의 특허소송위협 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기업도 국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 심화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해외보호 및 분쟁대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¹¹³⁾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심화로 막대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발생시켜 분쟁기업의 피해 규모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출 중단, 제품의 판매금지, 모조품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우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에게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분쟁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추진되어야

1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3)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 2010년 186건, 2011년 280건으로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342건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별 특허분쟁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이 자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량 특허로부터 역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량 기술의 개발 등 국제적인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의 부족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자금의 부족으로 적시에 국제적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상황과 출원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으로 인한 국제출원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¹¹⁴⁾

최근 예능, 드라마 등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뛰어난 제작기술과 적절한 현지화 과정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성공을 이룬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계속 이어 나가고 더불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현지에 합법유통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현황, 현지 시장상황 및 관련 법제도, 저작권 인식수준,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수준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직 저작권 법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함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 해외 분쟁대응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및 소송은 수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분쟁 대응만으로는 물질적·시간적 소모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진행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모니터링하여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IP Desk와 해외저작권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¹⁵⁾

114) 김세훈·김종호,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쟁 대응의 국가적 과제', 「분쟁해결연구」제9권 제2호, 분쟁해결연구센터, 2011, 129-130면.

115) 기업들은 분쟁 상대방의 취약기술 등에 대해 국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분쟁 상대방과 크로스 라이선스 등을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Lex Machina社は 매년 미국의 특허 소송 동향을 조사·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ex Machina社の 특허 소송 연례보고서와 같이 국내외 소송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및 지원 확대, 시장 선도형 기술의 발굴 및 권리화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확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¹¹⁶⁾

2. 국제공조체계 확립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도 이해당사자가 되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개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PAE들에 의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분쟁 과열로 기술혁신의 저해, 산업 성장의 정체 초래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PAE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의회와 정부가 나서서 특허 체계의 보완·개선과 함께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제도 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¹¹⁷⁾

우리도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먼저,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우호적으로 우리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협상 시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 관료가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위원회’ 구성의 추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동 위원회를 통해 현지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집행관련 이행상황 점검 및 분쟁 해결에 관하여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⁸⁾ 이외에도, 우리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은 국가의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사업 등을 통한 교류 확대로 현지 단속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⁹⁾ 이러한 국제적 공조협력체계가 마련되면 향후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 시대의 고학기술 정책 방향 연구」, 2014, 10면.

117) 미국 백악관은 무분별한 특허소송으로부터 발명가를 보호하여 미국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입법 권고사항과 행정조치를 발표하였다(‘13.6.4.).

118) 한-EU FTA에서도 양국 간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한-EU IP Dialogue)를 운영 중이다.

119) 국가지식위원회,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 2014.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확대

1.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논의 참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및 기업 간 기술분쟁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촉진되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고 시장이 통합되면서 각국에서는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WIPO를 필두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현안에 대처하고 나아가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정부도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의 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다자간 논의는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IPO는 저작권 침해 및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 및 성공사례 전시회(Exhibition on Preventive Actions or Successful Experiences to Complement Ongoing Enforcement Measures)」를 2014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회의 기간에 개최하였다. 동 전시회는 단순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창작자 또는 생산자 스스로 지식재산 보호에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 캠페인 등을 제시하였다.¹²⁰⁾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과 함께 동 전시회에 참여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시하였다.¹²¹⁾ 동 전시회의 참여로 각국에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우리정부의 정

120)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인식 및 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예방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1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 및 성공사례 전시회 개최', Issue & Focus on IP 제13호, 2014, 21면.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상표 5개국 협의회(TM5)가 2014년 12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2014년 TM5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번째 회의로 저명한 지명 및 브랜드 등의 상표가 해외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상표출원·등록되는 이른바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제도·운영 및 상표의 화상이 미지 검색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¹²²⁾

한편, 2014년 10월 12일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 ABS)’가 발효되었다. 나고야 의정서¹²³⁾는 지난 7월 12일, 우루과이가 유엔에 5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발효 요건을 갖추어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들의 첫 회의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¹²⁴⁾를 개최하였으며, 동 총회를 통해 유전자원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기본 틀 등을 마련하였다.¹²⁵⁾ 우리나라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과 더불어 아직까지 동 협정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향후 가입에 대비하여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ABS와 관련된 조항이 행정적·정책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신규 가입에 따라 국내의 지식재산권 법과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3월 31일 WIPO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가입식을 가졌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하였다. 헤이그 협정¹²⁶⁾은 특허의 PCT 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에 상응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현재 협정 가입을 위한 자국의 입법을 준비 중인데, 주요 디자인 다출원국¹²⁷⁾ 중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주요국의 협정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¹²⁸⁾

1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 5개국 협의회(TM5), 2014년 TM5 연례회의 개최’, Issue & Focus on IP 제49호, 2014, 21면.

123) 나고야 의정서는 이용국이 의약품의 토대가 되는 미생물 등 유전자원을 원산지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도록 사전통보승인 및 이익공유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국제 규범이다.

12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4년 바하마의 나소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하며, 결정되는 사항들은 국제사회 및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5) 강원발전연구원,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 성과와 과제’, 2014.

126) 헤이그 협정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한다.

127) 전세계 디자인 출원 92만 건 가운데 중국이 66만 건, 우리나라가 6만 건, 미국이 3만 건, 일본이 3만 건으로 4개국의 디자인 출원이 전체의 85%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6만 건으로 약 7%를 차지한다.

1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발표’, Issue & Focus on IP 제16호, 2014, 27면.

또한, WIPO 주도로 성안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촉진하고, 기술과 문화 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6월에 동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창작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WIPO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활동 외에도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 UN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의 위조품 밀거래 방지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캠페인, 국제상표협회(INTA)의 상표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 활동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결의안 채택,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인터넷 진화에 따른 활용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자간 논의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2.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WIP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식 격차를 줄이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9월 25일, WIPO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¹²⁹⁾와 함께 HIV/AIDS 분야에 한정된 의약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을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결핵, C형간염 및 기타 질병으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UNITAID에서는 HIV/AIDS 분야에서만 운용되는 의약 특허풀에 결핵 등 기타 질병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¹³⁰⁾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요 ODA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공적개발원조(IP ODA)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9)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3대 전염병을 대상으로 치료 의약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지원으로 동 기구를 설립함.

1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의약 특허풀의 확대에 대한 논의’, Issue & Focus on IP 제2014-42호, 2014, 22면.

특허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을 보급하고, 2013년 10월부터 2015년까지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RIPO) 가맹국의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정보를 통해 공지된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상표권 획득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아프리카 차드를 시작으로 총 6개국(차드, 네팔, 캄보디아, 과테말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에서 8건의 적정기술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의 경우 6개국(차드, 중국, 칠레, 캄보디아, 볼리비아, 필리핀)에서 7건의 개발 사업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rganiz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OAPI), ASEAN의 위탁을 받아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IP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IP ODA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ODA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및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IP ODA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 전체 대비 아직 미약한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IP ODA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적절한 평가 체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¹³¹⁾

131) 숙명여자대학교,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 특허청, 2013, 189-193면.

제5절

신지식재산의 보호체계 강화

1. 신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강화

종자 산업에 대한 국내 보호 법제는 크게 특허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WTO TRIPs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19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하여 2012년에 기존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신품종 보호법의 하위법령 정비, 품종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에는 국립종자원(농·원예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작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 및 운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제 심사기준의 국내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간·지역 간 품종보호 심사 협력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며,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품종보호의 정보수집, 상호교류 및 국가 간 유대 강화 등 식물 신품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¹³²⁾

종자산업 관련 주된 보호 법제는 특허법과 식품신품종 보호법이다. 특허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나 WTO TRIPs 협정에 따라 중복적인 보호법제로 작용하고

132)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림축수산물식품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4.

있다. 식물 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제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출원 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 간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는데 아직 양 법제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개정이나 해석에 대한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¹³³⁾

나. 생물자원 보호제도 강화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라고 할 만큼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해양영역의 생물자원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활용기반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 아래 2012년에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법률을 통해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체결 및 국내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 생명자원 기반산업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 창출에 이용될 생물자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형질을 보유한 국외 유용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자원(종자·품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원부국 현지에서의 수집 및 국제기구(AVRDC)를 통한 유전자원 확보, 국외에서의 주요 작물 수집 추진, 원예작물 품종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 MOU체결 등 공식채널을 통한 해외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수집경로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농수산생명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수집·보존·평가·이용활성화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제협약의 효율적 대응과 미래의 수요 반영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¹³⁴⁾

다. 전통문화 표현물·전통지식 보호제도 강화

최근에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복합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 및 국내외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전통문화자원의 현대 산

133) 충남대산학협력단,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특허청, 2014, 198면.

134)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림축수산식품부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4.

업화 지원과¹³⁵⁾ 전통-현대문화 간 융·복합 상품 개발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¹³⁶⁾ 이를 통해 전통문화 진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TCE) 기반의 창작활동 및 상업화가 활발하나, 오·남용,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 배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2000년 이래 WIPO 내 ‘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를 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의 적정한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WIPO IGC 회의에 참가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의 조약 초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 논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을 이룬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하고, 국제 저작권 질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¹³⁷⁾

2. 신지식재산권 창출·활용 기반 강화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특허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허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특허생물자원의 활용을 진척시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정보가 누락 없이 정확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특허미생물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에 이관될 특허미생물의 복제본 제작 및 통합보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허미생물 기탁제도 관련 고시 개정 및 기탁기관의 업무처리방식 통일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³⁸⁾

한편, 비전형 상표는 1997년 ‘입체상표’를 시작으로 2012년 ‘소리·냄새상표’ 등 비시각적인 상표까지 도입되었으나, 현재 출원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비전형 상표는 거래업체 및 일반수요자에게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상표로서 출원등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비전형 상표의 활용 및 적극적 권리화를 위하여 비전형 상표제도에 대한 기업 및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¹³⁹⁾

135) 신(新)한복 개발 프로젝트, 한지 소재 등록 및 해외 프로모션, 한복·한지 상품개발 경연대회 등.

136) 전통문화융합상품 개발 전문가 교육, 전통문화창조센터 운영, 새로운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 등.

137)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4.

138)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지정, 관리, 취소 관련하여 특허법·특허법시행령·특허법시행규칙의 개정(2014년) 사항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39) 특허청, 2015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4.

3. 미래 유망기술 및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나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의 보유 여부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2012년부터 ‘국가 특허 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12개 산업분야에서 총 130개의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이는 특허청이 보유한 2억 5천만 건의 특허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별 1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특허정보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발굴한 것이다.¹⁴⁰⁾

〈표 5-5-1〉 2014년 5대 산업분야 및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

산업분야	10대 미래 유망기술	
농림수산식품	▲ICT 융합 작물 생육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 ▲농생명 유전체 활용 ▲분자표지기술 ▲고부가 농산물 가공기술 ▲환경친화형 농림축산 폐기물 자원화 및 오염제거 기술 ▲천연화장품 기술 개발 및 제조 ▲전통 PROBIOTICS 식품의 소재화 ▲식품 유래 탈모개선 물질 추출 작용기작 규명 ▲토종 해양자원 활용 유용물질 생산 ▲토종 미생물 자원 활용 유용물질 생산	
부품	▲자율주행 지원 기술 ▲충돌 방지 시스템 기술 ▲전기차 전력 충전 기술 ▲플렉서블 전원공급 기술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한 거대 연결성 플랫폼 ▲3D 프린팅 레이저 가공 제어기술 ▲환경 오염원 감지를 위한 복합 센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광학 부품 ▲PMS 기술 ▲나트륨 이차전지 기술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실리콘 태양전지 초고율화 및 저가화 기술 ▲(태양광)건출 및 생활밀착형 태양광 응용 시스템 기술 ▲(태양광)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대면적 응용기술 ▲(풍력)부유식 해상 풍력시스템 ▲(풍력)ICT 기반 LCOE 저감기술(제어기술과 감시 및 출력제어 시스템) ▲(연료전지)막-전극 접합체 제조기술 ▲(연료전지)SOFC 고온 밀봉 소재 기술 ▲(바이오)목본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 ▲(폐기물)교호율 폐기물 합성가스 정제 기술 ▲(태양열)부하 연계형 열에너지 융복합 기술	
해상 항공 수송	해상	▲LNG 운반선 ▲빙해상선 ▲선박 에너지 절감기술 ▲수중환경 보호기술 ▲선박의 안전성능 기술 ▲FPSO(부유식 원유생산 저장·E하역 설비) ▲LNG ▲FPSO & FSRU(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저장·E재기화 설비) ▲라이저 파이프(Riser & pipe) 핸들링 시스템 ▲Mud flow sys./Cement & Dry Bulk Sys. ▲플랜트 설비의 자동 위치제어(Dynamic Positioning)
	항공	▲위성 조립설비 및 시험기술 ▲인공위성 본체의 추진계 기술 ▲발사체 추력벡터 제어 기술 ▲지상센터의 위성 관제 및 운영 기술 ▲위성자료 정보화 기술 ▲항공기 가스터빈의 연소기 설계 및 제어기술 ▲항공기의 진단/수리/수명관리 및 성능 평가 ▲회전익 항공기의 동력전달 계통 기술 ▲무인기 충돌탐지 및 회피 관제/통제 시스템 ▲무인기 EO/IR & SAR
LED·광(光)	▲바사파이어(GaN, Si) 기판 및 에피기술 ▲비가시광(UV, IR) 및 나노 LED 기술 ▲플렉서블 광소자 기술 ▲LED 시스템 조명 ▲LED환경안전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고출력 LD 및 광섬유 레이저 기술 ▲레이저 광이미징 기술 ▲메디바이오 광계측 기술 ▲Coherent 광통신용 부품 및 근거리 통신 연결 기술	

* 출처 : 특허청.

140) 미래 유망기술은 ① 먼저, 산업분야별로 R&D부처의 기획전문가, 연구자, 특허전문가 등으로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② 수백만 건의 특허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특허기반 전략기술체계’를 도출한 후, ③ 도출된 총 1,600여개의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부상성·원천성·유망성 등 다양한 특허지표를 분석하여 후보 유망기술군(513개)을 선별하고, ④ 분야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특허청 보도자료, '14.12.6.).

우리 기업들은 기술의 진보와 소비수준의 선진화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기술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빠른 시간 내 출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의 속도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미래 유망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입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주된 초점(focal point)으로서 효과적인 투자와 양질의 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사물인터넷,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카,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기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화두는 융합기술과 다중사용 환경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유망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양상의 지식재산 분쟁뿐만 아니라, 제조자 책임, 소비자 보호, 산업보안, 개인사생활 침해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유망기술 및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출현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정책형성의 장에 참가하여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제1장 서론

- 미국 상무부,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2.
- 특허청, 「2013 지식재산백서」, 2014.
-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1996.

제2장 지식재산 보호환경

- 특허청, 「2013 지식재산백서」, 2014.
-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 통권 1~4호, 2014.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4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 2014.

제3장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현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conomic Study on Patent Backlogs」, 2010.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 201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201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특허상표청 2014-2018 전략계획」,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2014.

제4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 경찰청, 「2013년 경찰백서」, 2013.
- 법무부, 「2014년 법무연감」, 2014.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4.
- 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백서」, 2013.
- 특허청, 「2013년 지식재산백서」, 2014.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4년 지식재산 보호 대국민 인식도 조사」, 2014.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Intellectual Property – Assessing factors that affec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ould help improve patent quality.」, 2013.

제5장 대응방향 및 향후전망

- 광충목,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김세훈 · 김중호,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쟁 대응의 국가적 과제」, 「분쟁해결 연구」 제9권 제2호, 분쟁해결연구센터, 2011.
- 김시열 · 박주완,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소고」, 「IP Insight」 제1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김중호,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창화, 「자연독점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제도의 이해」, 「정보법학」 제17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 김혁준,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지식재산정책(IP Policy)」 통권 제1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백서」, 2013.
- 민형동, 「특별사법경찰의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0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 박정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1호, 고학기술법연구원, 2014.
- 숙명여자대학교,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 특허청, 2013.
- 이일구 외, 「특허 심사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개방형 심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장태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제4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최승재, 「특허법 제128조에 의한 손해배상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43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 충남대산학협력단, 「중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특허청, 201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 시대의 고학기술 정책 방향 연구」, 2014.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4.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심사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 정책분석」,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 5개국 협의체(TM5), 2014년 TM5 연례회의 개최」, 「Issue & Focus on IP」 제49호,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의약 특허폴의 확대에 대한 논의」, 「Issue & Focus on IP」 제42호,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 및 성공사례 전시회 개최」, 「Issue & Focus on IP」 제13호, 20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발표」, 「Issue & Focus on IP」 제16호, 2014.

보고서 집필진

기획 · 편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기석 단장 | 권규우 지식재산진흥관 | 김진희 전문관

집필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조국현 지재권보호경영기획본부장 | 황규철 분쟁지원팀 미국변호사 |

홍석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 손보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호사 |

차상훈 해외지원팀 대리 | 박소연 연구기반팀 대리 | 박경민 분쟁지원팀 주임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법제연구팀 수석연구위원 | 김찬동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 박하늘 법제연구팀 연구원

저작권보호센터

김좌현 조사홍보팀 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충목 법제연구팀 전문위원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식물자원과 연구관

감수

외교부 경제공동체과 천효정 사무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승훈 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연구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오경록 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김현정 서기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와 김현수 경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재훈 서기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와 이범천 사무관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보고서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 윤종용
발행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물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209호
전화 02-2110-2192 팩스 02-2110-0285
홈페이지 <http://www.ipkorea.go.kr>
인 쇄 서울기획인쇄 02-2272-2531

발간등록번호 12-B552783-000030-10
ISSN 2384-1338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9 772384 133001
ISSN 2384-1338

45